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9

아시아· 대양주 3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요약

SUMMARY

아시아·대양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양자 FTA를 체결했으며, 복수국간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목전에 두는 등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시아·대양주 편에서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5개국에 대해 다룬다.

중국은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가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공급 과잉, 지방정부 부채 확대, 부동산 버블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통상환경은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 대상품목 추가 지정,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대폭 삭감, 개방 확대 지속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한편 201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단가 지속 하락, 석유화학의 중국 내 수요 위축, 중국 내 디스플레이 신규 생산 라인 확대, 석유제품 수요 감소 등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낮은 생산성 구조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회복이 미진한 상태이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상관행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전히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규제 분야는 수산물, 농산물, 지식 재산권 등이다.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2%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은 뉴질랜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은 편이다. 반면 농·축산물 수입 통관절차, HACCP 기반 식품 안전 인증, 투자 진출 제한 등 규제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부유한 자원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에는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ASEAN-홍콩 FTA가 발효되었다. 2020년에는 개정 투자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투자 진출 분야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유일의 경제선진국이자 거점국가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 역시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요약

SUMMARY

인도는 여전히 관세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고무, 농작물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서는 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 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기본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천연자원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에는 적극적이다. 2019년부터 투자, 무역,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전폭적 개정이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향후 더욱 활발한 투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주요 무역장벽은 통관 과정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주요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무역구제조치 등이다. 한편 2018년에 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1차 조세개혁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 논의된 2차 조세개혁에서는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호주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산물 생산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면서 관광 등 서비스 강국이다. 호주는 철강 산업 등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지적재산권 규제를 갖추고 있다. 2019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바, 향후 호주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낮은 법인세, 신뢰받는 법률시스템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극단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제조업과 연관된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2019년 12월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아시아·대양주



산업통상자원부

CONTENTS

2019 외국의 통상환경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중동

중 국	3
일 본	138
뉴질랜드	166
대 만	181
라오스	196
말레이시아	214
몽 골	250
베트남	266
스리랑카	304
싱가포르	318
인 도	336
인도네시아	361
카자흐스탄	432
캄보디아	460
키르기스스탄	480
타지키스탄	491
태 국	500
투르크메니스탄	514
파키스탄	538
파푸아뉴기니	559
필리핀	578
호 주	601
홍 콩	614
미얀마	645
우즈베키스탄	671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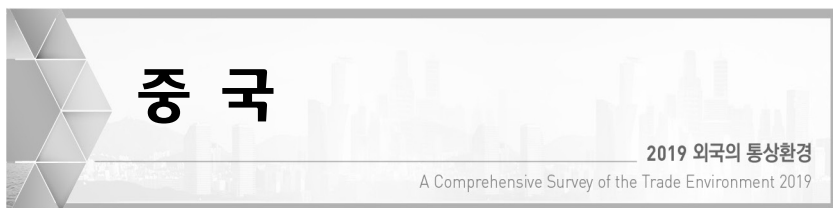
2019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중국	캄보디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뉴질랜드	타지키스탄
대만	태국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몽골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경제현황

중국 경제는 1980~201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오는 등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확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선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6.4%(2019년 1분기)→6.2%(2019년 2분기)→6.0%(2019년 3분기)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투자 및 생산의 성장 둔화로 인해 전기 대비 0.2%p 하락하며 중국 경제당국이 분기별 경제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6.4%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마지노선인 6% 경제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활력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소비품판매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9월 7.8%로 연초(3월) 8.7%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1~9월 누계)도 연중 가장 낮은 5.4%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외부문 중 수출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8월 Δ 1%, 9월 Δ 3.2%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3월 8.5%에서 8월에는 4.4%까지 하락하였으나, 9월에 5.8%로 반등하였으며 동월 제조업 PMI(50.0% 기준, 기준 하회 경기위축 의미)는 8월 대비 0.3%p 상승한 49.8%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중국 경기하강이 지속되면서 L자형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속에 부동산 등 내부 불안이 가세해 연말까지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요 해외기관이 발표한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5.7~6.1% 수준(IMF 5.8%, OECD 5.7%, WB 6.1%)이다.

장기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부상이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2018년 3월말 이후 구체화 및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그해 7월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하였고, 2019년 5월에는 2,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고 10월에는 2,500억 달러에 대해 30% 관세 부과를 유보한 상태이다. 미·중 양측은 13차례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양국 통상 분쟁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지난 10월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를 도출했으나 여전히 교착위험과 번복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6.5%)보다 낮은 6.0~6.5% 구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기조를 확정하는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3%를 기록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새로운 리스크와 점차 심화되는 경기 둔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잠재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국 건립 70주년 기념일(2019.10.1)을 맞아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적 진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온중구진’ 기조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 개혁과 ‘3대 공격전(리스크 예방, 빈곤 구제, 환경오염 방지)’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6대 안정화 조치(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등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하고 있다.

현 지도부는 부채 증가와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절감을 시행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를 확대하며,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GDP의 9.2% 달하는 8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1조 1천억 위안 규모의 감세, 3천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발표한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정책인「중국제조 2025 종합방안」과 「인터넷 +」는 서방국가의 견제를 의식해 대대적 홍보를 자제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정보화·스마트화·핵심기술 대외의존도 감소의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상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에 이어 광둥, 천진, 복건성, 해남성을 추가 FTZ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50% 이상을 축소하는 등 시장개방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개시하고 중·호주 FTA 타결 및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최종서명을 촉구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가를 잇는「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내 중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인프라·금융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실크로드기금(400억 달러)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경-천진-하북성 일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상해에서 충칭에 이르는 장강경제벨트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외자유치와 투자가 신뢰회복을 위해 2019년 3월 15일에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표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확립했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을 둔화로 경기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안 및 시장변동성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성장방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기조에 따라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외국인투자정책을 통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사용, 세금 및 직원교육 등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하였으며,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 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입수요 감소, 중국의 대외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마련된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IT, 보건의료, 환경, 금융,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집약, 중소 제조업,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소비, 서비스 중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기업 진출 전략을 전환하고,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징진지 협동발전 등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 중국경제 주요지표

	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6.9	6.7	6.9	6.6
	GDP	억 위안	676,708	744,127	827,122	900,310
	1인당 GDP	US \$	8,026	8,126	8,836	9,771
	정부 부채	GDP대비%	36.4	36.7	36.9	37%
	민간소비증가율	%	10.5	10.4	10.7	9.0
	도시등기 실업률	%	4.05	4.1	3.9	3.8
대외 경제	수출실적	억US \$	22,750	21,353	22,792	24,914
	수입실적	억US \$	16,820	15,247	17,900	21,090
	무역수지	억US \$	5,930	6,106	4,892	3,824
	외국인투자금액	억US \$	1,262.7	1,260	1,310	1,350
	총 외채	억US \$	14,162	14,207	17,106	19,652
	외환보유고	억US \$	33,304	30,105	31,399	30,727
	이자율	%	4.35	4.35	4.35	4.35
	환율	US \$	6.4936	6.9182	6.5342	6.8853

주 1) 2015년부터 중국은 외채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전면적 외채' (全口徑外債)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2) 이자율은 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3) 환율은 인민은행이 공시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중간가 기준임.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 대상국 및 수출대상국이자 무역 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8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686억 달러로 약 42배 증가하였으며, 인적 교류는 13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2016년 807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감소했다.

반면 양국 사이의 직접투자는 2018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56.6억 달러로 전년대비 52.3% 증가했다. 같은 해 중국의 對한국 투자금액도 238.9% 증가한 27.4억 달러에 달해 한중 상호 투자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어려워진 양국관계, 글로벌 생산거점 이동, 중국내 과잉생산,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난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14.2% 증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6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5.4%보다 9%p 큰 증가율로서, 한국의 전세계 수출 중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를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되었다.

한·중 FTA는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관세를 인하여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9년 7월 17~19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가속화됐다. 그러나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투자우대 정책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계 투자액(실행기준)은 648.3억 달러이다.

2008년부터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 투자대상국 2위에 머물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18년 말 누계치 기준,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그쳤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투자기준 누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2015~2017년 제조업 투자액의 증가폭은 점차 감소세(2015년 7.9%→2016년 2.3%),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11.4%)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82.7%의 증가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순으로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중서부 지역 투자는 산시성(陕西省), 충칭시, 쓰촨성 순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9.8억 달러, 2016년에는 2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어려워진 양국관계로 인해 2017년에는 8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8년 1분기 다시 10.4억불을 기록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중국의 비중은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금융거점을 경유한 중국기업의 투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1~14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금융·유통·문화콘텐츠·전기전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의료·문화콘텐츠·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 약속했던 관세인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세율은 HS 8단위 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 787개, 2017년 822개 그리고 2018년에는 948개로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의 평균 잠정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 중국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물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잠정세율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 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549개로 증가하였고, 세목 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¹⁾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하여 2018년 26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이 중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에 대해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다. 또한 상품범위와 세율

1)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수준이 변화 없는 싱가포르, ASEAN, 칠레와의 FTA 및 APTA도 있다. 더불어 홍콩, 마카오의 무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 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 정보 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8년 상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제3차 인하를 실시하여 총 280여 상품에 적용하였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또한 2018년에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빈국가 영관세 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 중국 관세를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1993.12	35.9	16.8	2,898
1996. 4	23.0	35.9	3,371
1997.10	17.1	26.0	4,900
1999. 1	16.7	2.4	4,874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
2002. 1	12.0	21.5	3,462
2003. 1	11.0	8.3	5,332
2004. 1	10.4	5.4	3,000
2005. 1	9.9	4.8	2,414
2006. 1	9.8	0	900
2007. 1	9.8	0	143
2008. 1	9.8	0	47
2009. 1	9.8	0	45
2010. 1	9.8	0	16
2011. 1	9.8	0	6
2012. 1	9.8	0	8
2013. 1	9.8	0	
2014. 1	9.8	0	
2015. 1	9.8	0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 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터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 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화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기준)와 90.7%(중국수입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 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 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부터는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 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 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리, 심천(深圳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중국 생태환경부(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합동)는 수입을 금지할 고체 폐기물목록을 발표(2018년 4월 19일)하였다.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조정 내용 공고>를 통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폐선박 등 16종이며,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목재펠릿 등 16종이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2002년 1월 1일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중국은 2019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상품에 대해 총 15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 중 설탕(농산물), 스테인리스 강판,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하면 모두 석유화학제품이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은 페놀, 니트릴고무(NBR), 스타이렌 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폴리 아세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테레프탈산, 아디프산, 아세틴, 비스페놀A이다. 이 중 현재 한국산 비스페놀A에 대해 일몰재심이 진행 중이며, 중국은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11년간) 한국산 BPA에 대해 4.7~37.1%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금년 8월 30일 일몰재심을 개시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산 EDPM과 PP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 중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 차이는 없어졌다.

▶ 중국의 세목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房産稅), 차량선박세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차량취득세, 인지세, 계약체결세 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도시 유지 보호 건설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환경보호세 등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익기업: 20%
 - 다만, 영세기업(소미기업=소규모저이익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1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25%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적용기한 : 2019~2021년)
 - 또한, 영세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100만 위안 초과 ~ 3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50%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적용기한 : 2019~2021년)
 - * 상기 영세기업은 국가의 비제한형, 비금지형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연간 소득세 과세 소득(과세표준)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수 300인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칭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중조세조약 제23조)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6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종합소득(급여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경영소득,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등
 - 종합소득: 기본공제 (월 5,000위안), 특정항목공제(법정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 특정항목 부가공제(교육비, 의료비, 노인부양지출, 주택임차료

또는 주택대출이자 등) 및 기타공제를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35%의 누진세율
-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 20% 세율 적용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부터 일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종합과세소득에 대하여 익년 3월~6월 기간 정산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종합과세 정산 시 조건에 부합되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

▶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여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6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6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值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세 과세 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수입,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9%, 13%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차액으로 징수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이 실행됨에 따라 여객운송비에 대한 전자일반 부가가치세영수증 등 일부 일반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 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 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는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 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 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내 211개 국가지정인증·시험기관이 있다.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 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오디오·비디오 설비

9. 정보기술장비	10. 조명기기	11. 자동차 제품 및 부품	12. 타이어
13. 강화유리	14. 농기구	15. 통신단말제품	16. 소방제품
17. 방법 제품	18. 무선 제품	19. 장식용, 인테리어 제품	20. 완구
21. 방폭 전기기기	22. 가정용 가스레인지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 에는 용제형 목기도로,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로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으며 2018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CFDA의 동 업무는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로 이관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헬멧(2017년 10월),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 2019년 10월에는 방폭전기기와 가정용 가스레인지(2020년 10월 1일 시행)를 CCC 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현재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27개 품목이다.

다만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 졌고,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조명기기에 대한 CCC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 기재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 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1월 1일부터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NMP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NMP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SESQ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18년 3월, 국무원의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직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등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을 형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설비안전감찰국에서 관련 행정허가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수 설비’는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5)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6)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에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 (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7)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 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 (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8) 에너지효율라벨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04년 8월 13일에 발표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CQC 라벨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 자율인증을 받는다. CQC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관련 품질, 안전, 성능, EMC, 유해물질 제한량(RoHS) 등 요구에 부합됨을 표시하며 인증범위에는 기계설비, 전력설비, 전기, 전자제품, 방직품, 건축자재 등 50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CQC인증은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으면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CQC 인증을 획득하면 CCC 인증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법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법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법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 기술 방법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 계획」(2015년 6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등 환경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338개 지급 이상 도시 중 121개 도시의 공기 질이 환경 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체 도시의 35.8%로 2017년 대비 6.5%가 상승했다. 338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79.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다. PM_{2.5}와 PM₁₀의 농도는 각각 41 $\mu\text{g}/\text{m}^3$, 78 $\mu\text{g}/\text{m}^3$ 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와 2.5% 감소하였다. 2018년 산성비 구역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53만 km^2 이었으며, 전국 471개(구·현) 도시를 대상으로 강우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산성비 도시 비율이 37.6%이고 산성비 빈도는 10.5%로 나타났다.

전국 지표수 1,935곳에 대한 조사결과 I 급~Ⅲ급의 비율이 71%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V급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6.7%로 전년 대비 1.6% 낮아졌다. 한편, 2018년 10,168곳의 국가급 지하수 수질 관측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I 급이 1.9%, II급이 9.0%, III급이 2.9%, IV급이 70.7%, V급이 15.5%였으며, 망간, 철, 탁도, 경도, 용해성 총고체, 요오드화물, 염화물, 질산화물 및 황산염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상 도시의 906곳의 집중 식 생활식수 수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814곳이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89.8%에 해당한다. 여름철 I 급 해수수질 기준에 도달하는 해역 면적은 중국 관할 해역 면적의 96.3%를 차지하였으며, IV급에 미치지 못하는 해역 면적은 1.1%를 차지했다. 연안 해역의 417개 점위를 우량(I 급·II급), III급·IV급·하위IV급으로 분류한 결과 각각 74.6%, 6.7%, 3.1%와 15.6%로 나타났다.

한편 323개 지급 도시에 대하여 지역별 낮 소음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평균치는 54.4 데시벨이고, 319개 도시의 밤 소음환경 모니터링 결과 46.0 데시벨로 나타났다. 또한 324개 지급 이상 주간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평균 67.0 데시벨로 1급 지역이 66.4%였으며, 321개 도시의 야간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평균 58.1 데시벨로 1급 지역이 47.0%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국 생태환경질 우량 현지역의 면적이 전국 면적의 44.7%, 일반 현지역의 면적은 23.8%, 비교적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현지역의 면적이 3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각종 자연 보호구는 2,750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육지 자연보호구의 면적은 전국 육지 면적의 14.8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 급 자연 보호구는 2018년 474개로 증가하였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준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폐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²⁾.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 세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강도는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2)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공개
환경오염 처벌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 「신환경보호법」(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 법규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제25조	환경보호부령 제29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5조	환경보호부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0조	환경보호부령 제30호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9조	환경보호부령 제28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3조	공안부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2014년 12월 24일
제43조	국가발전개혁위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2014년 9월 1일
제45조	재정부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2014년 12월 31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8조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2014년 11월 27일(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47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4년 12월 26일
제47조	환경보호부령 제32호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2014년 12월 19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2조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2015년 1월 9일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2014년 10월 24일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2014년 12월 31일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국무원 「환경관리집법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2일
	국무원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2014년 8월 6일
	국무원 「환경오염 제3차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2014년 12월 27일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2016년 시행),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V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 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10條)」수립을 통해 농업용지와 기업용지의 오염분포 및 환경위험을 명확히 조사하고, 토양오염 모니터링 지점을 모든 현(시, 구)에 설치하고, 토양 오염 복원정화 추진(2020년까지 오염된 경지 666만 7천km²의 정화 및 복원), 신규 토양오염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기본방책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바, 제18차 당대회(12.11)에서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에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한 “五位一體”를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념을 삽입하였으며, 2019년의 重點工作에도 오염관리, 생태문명 건설 강화, 녹색발전 적극 추진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13.5계획기간

(2016~2020년) 중 환경 분야 중점 과제로는 핵안전, 토양환경 보호, 생태 환경 보호, 수환경 오염방지 등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행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 682호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 작성방법, 환경영향 보고표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등기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기업은 동 조례를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2) 청정생산제도

2003년 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년 8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 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 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

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 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 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 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환경행정처벌판법(2010년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유형은 △경고, △벌금, △생산중지, △생산시설폐쇄, △생산관련 허가증 말소, △위법 소득세 몰수, 위법 재산몰 몰수, △행정구류 등이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시 행정처벌 주체는 현급이상 환경부이며, 행정처벌 절차는 ①입안, ②조사와 증거수집, ③고지와 공청회, ④행정처벌 결정, ⑤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집법 사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1) 13.5 계획의 정책목표

중국은 그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생태환경 여건과 대중들의 요구간의 격차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기존의 생태환경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7일에 발표된 “13.5” 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는 10개의 환경분야 목표 및 지표를 포함시킨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13.5계획의 생태환경분야 내용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동 계획을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은 기존 양회시 발표된 계획을 기반으로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13.5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 등 관리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 “13.5” 생태환경보호 주요지표

지표		2015년	2020년	[누적] ¹	속성
생태환경질					
1.대기환경	지금 이상 도시 ² 의 대기질 우량 달성비율 (%)	76.7	>80	-	구속성
	초미세먼지 기준미달의 지금 이상 도시의 농도 감소 (%)	-	-	[18]	구속성
	지금 이상 도시의 중오염 이상 오염날씨의 비율 (%)	-	-	[25]	권고성
2.수질환경	지표수질 ³ 의 3급 이상 수체의 비율 (%)	66	>70	-	구속성
	지표수질의 5급 미만 수체 비율 (%)	9.7	<5	-	구속성
	중요 하천 및 호수 기능구역의 수질기준 달성비율 (%)	70.8	>80		권고성
	지하수 수질 극히 나쁨 비율 (%)	15.74	약15	-	권고성
	근해안 수역의 우량 (1,2급) 비율 (%)	70.5	약70	-	권고성
3.토양환경	오염경작지 안전이용율 (%)	70.6	약90	-	구속성
	오염토지 안전이용률 (%)	-	90이상	-	구속성

지표		2015년	2020년	[누적] ¹	속성
4. 생태현황	산림피복률 (%)	21.66	23.04	[1.38]	구속성
	산림축적량 (亿立方米)	151	165	[14]	구속성
	습지부유량 (亿亩)	-	≥8	-	권고성
	초원 종합식물 피복률 (%)	54	56		권고성
	중점생태기능구역 소속지역의 생태환경 현황지수	60.4	>60.4	-	권고성
오염물질총량					
5.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화학적산소요구량	-	-	[10]	구속성
	암모니아	-	-	[10]	
	이산화황	-	-	[15]	
	질산화물	-	-	[15]	
6. 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중점지역 중점업계 VOCs5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TN6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 TP7	-	-	[10]	
생태보호 및 복구					
7. 국가 중점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율 (%)		-	>95	-	권고성
8. 전국 자연해안선 보유율 (%)		-	≥35	-	권고성
9. 신증 사막화 토지관리 면적 (만km ²)		-	-	[10]	권고성
10. 신증 토양유출 관리면적 (만km ²)		-	-	[27]	권고성

주: 1. []내의 수치는 5년 누적수치

2. 대기질 평가는 전국 338개 도시(지, 주, 연맹 지역의 일부 직할 현, 시로서 산사 및 전저우를 포함하지 않음)
3. 수질환경평가는 전국 지표수 국가통계 단면을 포함하며 단면수량은 "12.5" 기간의 972개에서 1940개로 증가함
4. 2013년 데이터
5. 중점지역 중점업계를 대상으로 VOCs 총량통제를 추진하고 전국 배출총량 10% 이상 감축
6. 해안56개 도시 및 29개 과도 영양화된 수고를 대상으로 TN 총량통제 실시
7. 총 TP가 통제단위 초과 및 상류 유관지역을 대상으로 TP 총량통제 실시

(2)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17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 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mu\text{g}/\text{m}^3$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년 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 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³⁾,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3) 수오염방지 행동계획(2020, 2030년)

2015년 4월 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통지를 통해 2020년, 2030년까지 추진할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행동지침인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十条)」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개 중점 조치(추진전략), 238개항 구체적 조치를 포함(개선 또는 강화 조치 136개항, 개혁 또는 창의적 조치 90개항, 연구성 조치 12개항)하고, 오염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4대 중점분야, 즉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에 대해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혁조치로는, 1)자연자원 사용용도 관리, 2)수자원 절약, 집약사용 제도 개선, 3)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원환경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 구축, 4)자원 유상사용 제도 실시, 5)생태보상제도 실시, 6)환경시장 발전, 7)생태 환경 보호사업의 사회자본 유치 확대, 8)오염배출 관리제도 보완, 환경관리와

3) 관련기업 가운데 따당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행정집행의 독립, 9)육지해양 생태시스템 보호 복원 및 오염방지구역 연합 메커니즘 구축, 10)환경정보 공개, 신고제도 강화, 11)오염배출 허가증 제도 강화, 기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 실시, 12)배상제도 실시, 법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 등을 담았다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대 조치 이행에 4~5조 위안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은 2016년 3월 17일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최근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관리 현대화 등이다. 주요 기준(지표)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수 수질,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 삼림발전 등 4개의 구속성 기준외에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를,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도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1) 환경보호 발전 배경 및 경과

중국 생태환경부가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리간지에(李干杰) 생태환경부장은 현재 7개 측면에서 환경보호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① 환경보호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국책(国策)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国家战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원절약, 환경친화적 사회, 생태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 18대 당대회⁵⁾부터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건설 사상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② 환경오염관리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에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 등 3대 행동계획을 발표·추진하고

4) 부록에 해외도시 수질정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청계천을 비롯, 영국 런던 템스강, 독일 엠서강,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5) '12.11.8.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

있다. ③ 생태환경보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대 당대회부터 생태 보호·복원작업을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생태보호 구역을 설정했다. ④ 환경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8대 당 대회부터 생태환경피해 책임추궁, 오염물질 배출허가, 해외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도 수립을 통해 생태문명건설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⑤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1974년 국무원 환경보호 영도소조(领导小组, 지도자 소위원회 의미를 갖는 중국 특유의 조직 방식)가 구축되었고, 1982년 도시농촌건설환경보호부에 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다. 1988년 국무원 직속 국가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격상 되고, 2008년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가 설립되었다. ⑥ 법 집행 및 감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부터 법 집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2015년 1월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고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을 통해 약 15만 개의 환경문제를 적발 및 해결하였다. ⑦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70년 동안 약 30건의 생태환경 관련 다자간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시행을 승인하였다. 특히 18대 당 대회에서 『중국 2030년 지속가능개발 국가별 이행방안(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别方案)』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생태문명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 녹색발전을 내 세우고, 『녹색 ‘일대일로’ 건설추진 관련 지도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및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협력규획(“一带一路”生态环保合作规划)』을 제정했으며,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생태환경보호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들과 약 50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하고, 『일대일로녹색발전국제 연맹(“一带一路”绿色发展国际联盟)』을 공식 출범시켜 국가 간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2) 환경보호 산업상황

중국 8,000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환경산업발전상황보고(2018년’, 중국환경산업협회)』에 의하면 2017년 환경산업 영업수익은 6,209억 위안(한화 약 106.42조원)이며, 그 중 수질오염방지분야가 2,334.58억 위안(한화 약 40조원), 고체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이용분야가 2,166.94억 위안(한화

약 37.14조원)으로 각각 전체의 37.6% 및 34.9%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밖에 대기오염방지분야는 925.14억 위안(한화 약 15.86조원), 환경모니터링분야 434.63억 위안(한화 약 7.45조원), 환경복원분야 93.14억 위안(한화 약 1.6조 원), 소음 및 진동 제어분야 6.21억 위안(한화 약 1,064.35억 원), 기타 분야 248.36억 위안(한화 약 4.26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중국 환경산업 세부 분야 시장 동향[영업수익(营业收入)]

구분	영업 수익		
	인민폐(억위안)	한화(조원)	비율(%)
수질오염방지	2,334.58	40	37.6
고체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이용	2,166.94	37.14	34.9
대기오염방지	925.14	15.86	14.9
환경모니터링	434.63	7.45	7.0
환경복원(环境修复)	93.14	1.60	1.5
소음 및 진동 제어	6.21	0.1064.35	0.1
기타 분야	248.36	4.26	4.0

자료 : 중국환경산업협회, '중국환경산업발전상황보고(2018년)', '19.2.28발표

영업이윤은 수질오염 방지 분야가 362.82억 위안(한화 약 6.22조 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이용 분야 263.07억 위안(한화 약 4.5조 원), 대기오염방지 분야 88.5억 위안(한화 약 1.52조 원), 환경모니터링 분야 45.86억 위안(한화 약 7,860.72억 원), 환경복원 분야 12.07억 위안(한화 약 2,068.61억 원), 소음 및 진동 제어 분야 1.61억 위안(한화 약 275.81억 원), 기타 분야 30.57억 위안(한화 약 5,240.4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중국 환경산업 세부 분야 시장 동향[영업이윤(营业利润)]

구분	영업 이윤		
	인민폐(억위안)	한화(조원)	비율(%)
수질오염방지	362.82	6.22	45.1
고체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이용	263.07	4.5	32.7
대기오염방지	88.50	1.52	11.0
환경모니터링	45.86	0.7860.72	5.7

환경복원(环境修复)	12.07	0.2068.61	1.5
소음 및 진동 제어	1.61	0.0275.81	0.2
기타 분야	30.57	0.5240.48	3.8

자료 : 중국환경산업협회, '중국환경산업발전상황보고(2018년)', '19.2.28발표

(3) 기술수준 발전 현황

『환경보호산업기술현황분석 및 산업 전망(북경창업투자연맹(北京创投联盟), 2018.1.3.)』에 의하면 중국의 오수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업오수와 생활오수로 구분되며, 공정원리(工艺原理)는 물리처리법(物理处理法), 화학처리법(化学处理法), 생물처리법(生物处理法) 등 3가지 공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물리처리법은 물리작용을 통해 오수 중 오염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침전법(沉淀法), 여과법(筛滤法), 공기부상법(气浮法) 등을 포함하며, 화학처리법은 화학반응작용을 이용하여 오염수에서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방식이고, 생물처리법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오염물질을 무해 물질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대기오염처리기술의 경우에는 탈황, 탈질, 제진(除尘), VOCs(휘발성 유기물) 수집·처리 등이 주요기술로 볼 수 있다. 공업 분야에 적용하는 탈황 기술은 습식탈황 및 건식(반건식)으로 구분되며, 탈질기술은 주로 선택적 촉매환원법(选择性催化还原法, SCR) 및 선택적 비촉매환원법(选择性非催化还原法, SCNR)을 포함하는데, SCR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질기술이다. 제진(除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은 기계식 제진, 습식제진, 정전기(静电)제진, 포대형(袋式)제진이 있다. VOCs는 종류가 다양하고 분포면적이 넓으며, VOCs 오염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VOCs 대체제품 및 VOCs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VOCs 오염 해결의 필수 노선이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VOCs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VOCs 관리 기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고체폐기물 처리방식으로는 위생매립(卫生填埋), 고온퇴비(高温堆肥), 소각(焚烧)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이 중 위생매립은 중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처리방법이며, 고온퇴비는 쓰레기 및 분뇨 등을 통해 농업비료를 만드는 오래된 기술로, 오늘날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상해

사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정책을 시행하였고 향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될 것이 예상되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보호산업 발전방향

현재 중국은 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환경산업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의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⁶⁾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과학기술 강화와 융합을 통한 환경관리를 강조했으며, 리커창 총리 또한 2019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관리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생태환경 과학 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주요연설 및 지시는 지방정부의 사례들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소성 의흥시(宜兴市) 환경보호과학기술 공업단지의 경우, 전통적 환경보호 산업과 최신 정보기술의 융합발전, 스마트 환경보호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생태환경부 및 중국 주요 언론 환경 관련 보도에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환경 모니터링 강화, AI 생활쓰레기 분류로봇 등 최신기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바, 앞으로 중국 환경보호산업에서 첨단기술개발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환경보호산업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이 환경보호산업의 미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18년 중국의 전체 자동차산업의 수요는 전년대비 3.2%감소한 2,738.7

6) '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새로운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옮겨감을 명시

만대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승용차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가처분 소득 하락,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중소도시 위주의 저가 차량 판매 감소, 부동산 투자 확대, 國-4 기준 실시 논란에 따른 구매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한 2,301만대가 판매되었다. 상용차의 경우 픽업 차량의 통행제한 완화, 國-3 기준 차량 퇴출, 과적차량 단속 등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437.1만대가 판매되었다.

업체별로 중국 자체 업체인 Geely가 급성장(15.7%)하였으나, Changcheng (-1.6%), Changan(-23.9%) 등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며, 합자업체 중에서는 혼다(3.0%), 닛산(1.5%), 토요타(14.5%) 등 일본업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내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공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향후 연간 생산량이 4천만대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한 자동차 구매자는 2~30대 젊은 층이 다수이다. 이들은 대부분 1인 자녀 출신으로 이들의 취약한 구매력을 부모세대가 보완해주는 경향이 있어 중국산 브랜드 들은 주로 이런 소비자를 겨냥하여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중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특히 2018년은 전년도 구매세 인하의 기저효과,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이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과거 고속성장세에서 점차 중고속 성장세로 전환되고 있다.

▶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내수)·수출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 대수(만대)	2,373	2,450	2,731	2,902	2,780
증가율(%)	7.3	3.3	14.3	2.9	-4.2
판매 대수(만대)	2349	2459	2723	2,888	2,808
증가율(%)	6.9	4.7	13.5	2.8	-2.8
수출 대수(만대)	94	75	80	89	104
증가율(%)	-0.2	-20.3	7.8	11.2	16.8

자료 : 자동차 공업협회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 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7월1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을 15%, 부품은 6%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에 맞춰 수입차와 렉서리카의 가격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갈등에 따라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하여 40%까지 관세가 올라갔으나, '19년 1월부터 3개월간 다시 추가관세 부과를 정지하여 다시 25%로 낮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2)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전략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란 '3强-3中-3小'의 내연기관 완성차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브랜드로의 기술이전 부진, 해외 브랜드 추격에 실패하며 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의 신흥산업 발전 분야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 자동차 관련 내용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 실시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권장
- 전기자동차(Blade Electric Vehicles, B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대대적으로 발전
- 모터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고·저온 적응성 등 핵심기술 중점 발전
- 표준이 일치하고 서로 겸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시설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 지속적인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신에너지 누적 생산판매량을 500만 대로 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 폐기 배터리 회수처리 강화

중국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GDP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발전의 장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를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 200만대, 누적생산 및 판매량 500만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 인프라 설치,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에 정하고 매년 보조금을 감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3.4만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1.7만 위안 등 총 5.1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은 1.8만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은 폐지되었다.(전기버스, 연료전지차 제외) 이러한 보조금 감축 및 기준 강화는 항속거리가 긴 자동차에 유리하게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2014년 9월 중국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구매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으나, 2017년 재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축소정책을 상쇄하기 위해 일련의 “구매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리스트”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량에 대한 구매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 연도별 순수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추이

(단위 : 만 원/대)

1회 충전 주행거리(km)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5	2018.6-	2019.3-
80≤R<150	3.5	3.325	3.15	0	0	0	0	0
100≤R<150				2.5	2.0	1.4	0	0
150≤R<200	5.0	4.75	4.5	4.5	3.6	2.5	1.5	0
200≤R<250							2.4	0
250≤R<300	6.0	5.7	5.4	5.5	4.4	3.1	3.4	1.8
300≤R<400							4.5	
400≤R							5.0	2.5

* 상기 보조금 기준에 배터리 에너지밀도 조정계수, 차량 에너지소비 조정계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보조금 금액을 산출

* 개인 외 구매 또는 상업적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보조금의 0.7배(30% 삭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또한 신에너지자동차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300~ 400위안 정도의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보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북경시에 충전시설은 집중되어 있는데 북경시의 경우 2017년말 현재 충전소 1,873개소, 충전기 1만7천여 개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충전소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육성 정책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차 생산의무 부과, 배터리 업계 대형화 유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현재의 20%,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50%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집중식 충전소 1.2만개 이상, 분산식 충전기 480만개 이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형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도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인승 이하 내연기관차량을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간 100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전기차를 약 2만대 이상 생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자동차 탄소배출거래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바, 가솔린차 생산 및 수입 수량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축소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채우거나 탄소배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화이트리스트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 기업 3곳(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에 처음으로 우리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클래스)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철강

(1) 「철강산업 13.5 계획」 발표

2016년 11월 14일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철강산업 계획」의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철강산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규획」으로 대체하여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동 규획에 따르면 조강 생산능력은 2015년 11.3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강능력이 1~1.5억 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조강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규획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은 7.5~8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8억 톤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철강산업 12.5규획」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번 「산업구조조정 13.5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강사의 생산기지 분포의 최적화, 스마트제조 발전과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함께 강화하고 철강사의 합병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정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은 추진력과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가 희망하는 합리적인 산업분포 및 생산능력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3.5규획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국에서 강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시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강사들도 적극 기술연구, 신제품개발,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투자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계획(2016~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 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 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19건(전년동기대비 37% 증가), 14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6% 증가)이다.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49건(전년동기대비 32% 증가), 7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3% 증가)이다. 2016년 한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적은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 철강산업 구조조정

최근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최대 화제는 단연 구조조정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1억~1.5억톤의 과잉 철강 생산시설 감축, △철강 밀석탄 관련 인력 180만명 재배치, △대형 철강국유기업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16년 보산강철-무한강철 합병에 따른 초대형 철강사의 탄생과 조강생산능력의 감축이다. 2016년 6월 27일 중국의

대표 철강사인 보강(중국 조강생산 2위)과 무강(6위)은 합병을 발표하여 2016년 2월에 정식으로 보무강철을 설립했다. 두 철강사 모두 중앙정부 소속 철강사이고 합병 후 생산량 6,100만 톤 규모(2015년 기준)인 초대형 철강사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강과 무강의 합병으로 향후 판재류 위주의 제품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시장 지배력 확대(합병 후 시장 비중: 방향성전기강판 80%, 자동차냉연강판 65%, 가전용강판 35%, 철도용 궤조 24%) 및 경쟁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보강의 경영관리 노하우가 무강에 전수되면서 무강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20년)간 조강능력을 1~1.5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내 구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중앙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⁷⁾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1월 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단기간내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5)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출세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7) 띠티오강은 철스크랩을 원료로 소형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강재를 총칭한다. 띠티오강은 정부의 품질규정에 미달하여 생산이 금지되는 강재이다.

성장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점차 제한하는 추세이다. 2017년 현재 스테인리스와 고부가가치 특수강은 15%, 합금철은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했다.

섬유 · 식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년 5월 20일 공고를 통해 2005년 6월 1일부터 동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년 5월 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년 6월 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년 5월 중국산 7개 섬유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년 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년 1월 1일부터는 52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2005년 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 말로 만료돼 2008년 1월 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 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 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역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수입 분야는 소비 업그레이드 및 관세 인하 등의 이유로 의류 수입량도 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내 시장의 소비 잠재력도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의류 소매 시장이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이 섬유 수입품 관세를 여러 차례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약 430개 직물 의류 수입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수입 관세는 14%-16%에서 6% 정도로 인하되어 2018년 전년대비 직물 수입량은 3%, 의류 수입량은 14.8%로 증가하였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글로벌 섬유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이 보편화 되면서 브랜드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상품의 품질 경쟁뿐 아니라 문화 및 개성화에 대한 높은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섬유 제품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에 벗어나, 뉴미디어(New Media)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우인(抖音), 콰이서우(快手) 등 쇼트클립 채널 및 왕홍(网红)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적합성 평가제도 시행: 시장관리 총국(市场监管总局) 및 공신부(工信部)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목록’(1차)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부터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합성 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 12종(휴대폰, 프린터, TV,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열수기, 복사기, 팩스 등)의 품목을 제시 하였다. 관련 평가 인증 시 “자원성 인증(제3자 인증)” 및 “공급자 적합성 선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 품질 감독검험검역 총국이 2019년 7월 31일 업데이트한 「검사필 수입 상품 리스트」는 총 21개 품목, 137개 제품이며, 동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들에 대해 ‘CCC’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NDRC), 공신부(工信部), 민정부(民政部), 재정부(财政部) 등 11개 중앙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2019년 중국 전체 가전 제품 소비 시장 추진 방안(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을 발표하였음. 베이징시는 이에 따라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여 단일 가전제품에 최대 800 위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 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2003년 10월 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생태환경부에 수입 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 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은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차,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동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학물리스트」(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 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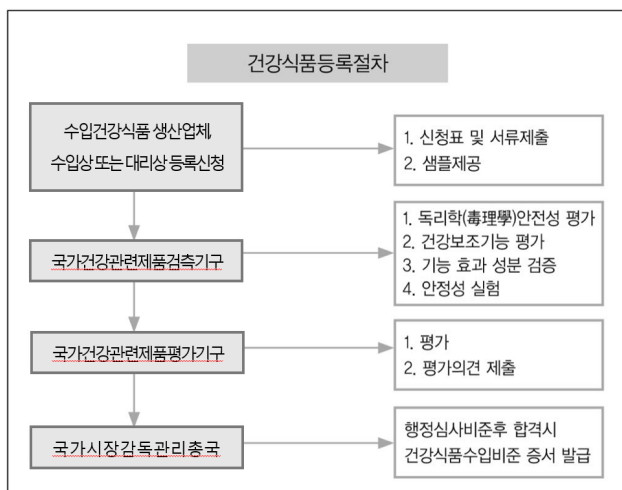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 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 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 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 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년 8월 위생부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년 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

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 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 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해관총서(GACC)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GACC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년 7월에는 2005년 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籤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籤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 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籤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GACC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於對進口食品標籤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 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품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NMP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 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NMP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 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 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 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로이다.

NMP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NMP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원칙

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NMP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NMP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 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최초등록비용이 두배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 의료기기의 최초등록비가 중국제품의 경우 약 15만위안인데 반해 수입제품은 약 30만위안에 달한다. 등록대행 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NMPA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 국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푸둥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심사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바있다. 이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 강화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해시 푸둥신구를 대상으로 시범적,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후 위의 푸둥신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8년 11월 10일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하여 중국 전역에서 등록

관리제로 시행되었다. 반면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하여 등록관리제로 전환되었으나 사후 관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더더욱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안전성 등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특수용도 화장품은 우선 NMPA가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4~8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특수용도 화장품은 최소 8개월~1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일반화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업체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년 8월 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년 5월 1일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2010년 4월 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 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 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NMPA에서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발표된 (2016년 12월 1일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 (2007)’의 개정판으로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 미국, 일본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하여 수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준용원료, 이화학, 미생물, 독리학, 인체안전성,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일부 새로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정책이 반영되었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와 같은 화장품 정책변경사항을 숙지하여 높아 지는 화장품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중국 NMPA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 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즉,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NMPA의 위생 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숲·초원·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시장 점유율 90%이상의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을 통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년 5월 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년 4월 1일 「全国大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희토 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강(包鋼)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광(中国五矿), 중위(中国铝业), 중국남방(中国南方), 광둥희토(广东稀土), 샤먼우에(厦门钨业)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영 희토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희토광산물 12만 톤, 희토 분리·정제 제품 11.5만 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각각 97.1%, 100%가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말 기준 전체 매출액은 22억

1800만 위안(약 3,747억 원)에 불과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 하락하였고, 영업이익도 부진하며 우광(五矿)희토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 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영업체의 생산 및 출고조절로 희토시장은 보다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광, 선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형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 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조달기관은 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급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⁸⁾가 존재한다.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정리하면 재정부와 중앙정부 직속 5개 기관과 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 그리고 수백개의 시·현·구급 정부 조달중심 및 입찰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약 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단일공공조달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유기업조달, 군수 조달 등은 정부조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8) 각 성시별 조달센터가 설치된 경우와 공공자원교역센터 내 한 부서로 설치된 경우로 나뉜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대리기구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조달센터(政府採購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標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⁹⁾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자체조달을 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¹⁰⁾ 경쟁성 담판, 단일구매,¹¹⁾ 가격 조희,¹²⁾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 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9)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2014.8.31.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개정 주요내용은 정부조달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에서 자격 검정된’ 부분을 ‘집중조달기관(集中采구기관) 이외의’로 개정하는 등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축소하고 시장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3개 조항을 개정되었다.

10)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여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한다.

11) ①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②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③긴급한 수요인 경우, ④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12)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희 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희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희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찰정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www.ccgp.gov.cn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www.chinabidding.com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www.caigou2003.com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www.ctba.org.cn	발개위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www.cgpnews.cn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www.ggzy.gov.cn	발개위	공공자원교역중심	정부구매, 공사입찰

중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적인 부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기조도 고속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연안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및 기반시설과 의료시설의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중국 정부는 골머리를

않고 있다.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農民工)’라는 이름으로 도시 저층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문화혜택과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중국은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누적되어, 몇 년 사이에 북경을 비롯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스모그를 시작으로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 △시설공사 입찰 △토지사용권 및 광업권양도 △국유재산 소유권거래 등 5개 분야 전자화 촉진을 위해 「통일적인 공공자원 교역 플랫폼 구축 및 통합 조정에 관한 업무지침(整合建立統一的公共資源交易評台工作方案的通知)」을 발표하고, 2017년 6월에 전국 통일적인 교역플랫폼을 완성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전자입찰을 포함한 공공자원 교역활동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자원 거래 비용절감은 물론 공공자원 교역의 법제화, 규범화, 투명화를 추진하여 공공자원의 효율 및 효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달 트렌드(trend) 변화

중국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 초 중국의 「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조달시장규모는 35,861억 위안으로 2017년 대비 3,747억 위안, 11.7%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지출의 11.7%, GDP의 4.0% 수준이다.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공급제도를 통한 조달

협의공급이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 물품, 수량 등을 선(先)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조달자와 공급자간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방식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조달방식인 공개입찰, 초청입찰

(Restricted tendering), 경쟁성담판(Competitive negotiation), 가격문의(Request for quotations), 단일구매(Single-source procurement)에서 중앙정부 집중조달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강화로 협의공급 및 지정구매를 통한 집중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협의공급시 경쟁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공급을 축소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점점 많은 제품을 MAS로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중앙 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도 구매패턴이 협의공급과 지정조달로 확산되고 있다. 지정구매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제품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혹은 여러 공급자를 선결정하고 상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¹³⁾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달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설비, 공조기, 사무용품, 엘리베이터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절한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절한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차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13) 2012 조달청 중국정부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참고.

중국		한국	
경쟁성 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가격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공 급자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협외 공급, 지정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2) 용역(서비스)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최근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2018년 용역분야 중국조달시장규모는 12,082억 위안으로 2017년 대비 35.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야인 물품 구매, 시설공사분야보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며, 2017년 처음으로 물품 구매 규모를 넘어선 이후 2018년 더욱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정부 자체 수요 용역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제공 서비스의 용역화 추진 정책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3)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중국 정부의 정부구매력(Bargain Power)을 활용해 자원절약,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중국정부에서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및 자원절약제품 조달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의무(우선)조달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8년 정부조달 실적은 각각 1,647억 위안, 1,653억 위안을 조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구매한 실적은 27,488억 위안으로 전체 조달실적의 76.7%를 점유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소상인으로부터 11,941억 위안을 구매하였고 이는 전체 중소기업 조달실적 중 43.4%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제품 조달구매 촉진방법」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처음으로 빈곤지역 농부산물 정부조달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조달의 정책적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4)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확대

최근 중국은 도시·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PPP 확대하고 있으며, PPP사업확대를 중국경제성장 5대방안(△PPP사업확대 △효율적 재정대책 △지방부채관리 △세제개혁 △정책관리감독)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지하철, 부동산 등 인프라분야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 민관협력사업 현황은 2017년 9월 현재 전체 투자규모(재정부+발개위)는 투자총액 17.8조 위안의 민관협력사업(PPP) 14,220여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물, 에너지, 운송, 자연환경, 생태보호 등의 분야이다.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PPP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으나, 법적기반 미흡, 관시(關係)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중국 현지업체와의 경쟁등 수 많은 리스크와 함께 수익성 담보도 불확실해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재무적 타당성 및 계약조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PPP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민간 기업과의 거래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유망품목으로는 위험물·폐기물 저장장치, 오폐수처리, 전력망관리, 자동화점검시스템 등 기술집약이 필요한 고기술·고기능 제품에 대한 납품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정부조달분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내국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을 목표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 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조달과 공사입찰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7월 재정부는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8월 발개위는 <공사입찰분야 비즈니스 환경 정치 공작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달분야 엄중위법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공동징계 전개에 관한 합작 비망록>을 발표하고, 정부조달 분야의 부조리,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식재산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장비·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여 개의 특허권에 기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하여 시작된 중국내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은 2019년 2월 양기업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중국 안에서 중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영역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은 52.6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이 154.2만 건(2017년 대비 11.6% 증가)으로 4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737.1만 건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경기 하강 등에 따라 2019년에는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8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13.9천 건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또한 18.3천 건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상표법 개정) 중국은 중국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이의신청·무효의 사유에 포함시키고,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상한을 1~3배에서 1~5배로 확대시켰으며, 악의적 상표출원 및 악의적 소송과 관련된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안(초안)은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18년 12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었다.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특허법」 4차 개정안(초안)에 대해 2019년 2월 3일까지 사회 공중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초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등록제도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의 성실신용원칙 및 특허권 남용 금지 원칙이 신설되었고,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위한 시험 기간 등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제도가 신설되었다.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 규정을 개선하고,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강화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특허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디자인권의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며, 특허, 실용신안의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을 16개월로 연장하였다. 「특허법」 개정안(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283,414건(2017년 201,039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1심 사건은 13,545건(2017년 8,820건)으로 전년 대비 53.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1심 사건은 4,319건(2017년 3,621건)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 침해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2018년에는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21.5만 건(2017년 20.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은 법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이후,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향상,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인력양성·정보제공·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등 3개 지역에 지식

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고,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신설된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2019년에는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2016년 7월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점업무 분담 방안」, 2017년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제조에 대한 타격 강화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18년 「2018년 지식재산권 전략의 심도 있는 실시와 신속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요」 제정 작업을 착수 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다. 2018년도 기준 특허·상표 담보 대출액이 1,224억 위안(20조2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춘에 지식재산권 전문펀드도 만들어지는 등 향후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금융 분야가 융합되는 펀드 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 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2014년 4월), 휴렛팩커드의 삼성전자 프린터부문 인수건 (2017년 10월), 가스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건 (2018년 9월)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외국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였다.¹⁴⁾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壟斷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 혐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 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경쟁법을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의결기구로서 국가발개위, 상무부,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14)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
중전에는 국가발개위(가격관련 법위반행위 담당), 상무부(기업결합 심사 담당),
공상총국(가격과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 담당) 3개의 기관이 경쟁법의 집행을
분장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
성·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중국에서는 독점협의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처벌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독점협의를 한 경우
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
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 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 등은 반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신설되었다. 2019년 4월 23일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중 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상업비밀의 범위·비밀침해주체·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기업결합 간이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기준 전체사건의 81% 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안전의 건당 평균 심사기간이 16일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4년경부터 사전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여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 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이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 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 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산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2002년에는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既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 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 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 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4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11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 총 126건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4,945개(국제노선수 849개, 국내노선수 4,096개(홍콩·마카오·대만은 100개)), 민용공항은 235개, 보유항공기 3,639대, 국적항공사 60개사(국유항공사 45개, 민영항공사 15개)¹⁵⁾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국 항공 산업의 매출액은 10,142.5억 위안(항공사 6,130.2억 위안, 공항 1,104.2억 위안)이며 이윤은 536.6억 위안(항공사 250.3억 위안, 공항 173.2억 위안)이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년 10월 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15)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유통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KPMG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 일, 영, 독, 프랑스 시장을 합한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중국전자상무발전보고 2017>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며, 전자상거래업 종사자 수는 4,2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20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2·5 발전 계획의 두배인 약 40조 위안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는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에서 벗어나 “중속도”를 유지하는 “성숙기”에 들어섰으며, 거래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2년 성장률이 64.7%로 가장 높고, 201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의류, 화장품, 출산, 유아용품의 해외직구 등 업종이 번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 의류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7,4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두 아이 정책의 실시로 출산, 유아 용품의 온라인 구매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출산 유아 용품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11월 22일 중국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2018년판)(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2018年版))」을 발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리스트(2018년판)」는 HS code 8단위 기준, 총 1,321개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1차, 2차 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하여 새로 만들었다. 「리스트(2018년판)」 시행과 더불어 2016년 4월 7일 발표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1차 리스트)와 2016년 4월 15일 발표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2차 리스트」(2차리스트)는 폐지되었다. 「리스트(2018년판)」되면서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였으며,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비고란에 '수입 금지 또는 수입제한 중고 전자기기 제외' 등 내용을 명시하여 관련규정 준수를 명시하였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은 1회 5000위안(기존 2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기존 2만위안)으로 상향하였으며, 해외직구 시범도시를 기존의 15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중국의 투자 개방 여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의 분류 및 목록 중의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사항에 따르고 있다.(제한 사항은 아래 '투자장벽'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참조)

운송·물류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의 인정방법(中國民用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認可辦法)」에 따라 중국 항공운송협회(中國空運協會)로부터 '항공 운송판매대리자격(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00% 외자 출자 기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제를 두어 사실상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운송·물류 분야 관련 분류 및 출자비율 규제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도로화물운송	장려형	
2	도로 여객 운송	허가형	-
3	철도 여객 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4	항공운송	장려형	외자비율 25% 이하
5	수상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6	국제해상운송	장려형	
7	국제 컨테이너 연결 운송업무	장려형	-
8	농림수산물 항공	장려형	합자, 합작만 가능함, 외국인 투자비율 합의가능
9	자동차 고충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 보관시설, 경영	장려형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외자기업의 도로화물운송업과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관한 주요사항

도로화물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도로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교통 주관 부처에서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취득 후 설립예정지의 성급(省級) 교통주관 부서에 도로 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신청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500만 위안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300만 위안 (3)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 200만 위안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에 종사하는 지사를 1개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 대리자격증(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100% 외자 출자 기업은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의합자, 중의합작기업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년 11월)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 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¹⁶⁾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16)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입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중국의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8년도 건설기업 총생산액은 23조 5,08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성장하였으며, 실현 이윤은 8,104억 위안으로 8.2% 성장하였다. 건물 시공면적은 140.9억㎡, 건물 준공면적은 41.4억㎡이다. 2018년 말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95,400개로 8.34%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는 5,563만 명으로 0.48% 증가,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373,187 위안/인원으로 7.40% 성장하였다. 2018년도 중국의 GDP는 900,3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60% 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61,808억 위안으로 4.50% 성장하여 GDP 성장률에 비해 2.10%포인트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한국이나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 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격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단, 등록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 건설기업이 중국 내에 현지 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① 전액 외국 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③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④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중 ③과 ④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 절차는 ①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 신청 ⇒ ②국무원 보고 ⇒ ③국무원(상무부)은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 결정,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 ⇒ ④허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성·시·자치구에 등록해 허가서 취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및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 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년 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 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년 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進入和管理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체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상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 (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을 취소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신사업 진출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 지분 20%, 합계 지분 25%)을 2018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49%)도 2018년말까지 51%까지 상향 조정하고 3년내에 폐지하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50%)은 2018년말까지 51%로 확대하고 3년내에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상한폐지 이후에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분취득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인가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6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45개사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11개(현지법인 5개, 지점 3개, 사무소 3개), 보험회사 10개(생명보험 4사, 손해보험 6사)이며, 그밖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18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6개)가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으나,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중국계 대형 국유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2006년말 26개에서 2018년 6월말 현재 101개 영업점 및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6월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내 원화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

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 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나) 제약 조건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 미만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확대가 쉽지 않고, 각종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에는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비유통주 개혁(2005년 4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경우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년 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손해보험사에게도 허용되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22개 외국 손해보험회사 중 8개사(한국계 2개 포함)에 대해 취급인가가 이루어졌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보험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
 - 중국내 대표기구 설립기간이 2년 이상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修改「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 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 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 위안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장거리·국제 유선 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

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제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년 5월 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합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 2009년 1월 7일 3장의 3G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 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4일 China Mobile(中國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년 5월 17일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가 11.3억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수의 73.9%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11.1% 증가하는데 그치고, 4G 이용자 수는 3.6% 상승하였다.

2018년 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통신 3사 2017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 (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7,405	4.5%	1,143	5.1%	15.4%	8.87	62.4%	57.7
차이나 텔레콤	2,748	0.2%	23.8	176.4%	0.95%	2.84	20%	48
차이나 유니콤	3,662	3.9%	186	3.3%	5.08%	2.5	17.6%	55.1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중국에서 2G, 3G, 4G의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게 사실 이지만 5G 상용화는 4G 사용화를 선도한 한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거의 같은 비슷하다.

중국은 2016년 12월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 발표, 5G를 정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0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앞으로 7년간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500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통신 3사가 5G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5G 개발이 중국 이통사들 중 가장 앞서 있고 구체적인 실행/사업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6월 차이나모바일과 ZTE의 5G pre-commercial 테스트베드를 광저우에 최초 설치를 시작으로 2018년내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쑤저우, 우한 등 5개 도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될 것이며, 각 도시에 100여개의 5G 기지국이 구축될 것이다. 향후에는 12개 도시(베이징, 숭안, 톈진, 푸저우, 충칭, 청두, 난창, 난징, 심천, 정저우, 선양, 랴저우)에서 우선적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차이나모바일은 20개 파트너사들과 함께, China Mobile 5G Device Forerunner Initiative을 출범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이들 파트너사 협력으로 2018년말에 5G 칩의 초기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5G 상용 버전의 단말칩은 2019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차이나유니콤은 2018년 3월 9일 5G 추진 계획(2018년 5G Network Trials, 2019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상용 서비스 개시)을 발표했다. 차이나유니콤은 5G 투자/상용화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5G 테스트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심천(선전), 항저우, 난징, 숭안에서 5G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상하이와 심천에 Field trial 네트워크를 구축을 완료했고, 또한 5G 랩에서 Huawei, ZTE, Nokia의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에 비하면 차이나유니콤의 5G 진도는 많이 느리지만 아직은 이용자 측면보다는 Cloud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은 2018년 6월 26일 <차이나 텔레콤 5G 기술 백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 통신사에 5G기술과 전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2월 국가 발전개발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이 북경 등 12개 도시에서 5G 구축 및 응용 시범 프로젝트 허가했다. 차이나텔레콤은 기술혁신과 산업융합 등 두 가지 방면에서 5G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등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42개 업체가 MVNO 사업권(시범)을 발급받았다. 2018년 7월 23일 공업정보화부는 15개 기업에 시범사업 5년후 최초로 MVNO 사업권을 발급하였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JD산하 360 전자상거래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최초의 MVNO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 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 「전신조례」의 한계성

-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红头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년 9월부터 시행
-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 부처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 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1.4월 「전신법」, 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둥 장관이 초안소조 소장 담당
- 2003년 「전신법」 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년 7월 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계,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년 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서비스 제공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¹⁷⁾ 허가 신청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년 12월 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랴오닝성 다롄시(遼寧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푸젠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상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멌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닙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랴오닝성 선양시(遼寧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

17)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이다.

구분	도시
	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벳자치구 라싸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랴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寧市), 닝샤자치구 인촨시(寧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爾自治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통시(南通市), 저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스시(黃石市), 첸닝시(鹹甯市), 첸타오시(仙桃市), 첸먼시(天門市), 첸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雲浮市)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60,533개 社로 전년 동기 대비 69.8% 증가했으며 실행 투자금액은 1,349억 달러로 3.0%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주로 5G핵심부품, 산업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그리고 건설팅, 세무, 검측검역인증 등 서비스업 영역에 외상 투자를 유치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서부 지역으로의 외상산업 이전을 추진하여 노동집약형, 선진기술산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가 투자 장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 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4	1,197.1	23,778
2015	1,262.7	26,575
2016	1,260.0	27,900
2017	1,310.4	35,652
2018	1,349.7	60,533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 2018년 외자이용 통계

외자 이용 방법	신설 외국인 투자 기업(건)			실제 사용 외자 금액(억 달러)		
	2018년	2017년	증감률 (%)	2018년	2017년	증감률 (%)
합계	60,533	35,652	69.8	1,349.7	1310.4	3.0
중외합자기업	10,170	8,364	21.6	344.9	297.4	16.0
중외합작기업	107	124	-13.7	7.7	8.1	-4.1
외국독자기업	50,106	27,007	85.5	894.0	913.4	-2.1
외국투자주식제	129	125	3.2	83.0	64.8	28.2
합작개발	1	2	-50.0	11.9	11.8	1.1
파트너쉽 기업	20	30	-33.3	8.1	14.9	-45.5
기타	0	0	0.0	0.0	0.0	0.0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주요 투자정책

1995년 6월 이래로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7차례 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도 8차례 개정했음.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년 제 7차 개정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으며, 2017년 판 ‘목록’의 6대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清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었다.

-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판 ‘목록’ 중 ‘장려 목록’은 348개로 2015년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쑤지원(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수속을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

(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 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 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 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가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2009~2010년 중국 舊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2018년 3월부터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 및 외환관리국이 각각 지분출자 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4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 방법 초안」을 발표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을(이하 「임시규정」이라 약칭) 발표했다. 「임시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하 ‘지분 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분에 대한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 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을 확정한다.

(2) 2019년 제8차 개정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 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을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항목은 24개 이다.

▶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목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 서비스	국내다축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 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이 확대되었다.

- 1) 채광업 :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확대
- 2) 제조업 :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목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 3)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 4)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축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 5) 공공산업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 6) 문화 : 중국 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2019년판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판)은 지분 요구 사항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음. <네거티브 리스트>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관리 원칙을 적용
2.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일부 분야의 취소 또는 진입 규제 완화의 과도기를 명시했는데, 과도기 만료 후 진입규제를 취소하거나 완화
3. 외국인 투자자는 자연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4. 외국인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중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중 非금지 분야에 투자할 경우, 외자진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분 제한을 둔 분야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동업 기업을 설립해서는 안됨.
5. 중국 국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거래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의 설립 및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함.
6.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하지 아니한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
7.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후속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국의 법률·법규에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
8.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해석함.

▶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판)

순서	영역	특별관리조치
1. 농, 림, 목축, 어업		
1)	종자업	1. 밀, 옥수수 새로운 품종의 선택 육성 및 종자 생산 (중국측 다수 지분) 2.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수한 유전자 포함) (투자 금지) 3.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변형품종의 선택 육성 및 유전자변형 종자의 생산 (투자 금지)
2)	어업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투자 금지)

순서	영역	특별관리조치
2. 채광업		
3)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의 채선과 채굴의 보조활동	5.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금지)
3. 제조업		
4)	인쇄업	6. 출판물 인쇄 (중국측 다수 지분)
5)	핵연료 및 핵복사 가공업	7.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핵연료 생산 (투자 금지)
6)	한약 약재의 가공 및 한약제약의 생산	8. 한약 약재의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한약제약의 비밀처방제품의 생산 (투자 금지)
7)	자동차제조업	9.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 제조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중국측 지분을 50%(포함) 이상),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2개 이하의 동종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20년 상용차 제조 분야 외자지분 규제 철폐, 2022년 승용차 제조 분야 외자지분 규제 및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2개 이하의 동종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한 규제 철폐 예정)
8)	통신설비 제조	10. 위성TV라디오의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4. 전력, 화력, 가스 및 수력생산 및 공급업		
9)	원자력발전	11.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중국측 다수 지분)
10)	파이프설비	1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및 배수 파이프망의 건설 및 경영 (중국측 다수 지분)
5. 도소매업		
11)	담배제품	13. 연초, 궤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투자 금지)
6.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업		
12)	수상운수업	14. 국내 수상운수회사 (중국측 다수 지분)
13)	항공승객과 화물운수	15. 공공 항공운수회사 (중국측 다수 지분, 1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14)	일반 항공서비스	16. 일반항공회사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농업, 입업, 어업용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하며,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측 다수 지분)
15)	공항 및 공중교통 관리	17.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 (중국측 상대적 다수 지분 보유) 18. 항공교통 관제회사 (투자 금지)
16)	우편업	19. 우정회사, 서신의 국내 송달 업무 (투자 금지)
7.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업		
17)	통신	20. 통신회사 : 중국이 WTO 가입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제한.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측 다수 지분)

순서	영역	특별관리조치
18)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21.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서비스,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가입 시 약속한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투자 금지)
8. 금융업		
19)	자본시장서비스	22. 증권사 외자 비율 51% 초과 불가,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외자비율 51% 초과 불가 (2021년 외자 지분 규제 철폐) 23. 선물회사의 외자 비율 51% 초과 불가 (2021년 외자 지분 규제 철폐)
20)	보험업	24.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비율 51% 초과 불가 (2021년 외자 지분 규제 철폐)
9.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21)	법률서비스	25. 중국의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외)에 투자 금지, 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 금지 (투자 금지)
22)	컨설팅 및 조사	26. 시장조사 (합자.합작에 제한, 그 중 라디오TV방송, 청취율 및 시청률 조사는 중국측 다수 지분) 27. 사회조사 (투자 금지)
10.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23)	연구와 시험발전	28.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 (투자 금지) 29.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투자 금지)
24)	전문기술 서비스업	30.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 회화, 지형도, 세계행정구역지도, 전국행정구역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구역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리얼 3차원 지도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지역의 지질 지도 보충, 광산 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리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원격탐지지질 조사 (투자 금지)
11. 교육		
25)	교육	31. 취학 전 학교,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고등교육기구) (중외합작에 제한되 중국측이 주도, 주요 행정 관리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사회.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는 중국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됨) 32.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투자 금지)
12. 위생과 사회업무		
26)	위생	33. 의료기구 (합자.합작에 제한)
13. 문화, 체육, 오락업		
27)	뉴스출판	34. 뉴스기구 (투자금지, 통신사 등을 포함) 35.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업무 (투자 금지)
28)	라디오티브roadcast, 전송 제작, 경영	36. 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국,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축소,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및 위성 TV.방송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투자 금지) 37.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해외도입 포함) (투자 금지)

순서	영역	특별관리조치
29)	영화제작, 발행, 상영	38.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사 및 영화 도입 업무 (투자금지)
30)	문물보호	39.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국유문화재박물관 (투자 금지)
31)	문화오락	40. 문예공연단체 (투자 금지)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년 4월 23일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년 2월 19일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13년 12월 28일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2019년 3월 15일 입법,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용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 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지켜봐야 한다.

▶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이상	1/5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그 권리, 이익을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진입과 시장 퇴출 관련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수출비용 등은 기업이 자체 상황에 맞게 책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때에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무기계약(무고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해고가 제한된다. 중국 내 다른 기업에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종전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존 근로관계의 정리, 서면 근로계약서의 체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 시 법에 의해 인력공급기관인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한다. 또한 현지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 등을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 일부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지원한다.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공회비는 상급 공회로 전달될 뿐 기업 공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 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장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 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2012년에는 노무파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업체 설립조건을 자본금 2백만 위안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노무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노무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임시성, 대체성, 보충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회

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2011년 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파견근로자는 최대 10년, 현지채용근로자는 최대 5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면제 신청 후 5년간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2018년 1월이면 최초로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된 근로자의 5년 면제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세무당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부 지역은 이미 세무당국으로 통합)이며, 생육보험을 의료 보험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는 기본양로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16%로 인하하였고, 공상 보험과 실업보험의 부담 완화 등의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 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 발표한 13.5 계획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당해 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평균 인상율은 2011년 25.2%에서 '16년 10.3%, '17년 8.7%, '18년 8.4%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을 갱신·고시한 지역은 16개에 이르렀으나, 2019년 9월 현재 3개 지역만이 최저임금을 인상 발표하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은 점차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중국의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현황(2019.10월 기준)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北京	상한선	15%	14%	13%	-
	기준선	9%	8.5%	8.5%	8~8.5%
	하한선	4%	4%	4%	3.5%
天津	상한선	16%	14%	12%	12%
	기준선	9%	9%	7.5%	7%
	하한선	3%	3%	3%	3%
河北	상한선	13%	12%		
	기준선	8%	8%		
	하한선	3%	3%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山东	상한선	13%	12%	11%	-
	기준선	8%	7.5%	7%	7%
	하한선	3%	3%	3%	-
内蒙古	상한선	13.5%	12%	10%	11%
	기준선	8.5%	8%	7%	7.5%
	하한선	3.0%	2%	1.5%	-
山西	상한선	11%	12%	12.5%	12%
	기준선	7%	8%	8.5%	8%
	하한선	4%	4%	4%	4%
四川	상한선	13%	12%	11%	-
	기준선	8%	7.5%	7%	-
	하한선	3%	3%	3%	-
云南	상한선	13%	13%	11%	11%
	기준선	8%	7%	7%	7%
	하한선	3%	3%	2%	3%
陕西	상한선	11%	12%	12%	12%
	기준선	7%	7%	7.5%	7%
	하한선	3%	3%	3%	2%
江西	상한선	-	-	-	-
	기준선	3%	8%	8%	8%
	하한선	3%	3%	3%	3%
新疆	상한선	10.5%	11%	-	8%
	기준선	8%	8%	-	5%
	하한선	3%	3%	-	2%
广西	상한선	12%	12%	11%	
	기준선	8%	8%	7%	
	하한선	3%	2%	2%	
宁夏	상한선	-	13%	-	12%
	기준선	8%	7.5%	-	6.5%
	하한선	0%	2%	-	3%
甘肃	상한선	14%	13%	14%	
	기준선	8%	7%	8%	
	하한선	4%	3%	4%	
福建	상한선	12%	12%	12%	
	기준선	8%	8%	8%	
	하한선	2%	3%	3%	
河南	상한선	11.3%	12%	16%	
	기준선	10.4%	7.5%	12%	
	하한선	3.5%	3%	3%	
吉林	상한선	11%	12%	10%	
	기준선	6%	7%	6%	9%
	하한선	3%	3%	3%	6%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安徽	상한선		11%	12%	3%
	기준선		7%	7.5%	
	하한선		3%	4%	
贵州	상한선	15%	12.5%	-	12%
	기준선	10%	7.5%	-	7.5%
	하한선	4%	3.5%	-	3%
青海	상한선	13%		-	
	기준선	7%		-	
	하한선	3%		-	
上海	상한선	14%		-	-
	기준선	9%		8%	5~6%
	하한선	4%		3%	2~3%
辽宁	상한선	%		-	12%
	기준선	%		-	8%
	하한선	%		-	4%

▶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 (2019년 9월 기준)

(단위: RMB)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¹⁸⁾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북경시	2200	24	2019.9.71
2.천진시	2050	20.8	2017.7.1
3.하북성	1650/1590/1480/1380	17/16/15/14	2016.7.1
4.산서성	1700/1600/1500/1400	18.5/17.4/16.3/15.2	2017.10.1
5.내몽고자치구	1760/1660/1560/1460	18.6/17.6/16.5/15.5	2017.8.1
6.길림성	1780/1680/1580/1480	17/16/15/14	2017.10.1
7.요녕성	1620/1420/1300/1120	16/14/11.8/10.6	2018.1.1
8.흑룡강성	1680/1450/1270	16/13//12	2017.10.1
9.상해시	2480	22	2019.4.1
10.강소성	2020/1830/1620/	18.5/16.5/14.5	2018.8.1
11.절강성	2010/1800/1660/1500	18.4/16.5/15/13.6	2017.12.1
12.안휘성	1550/1380/1280/1180	18/16/15/14	2018.11.1
13.북간성	1700/1650/1500/1380/1280	18/17.5/16/14.6/13.6	2017.7.1
14.강서성	1680/1580/1470	16.3/15.8/14.7	2018.1.1
15.산둥성	1910/1730/1550	19.1/17.3/15.5	2018.6.1
16.하남성	1900/1700/1500	19/17/15	2018.10.1
17.호북성	1750/1500/1380/1250	18/16/14.5/13	2017.11.1
18.호남성	1580/1430/1280/1130	15/13.4/12.4/11.6	2017.7.1
19.광둥성	2100/1720/1550/1410	20.3/16.4/15.3/14	2018.7.1
20.심천시	2200	20.3	2018.7.1
21.광시자치구	1680/1450/1300	16/14/12.5	2018.2.1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¹⁸⁾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22.해남성	1670/1570/1520	15.3/14.4/14	2018.12.1
23.중경시	1800/1700	18/17	2019.1.1
24.사천성	1780/1650/1550	18.7/17.4/16.3	2018.7.1
25.귀주성	1680/1570/1470	18/17/16	2017.7.1
26.윤남성	1670/1500/1350	15/14/13	2018.5.1
27.서장자치구	1650	16	2018.1.1
28.섬서성	1680/1580/1480/1380	16.8/15.8/14.8/13.8	2017.5.1
29.감숙성	1620/1570/1520/1470	17/16.5/15.9/15.4	2017.6.1
30.청해성	1500	15.2	2017.5.1
31.닝샤자치구	1660/1390/1320	15.5/14.5/13.5	2017.10.1
32.신강자치구	1820/1620/1540/1460	18.2/16.2/15.4/14.6	2018.1.1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 「공사법」에 따르면 설립된 기업의 등기말소를 진행하는 경우, 먼저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청산 진행 조직을 설립해 청산 등록(备案)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 관련 조직 설립 증명을 수령하고,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60일내에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하며 청산 관련 조직의 등록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받은 일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시일로부터 45일내에 청산관련 조직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상하이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18)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고시

* 2015년 상반기, 중국 舊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둥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工商企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톈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현재 공상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간소화 등기말소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전역으로 머지않아 보급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개혁 시행에 따라 등기말소 절차, 제출 자료 및 소요시간 등이 대폭 감축되었지만 지역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종료 시 종업원들에게 수당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 모은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 한도, 유동성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업 및 외자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

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 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 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 감독 총국에 편입)과公安部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 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고, 2013년에 개정하였으며 연락 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시장관리감독총국(舊公商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시장관리감독총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지역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시장관리감독총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각 지역 시장관리감독총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간주, 소득을 몰수하고 최소 2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최소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다.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하고 대표증을 몰수할 수도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 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 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 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2012년 12월 이후 추진된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회복이 미진한 상태이어서 본격적인 성장→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9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외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적극적 금융완화 등 확장적 경제정책이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를 떠받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도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으로 개선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5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19년 상반기까지 평균 0% 초반대의 저성장을 유지해왔으나,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 이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악영향으로 2019년 제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타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년·전기 대비, %)

2015년 연간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2018년 연간	2018년	2019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	0.5	2.2	0.3	0.5	0.6	0.5	0.1	▲1.8	

출처: 내각부(월례 경제보고, GDP속보치)

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0%대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0%대를 기록하였다. 그 후 완만한 소비 회복 등으로 2017년 이후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19.10월 소비세율 인상(8%→10%) 이후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제외한 물가 상승세는 둔화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전년·전년 동월비, %)

2015년 연간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19년		
					10월	11월	12월
0.5	▲0.3	0.5	0.9	0.6	0.4	0.5	0.7

출처: 내각부(월례 경제보고)

2013년 이후 경기 회복 및 고령화로 인하여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이 꾸준히 개선되어 일본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6월 이후에는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이 1을 넘어 정규직도 구직자보다도 일자리수가 많은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2018년 전체 유효구인배율은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9년 들어 유효구인배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고용시장은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동 수요 초과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임금상승은 더더 소비 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 일본의 고용지표 동향(전년·전년동월비, %)

	2015년 연간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19년		
						10월	11월	12월
실업률	3.4	3.1	2.8	2.4	2.4	2.4	2.2	2.2
유효구인배율	1.20	1.36	1.50	1.61	1.60	1.57	1.57	1.57

출처: 총무성(노동력조사),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흑자의 주역이 ‘무역수지’에서 ‘제1차소득수지(본원소득수지)’로 변화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배당 및 이자 수취 등의 투자 소득이 무역수지의 변동을 흡수 가능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가 정착하였다. 무역수지는 2016년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며 흑자를 기록한 이래, 수입 수량은 광물성 연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출 수량은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마찰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하였으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지가 역년으로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2년 만에 확대하였다.

▶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억엔, 역년기준)

	2015년 연간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2019년		
						10월	11월	12월
무역수지	▲8,862	55,176	49,113	11,981	5,536	1,545	1,605	1,452
수출	752,742	690,927	772,535	812,387	761,157	65,399	62,442	65,573
수입	761,604	635,751	723,422	800,405	755,622	62,859	62,466	64,365

출처: 재무성(국제수지)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및 일본은행의 공격적 금융완화 효과로 엔화 약세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2015년 8월말 이후 중국경제 불투명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일시적 엔고 국면도 전개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재정확대 등을 통한 미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인해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가 2017년 하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엔화 강세 압력이 있었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무역마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엔화 약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엔고 추세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 말 미중 무역마찰의 완화 국면을 배경으로 약세로 전환하였다.

▶ 엔/달러 환율 추이(중앙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0.6	116.9	112.6	110.4	109.0	109.9	107.3	108.7

출처: 내각부(월례 경제보고)

2019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총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사회보장 기금) 비율은 237.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호·의료·연금 관련 사회보장지출 증가(매년 1조엔 규모)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채무 확대에 이자지출 규모가 점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해 아베 정권 들어 '경제 재정·일체개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8」(2018년 6월 각의 결정)에서 정한 「新경제·재정재생계획」하에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세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 확보 등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8%→10%)한 바 있으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책 및 2019년 말 대규모 태풍에 대응해 긴급경제대책을 책정하는데 이어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규모 경제대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요원해진 상황이다.

2020년 일본경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및 5G 수요와 대규모 공공지출의 효과에 힘입어 0%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당초 예측되었으나 2020년 2월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감염이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야기하고 있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올림픽의 연기 및 지연에 따른 경제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주요내용)

2012년 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성장 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년 4월, 2014년 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년 2월)하였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되자 단기금리를 -0.1%로 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를 0%대로 유지하는 장단기금리조작부 양적·물적 금융완정책을 도입(2016년 9월)하여 2018년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2018년 7월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20bp까지 확대하여 10년물 국채 금리가 0.2%까지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2019년 4월 ‘당분간 적어도 2020년 봄경까지는 현재의 낮은 장단기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금리 추가 인하(마이너스폭 확대)라는 수단 대신 ETF, J-REIT 등 자산 매입 확대를 중심으로 금융완화를 계속해 오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2014년 4월 5%→8%)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소비세 인상이 소비 부진과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2015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는 거듭 연기되어 왔으며, 매년 실질 GDP 2%, 명목 GDP 3% 성장을 한다는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서 정한 ‘新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는 재정 건전화 달성 목표 년도를 2025년도로 연기하고 2019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명시하였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단행 후, 2014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같은 경기후퇴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감세율, 유아교육 무상화, 캐시리스 결제 포인트 환원 및 저소득층 대상 프리미엄 상품권 판매 등의 총 6.6조엔 규모 가계부담완화책을 실시하였다. 2014년과 비교해 소비세율 인상 전의 先수요 및 인상 후의 반동적인 수요 감소의 진폭은 억제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산업 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산업 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창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 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 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 2015』에서는 공급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에 집중할 계획을 명시하였다.

2015년 9월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임기 3년)이 정식 결정됨에 따라 아베노믹스 제2막 이행 전략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①강한 경제 구축, ②적극적 육아지원, ③사회보장 내실화)이 발표되었다. 10월 7일 출범한 제3기 아베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강조하면서 ①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현 552조엔), ②202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 1.8명 회복(현 1.4명), ③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호 이직율 제로 구현을 새로운 세 개 화살의 정책목표 수치료 각각 설정하였다.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는 新제1의 화살(강한 경제 구축)을 통해 아베노믹스 1단계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는 동시에 제2·3의 화살인 육아지원 및 사회보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중장기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구현을 목표로 인재투자 강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 확대, 수출-관광 연계 전략 추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인재투자강화의 경우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력 감소와 성장력 한계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조기 무상화,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직장인 학습지원 확충 등을 실시하며,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외국인재 활용, △고령자 취업 지원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산업변화 대응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는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자율주행차, △인프라, △공급망(Supply chain), △핀테크 5대 분야를 설정하고 국민 라이드페이بل 활용 등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프리존(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경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outbound)과 관광객 국내소비(inbound)가 연계된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패션, 식품·식문화, 콘텐츠, 지역 특산품 등 고품질 브랜드 발굴 홍보하여 현지 직접 체험 및 소비를 통한 인바운드 축진을 도모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카니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베노믹스 평가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 등으로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임금상승이나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성장과 분배, 성장과 소비 등 선순환 경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로는 평생고용이라는 오래된 고용관행으로 기업이 임금 인상에 매우 신중하고,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노조에서 임금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아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주 원인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 불안으로 소비자들이 노후를 위하여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의 경우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 물가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태이다. 오래된 디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의 경직성, 현금거래 성향에 따른 소비의 신중성, 인터넷 거래 및 중고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가격 경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이론적으로 엔화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이어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지 않으며 세계 제1위의 대외보유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로봇, 드론, 자율 주행차,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예산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과감히 확대하는 것이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아베정권 출범이후 경제 지표 추이

	정권 출범 (2012년 12월)	2017년 12월	2019년 12월
실질GDP	498조엔 (12.10~12월)	534조엔 (17.7~9월)	536조엔 (19.10~12월, 2차속보치)
명목GDP	493조엔 (12.10~12월)	549조엔 (17.7~9월)	553조엔 (19.10~12월, 2차속보치)

닛케이 평균지수	1만 80엔 (12.12.25)	2만 2,939엔 (17.12.25)	2만 3,782엔 (19.12.25)
기업 경상이익	48조 5,000억엔 (12년도)	75조엔 (16년도)	83조엔 (18년도)
기업 설비투자	71조 8,000억엔 (12년도)	82조 5,000억엔 (16년도)	88조 374억엔 (18년도)
유효구인배율	0.83배 (12.12월)	1.55배 (17.10월)	1.57배 (19.12월)
완전실업률	4.3% (12.12월)	2.8% (17.10월)	2.2% (19.12월)
임금 상승률	1.72% (12년도)	1.98% (17년)	2.07% (19년)
소비지출 (2인이상 세대)	32만 5,492엔 (12.12월)	28만 2,872엔 (17.10월)	32만 1,380엔 (19.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12.12월)	0.8% 증가 (17.10월)	0.7% 증가 (19.12월)
방일 외국인수	766만 8,426명 (12.1~11월)	2,616만 9,400명 (17.1~11월, 추계)	3,188만 2,100명 (19.1~12월)

출처: 마이니치신문(2017년10월26일자),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닛케이지수발표

일본 시장의 특징

초일류 부품소재기업이 주도하는 거대 내수 시장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 반도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주요 상품·서비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면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구조 변화, 고가·저가 소비 양극화 뚜렷

최근 일본의 개인소비 행태는 1인 가구 비중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가구

구성의 변화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재형태별로는 서비스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및 나홀로 가구의 외식 선호도 증대에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나홀로족 특성에 맞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상품의 용량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용량 패키지 제품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시장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대여·중고품 구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플리마켓 앱’ 등을 활용한 중고거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의 보급형 제품을 선호하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등 소비시장 내에서 고가와 저가 물품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실버산업 성장

2020년 2월 1일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인구 비율)은 28.6%이며, 75세 이상 인구비중은 14.7%이다. 2065년에는 약 2.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며,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세대(단카이 세대: 1947~49년생)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일본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적의 실버상품 테스트베드’ 역할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크고,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일본 내 유통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장기

거래를 통해 지역 유통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업 도매상에서 소(중간) 도매상이 연결되어 있는 등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상인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본 비즈니스에서 중간상인들은 거래조건이나 품질조건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특유의 신용 거래

일본시장에서 메이커의 지배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는 메이커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소매업자의 PB상품 개발 및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화 촉진에 따른 결과이다.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일본시장에서 메이커의 지배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는 메이커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소매업자의 PB상품 개발 및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화 촉진에 따른 결과이다.

수입형태의 다양화

종전에는 해외 메이커가 제조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해 1차 도매상→2차 도매상→소매상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 유통 경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소매상에 의한 개별 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니즈의 변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 보급 등으로 수입품 유통환경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현황

2019년 기준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3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4위)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최대 약 500배(65년 2.2억불에서 11년 1,080억불)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7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7년 819억 달러, 2018년 851억 달러로 증가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9년 760억 달러로 10.7% 감소하였다.

2011년 이래 엔화 약세, 유가하락,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 감소하던 대일수출금액은, 2017년 268억 달러로 증가세로 전환 이후, 2018년 13.8% 증가한 305억 달러로 증가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6.9% 감소한 2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4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1억 달러로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283억 달러로 적자규모가 더욱 커졌으나, 2018년 △241억 달러, 2019년에는 △192억 달러로 최근 2년간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 한·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교역액	1,032	947	860	714	719	819	851	760
대일수출	388	347	322	256	244	268	305	284
대일수입	644	600	538	459	475	551	546	476
무역수지	△256	△253	△216	△203	△231	△283	△241	△192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9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제품이나, '18년 말 유가 급락 및 아시아 시장 내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금액은 감소했다. 또한 2020년 동경올림픽 준비에 따른 인프라 건설 수요 확대 등으로 철강판 수출은 증가했다.

한국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철강판 등 주로 자본재와 중간재 점유 비중이 크다.

▶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52.1	70.8	42.4	-18.6
2	철강판	21.3	0.7	21.7	1.9
3	반도체	12.4	4.9	10.7	-13.9
4	정밀화학원료	12.0	43.0	10.6	-11.9
5	플라스틱제품	7.7	-1.1	8.1	5.4
6	자동차부품	9.1	-2.6	8.0	-12.3
7	금은 및 백금	7.5	-3.5	7.5	-0.8
8	합성수지	9.3	28.9	7.4	-21.1
9	기호식품	6.1	1.8	6.7	10.0
10	주단조품	6.2	0.8	5.5	-11.2

주: 순위는 2019년 수출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2월 기준)

▶ 한국의 주요 대일 수입품목

(단위: 억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5.2	-3.3	44.8	-0.9
2	반도체 제조용 장비	61.9	7.8	33.0	-46.8
3	철강판	24.5	5.2	24.1	-1.9
4	플라스틱제품	22.5	-5.3	22.6	0.7
5	기초유분	18.7	4.3	15.8	-15.3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6	정밀화학원료	19.0	29.3	15.8	-17.2
7	합금철선철및고철	16.7	28.5	15.1	-9.3
8	계측제어분석기	14.8	5.1	13.8	-6.8
9	자동차	12.3	5.2	12.3	0.0
10	기타화학공업제품	12.0	0.7	11.1	-7.9

주: 순위는 2019년 수입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2월 기준)

투자현황

일본은 1962~2019년 누계 제2위 대한민국 투자국이며, 투자금액(신고기준)은 총 454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2년 45.4억 달러에 달하면서 최대수준에 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로 전환하여 1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2002년부터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역전하였으며, 주로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IT서비스업·경영컨설팅 등), 도소매유통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계*
對韓 투자	금액	24.9	16.6	12.5	18.4	13.0	14.3	454.8
	건수	352	314	299	328	335	238	14,603

자료 : 1962~2019년 신고금액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우리나라의 1968~2019.9월 대일본 투자 누적금액은 120억달러(신고 기준)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20위 투자대상국이다. 일본 진출기업은 한일간 비즈니스 무역, IT 서비스, 해운여행 등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W업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연도별 한국의 대일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계*
對日 투자	금액	5.9	8.8	6.5	8.0	13.1	8.9	120
	건수	648	674	715	858	888	676	10,876

주: 대일투자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건수가 포함된 수치

자료: 1968~2019.9월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시장진출 환경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 기업들의 대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분야의 경우 내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국업체를 중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10개):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꽂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2020.1.20.)

1. 마른김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매)
상사할당 (한국실적할당)	390
상사할당 (중국실적할당)	306
수요자할당	760 (한국 585 + 중국 175)
선착순할당	5
계	1,461

2. 무당조미김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매)
상사할당 (한국실적할당)	390
수요자할당	140 (한국)
선착순할당	7
계	537

3. 김 조제품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매)
상사할당 (한국실적할당)	195
상사할당 (실적할당)	623
수요자할당	397 (한국 250 + 중국 147)
선착순할당	3
계	1,218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납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납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전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전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전(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 협의방식 및 절차

2차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차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전) 중앙노사의"사전협의 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전)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하게 긴 사전 협의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는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등 잔류허용

기준 설정 품목수는 2018년 9월 현재 783개 품목이다.

- (2005년) 283개 → (2006년) 799개 → (2018년 9월) 783개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검토중인 품목(2018년 9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한국 제안 MRL(ppm)	비 고
Fluquinconazole	피망	0.01	2.0 또는 3.0	2015.2.19 요청
계 1건				

▶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18년 9월 기준)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0.01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2.0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0.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0.2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0.7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0.7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6.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6.4.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10.1.29고시
Toly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8.17.확정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9.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Bifenthrin	들깨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2.0	2011.5.13.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3.0	2012.6.14.고시
Pyrimethanil	감	5→삭제	2.0	2013.3.15.반영
Pyrimethanil	대추	10→삭제	0.5	"
Pyrimethanil	복숭아	3→삭제	2.0	"
Spirodiclofen	감	2→삭제	1.0	"
Spirodiclofen	대추	5→삭제	5.0	"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
Dithianon	피망	0.3	2	"
Dithianon	고추	0.3	2	"
Dithianon	인삼	0.5→삭제	0.5	"
Pyridaben	가지	1.0→삭제	1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Pyridaben	고추	2.0→삭제	2	"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년 4월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년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	2014년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년 반영
Etofenprox	고추	미설정(0.01)	2	2015년 3월 반영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년 3월 반영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0	2016년 4월 4일 반영
48건	12작물			

주: 고려인삼과 갯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류, Other vegetables」로 분류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 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2018년 9월 현재 파프리카, 토마토, 방울토마토, 청고추, 참외 등 5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사명령 현황(2018년 9월 기준)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미니토마토	플루켄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켄코나졸	0.01
	파프리카	클로르피리포스	0.5
	청고추	플루켄코나졸	0.01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 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3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10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10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면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정부 조달 분야

입찰 · 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 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7년 기준 2조 2648억엔으로 전년대비 22.9% 증가한 반면, 총 조달건수는 14,710건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20,570 (+12.1)	19,076 (-7.3)	20,089 (+5.3)	18,429 (-8.3)	22,648 (+22.9)	24,466 (+8.0)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7,811 (+21.7)	15,596 (-12.4)	15,396 (-1.4)	14,573 (-4.2)	14,170 (-0.3)	15,356 (+4.4)

자료: 총리관저 홈페이지, 2018년 정부조달실적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조 4,466억 엔으로 전년대비 8% 증가, 총 조달 건수는 15,356건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7년 기준 금액대비 4.4%, 건수대비 2.8%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 132건(432.7억엔), EU 157건(521.3억엔), 기타 126건(46.3억엔)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18년 총 26,005건 929,675점으로 적발실적이 7년 연속 25,000건을 초과하였다. 이는 금액으로는 135억엔에 상당하며, 하루 평균 71건 2,500점이 적발된 셈이 된다.

발송 국가별 적발은 중국에서 온 화물이 전체의 86.8%(22,578건)로 9년만에 90% 이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홍콩 4.4%(1,150건), 필리핀 2.7%(715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식재산별 적발은 위조 브랜드품(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건수로 전체 96.6%(25,284건) 수량으로도 77.8%(723,650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이어폰 등의 의장권 침해물품이 433건, 116,597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갑,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9,391건(구성비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 6,093건(동 21.4%), 신발류 3,170건(동 11.1%), 스마트폰 케이스 등 휴대전화 및 부속품 2,385건(동 8.4%)으로 뒤를 잇고 있다.

▶ 발송국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적발 건수

발송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6,670	91.1%	23,916	91.9%	28,250	92.2%	22,578	86.8%
홍콩	1,227	4.2%	717	2.8%	828	2.7%	1,150	4.4%
필리핀	392	1.3%	270	1.0%	430	1.4%	715	2.7%
기타	985	3.4%	1,131	4.3%	1,119	3.7%	1,562	6.0%
계	29,274		26,034		30,627		26,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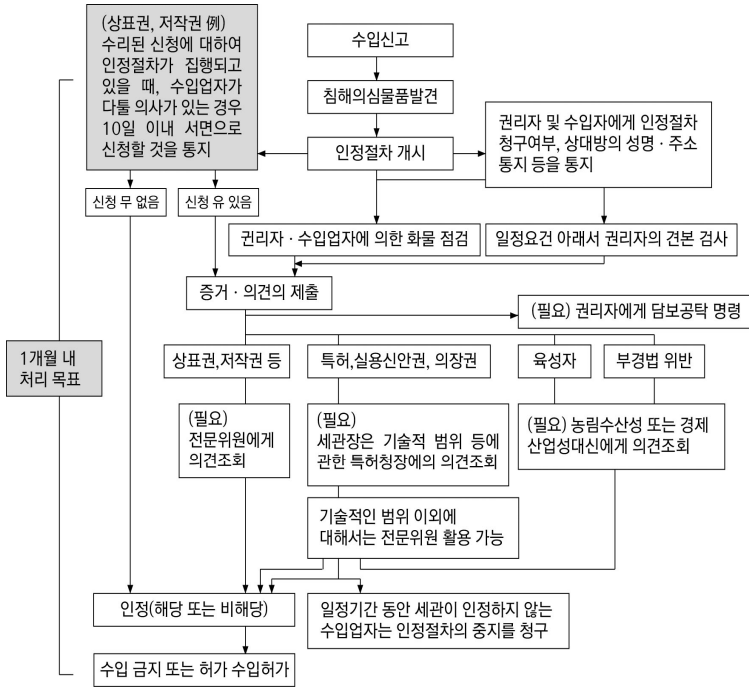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재무성(2019.3.8.)

▶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권리		2015	2016	2017	2018	2018(구성비)
특허	건수	5	61	18	6	0.0%
	수량	932	185,781	26,726	28,128	3.0%
의장	건수	36	87	304	433	1.7%
	수량	3,811	8,507	135,135	116,597	12.5%
상표	건수	28,982	25,666	30,111	25,284	96.6%
	수량	656,853	409,279	313,314	723,650	77.8%
저작	건수	323	312	295	438	1.7%
	수량	27,948	19,068	31,564	61,199	6.6%
기타	건수	50	9	3	2	0.0%
	수량	77	30	11	101	0.0%

출처 : 일본 재무성(2018.3.8.)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세관단속 절차(규정 인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 i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 iii)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어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i)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 i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 iv)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ii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총생산중 제조업분야가 약 12%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자로부터 무관세 적용 신청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대안 상품이 국내에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무관세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HS Code 기준 뉴질랜드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평균 관세율은 약 2%이며, 전체 7,510품목 중 63.9%(약 4,799)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여 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어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대상국의 부가가치가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관세 총독령 (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개발 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일반특혜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 등과 같은 주택건축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적용 유예가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자로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축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2023년까지 연장되며, 무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 자재는 전체 건축 자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자재 대부분에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 규정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온실 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the Climate Change (Synthetic Greenhouse Gas Levi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냉장 및 냉동고, 냉난방 장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2013년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 부과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추가부담금은 2017년보다 상승하였으며 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담금 상세 부과액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인 New Zealand Legislation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3/0046/latest/whol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산 과일 중배(Pear)와 포도(Grape)는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다. 채소 및 과일 수입업자는 뉴질랜드 수입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채소 및 과일 수입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차 산업부(www.mpi.govt.nz)를,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동 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기업혁신고용부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부과 잠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업(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¹⁹⁾

19) 관련 상세정보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www.fish.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WSMP(Wine Standards Management Plan)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 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제조 또는 식품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2016년 3월에는 「Food Act 2014」가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의거하여 FSP 인증을 등록을 해야 한다. 「Wine Act 2013」에 따라 WSMP 인증을 해야 하며, 해당 인증에서 HACCP가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ACMA)(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 하여서는 뉴질랜드 자체의 인증제도인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 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9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P)의 상업적 재배가 금지되고 채소, 과일 및 육류의 유전자 변형이 금지되나, 가공식품의 경우 일부 수입된 GMO 재료가 포함될 수는 있다. GMO 식품은 Food Safety Australia New

Zealan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GMO 식품으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관련 규제는 1차 산업부가 담당한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의 수입규제품목은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 등 무기 및 기타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이용하기 위한 장비 및 기타 범죄 이용을 위한 물품 및 일부 동물 및 식품 품목 수입이 금지된다.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액세서리 등 어떠한 형태의 물품이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고래·돌고래·두루마·핑·거북이 고기, 사향·코뿔소·호랑이 뿔이나 뼈와 같은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뼈 또는 기타 해양 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피부 등이 있다.

※ 수입규제품목의 세부사항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참고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 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입찰서비스 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입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가 뉴질랜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인 KiwiBuild 사업 수주를 받은 바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 2degrees 등 세 개의 통신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유지

2018년 12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발표한 연간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데이터 통신망 시장 점유율은 Spark 43%, Vodafone 26%이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Vodafone 약 41%, Spark (Skinny 포함) 약 37%, 2degrees 21%를 기록하였다.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의 적용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기업이 통신(telecommun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등록을 해야한다.

※ 네트워크 운영자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 및 페이지는 기업고용혁신부 홈페이지 <http://www.mbie.govt.nz/info-services/sectors-industries/technology-communications/communications/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network-operators/how-to-register>에서 확인 가능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 복제약(generic)은 원약(original brand of the medicine)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이 복제약의 안전성을 평가 및 승인하고 PHARMAC은 의료기기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 생산에 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원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복제약이 시중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7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CPTPP 협상시에도 의약 관리청의 의약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 규제 권한과 의약품 구입시 가격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 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숙련 노동자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을 이민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두면서, 최근에는 도시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의 지역 분배를 위해 지역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를 위해 존재하던 요건(국내 노동자원 테스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 취득
- 주식매입 금액이 1억 뉴불 초과
- 회사 발행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 투자 규모가 1억 뉴불 초과하는 자산 및 사업체 투자

토지 투자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m²)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 승인이 필요한 민감토지자산 상세목록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New Zealand Legislation)를 통해 확인 가능(<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5/0082/22.0/DLM358552.html#DLM358553>)

한편 2018년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이 개정되어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으며, 1000헥타르 이상의 삼림에 대한 벌목권(forestry rights) 등에 투자시 해외 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된다.

※ 해외투자법 개정법안 원문(<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0025/latest/DLM7512906.html>)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비확대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매 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2018년 출범한 Tax Working Group이 중간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포기되었다.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2018년 9월 14일 자원활용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관리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2019년 7월 환경 장관이 「자원관리법」의 현대적 접근을 위해 추가적 간소화를 추구하며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전반적 법적 검토를 시작하였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의 양을 넘지 못한다. 2019년 9월 20여종에 대한 상업적 쿼터가 검토되어 발표되었으며 특히, 다기다동가리어 쿼터가 10% 감소되었다. 상업적 쿼터의 상세내용은 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업적 쿼터 세부사항은 뉴질랜드 수산부 홈페이지(www.fisheries.govt.nz)참고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제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법안 통과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견해들이 있어왔으며, 2016년에는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접근법을 따라 기여분(contribution)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8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8 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44%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기술자, 용접공과 같은 기술 숙련공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대리인, 엔지니어, 의학 전문가, 품질관리자와 같은 기술진, 변호사·연구원과 같은 전문직, 운전자, 교사, 경영진, IT 전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000여 품목 중) 4,491 품목이며, 2016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4.66%, 4.23%이다. 2017년도 평균 관세는 6.36%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4.91%, 4.21%이다. 2019년도 평균 관세는 6.37%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5.12%, 4.16%이다.

▶ 평균 명목 관세율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산물	13.88%	13.88%	13.85%	14.65%	14.66%	14.66%	14.91	15.12	15.12
공산품	4.23%	4.23%	4.23%	4.23%	4.23%	4.23%	4.21	4.18	4.16
전체	5.89%	5.89%	5.88%	6.35%	6.35%	6.35%	6.36	6.39	6.37

자료: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은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6	30
2009년	10	40
2010년	5	42
2011년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년	1	4
2015년	4	11
2016년	2	8
2017년	0	0
2018년	0	0

자료: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총 2,378개의 농·공산품(농산물 994개 품목, 공산물 1,384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물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바, 바나나, 녹용, 배를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 품목별 할당량 (2019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20%)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800	20	-	
팔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비례할당 (20%)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財政部 關務署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18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할당량	미국	∞	∞	∞	∞	∞
	EU 국가	∞	∞	∞	∞	∞
	캐나다	∞	∞	∞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회원국(국가당)	∞	∞	∞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17.5	17.5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17.5	30.0	17.5	17.5	17.5

자료: 財政部 關務署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했다. 대만 재정부는 기간 만료 이후 일몰제임을 통해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9년 8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5년간) 37.65%의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燐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 ~ 80.50%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대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9일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대만 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년 7월 15일 GPA 가입 후 2018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3,234건(표결 금액 기준 4800.40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753건(비중 22.73%)이며 낙찰 금액은 총 1797.31억 대만달러(비중 37.44%)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 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 (2018년 기준)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26	2,116.72	4	3.17	330.44	15.61
구매입찰	1,446	2,155.46	675	46.68	1,437.31	66.68
용역입찰	1,662	528.21	56	3.37	29.55	5.60
합계	3,234	4,800.40	735	22.73	1,797.31	37.44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 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 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例)」,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찰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 투자 금지 분야(2013년 6월 17일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 · 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 공중파 TV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 · 저축, 환어음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 · 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 버섯·화초농사·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 제품·광학 제품 제조업	-	군사 기구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타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 방송위원회	-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방송 사업	국가통신 방송위원회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자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11년 6월 15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 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시·현(縣) 정부의 허가과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9건으로 수건(중국산), 구두(중국산), 과산화벤조일(중국산), 탄소강판(중국산, 브라질산, 한국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우크라이나산), 특정 아연 또는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산, 한국산), 포틀랜드시멘트와 클링커(중국산),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등 7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5년간) 중국산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과 특정 탄소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가하였으나, 현재 과세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년 9월 4일 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31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백만 대만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10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7%로 전년대비 1%p 감소되어 세계 랭킹 2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8월에는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일반품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0%가 되며,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까지 관세가 내려간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AKFT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EU와 다르게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ASEAN 각 회원국 자국의 관세양허표에 기초해 각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역시 라오스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다른 ASEAN 회원국의 관세율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조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와 소비세 관련 신규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Doing Business Report 2018: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에서는 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0개 국가 중 124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 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for Thailand), ⑦Import Permit,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Terminal handling receipts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 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에서는 라오스가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모든 정부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의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는 2018년 5월 25일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38/NA)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 9일부터 2011년 12월에 발표된 이전의 법을 대체하였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은 상표권 보호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정하는 등 기존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Trademarks)

기존 법은 단어, 문자, 숫자, 상품 포장, 조형요소, 색상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규 법은 3D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또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등록 시, 상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 3자가 상표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은 기존 법에서는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신규 법은 상표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발명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 및 발명 등록에 대해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지적재산권 부서(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 제출된 신청서를 출판물을 통해 통보받게 되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집적회로 디자인

주요 수정 내용은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신청서가 지적재산권 부서(DIP)에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등록에 반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지적재산권 부서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담당 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하므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벌 강화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지적재산국(DIP)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환

라오스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pm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pm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pm 2\%$ 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Bee Line, ETL, Sky Telecom, Planet 6개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 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2017년 8월 30일에는 ADB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plaosme.com)를 공식 개설하였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라오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 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 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현재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2018년 3월까지 총 4,564개 사업에 약 291억 달러가 투자(라오스 자체투자 포함)됐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한 다양한 대륙으로부터 52개국의 투자가 진출해 있으며, 특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이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대비 약 76.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사업 및 여러 개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압도적인 규모로 진출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은 아세안 단일 시장으로 라오스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전력 발전사업과 광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과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력발전사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즉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선투자하여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예: 30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라오스 정부에 시설을 무상 헌납하는 형태를 권장하며 관심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최근 라오스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 음식점, 기념품, 여객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이농현상에 따라 농업, 수공업 및 기타 제조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AEC 형성 이후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이용하여 주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외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먼저 제정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후 효율적이고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한 투자 관리를 위해 2009년 국내의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라오스 투자진흥법은 2016년 투자관리감독 강화, One-Stop 서비스 품질 제고, 투자 특혜 내용 및 구조 조정, 경제 특구 등 양허 사업 관리 등을 위해 개정 완료되었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어 적용 중이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창구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 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公安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라오스 투자진흥법 3편 1장에서는 투자 유형을 아래 5가지로 항목으로 규정하며, 투자 종류는 일반 투자(General Investment)와 양허 투자(Concession Investment)로 구분하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 국영기업과 개인기업 사이의 합작: 라오스 국영기업과 국내외 개인기업이 공동 소유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무 권리와 의무 등은 계약서 및 정관에 상세히 명기해야 함
- 민관합동 파트너십(PPP): 정부 당국과 민간 부문의 JV 계약으로, 신규 건설, 인프라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임. PPP 분야, 조건, 절차 등은 JV 계약과 별도로 규정됨.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일반 사업(General Business)에 속하며, 라오스 정부는 사업 규제 목록(Controlled Business list)에 속한 것과 아닌 것으로 다시 나누어 관리된다. 양허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과 SEZ, 인프라개발 등 라오스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허가 기간은 1회에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기업등록증, 법인 인감, 세금 등록 세 가지를 받아야 완료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투자 법인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장 설립 또는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설립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공장 및 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 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허가서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업법 상에는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감과 납세번호증서 없이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 노동허가 취득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련 허가를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후 라오스 중앙은행(the Bank of the Lao PDR)의 통화정책국(Monetary Policy Department)으로부터 투자납입증명(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을 발급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2003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77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 진출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① 해외송금신청서
- ②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계좌 내역서 또는 명세서
- ③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자유치증서
- ④ 납세증명서
- ⑤ 배당금 배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 (해당되는 경우)
- ⑥ 배당세(배당금의 10%)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한 차액이 송금가능한 배당금
- ⑦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납세 주체는 법인, 개인, 기관 등 세 종류로 구분되며 납부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된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일괄세, 환경세, 기타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고 간접세는 소비세와 부가세로 구성된다.

법인세(Profit Tax)는 2009년 마련된 투자진흥법 29조에 의해 국내 및 외국 법인 동일하게 0~24%로 조정되었다. 세법에 따른 정식 회계장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프리랜서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33조에서 정하는 이윤율에 따라 수익을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누진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법인 설립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크게 급여소득세, 임대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은 9가지로 나뉜다. 개인, 법인, 기관은 현금 및 현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이 4억 킵(KN) 이하로 부가세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회계정산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인정과세로 이해될 수 있는 일괄세는 납세자의 전년도 수익 신고금액과 업종, 업력, 지역 등에 따라 세무서와 납세자가 계약을 맺어 납부하며 일괄세 납부 주기는 매월, 분기, 반기, 1년 등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내의 개인, 법인 및 기관에게 과세된다. 수입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과세되고,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0%가 적용된다.

소비세는 라오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물품 수입 판매 시 적용 받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라오스 법은 계약사업 유형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판결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라오스 내에서 현지인(기업)과 외국인(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이 법정 논쟁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보 접근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협의해 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라오스 법원이 아닌 제3국(예: 싱가포르, 홍콩 등) 사법기관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국제적인 중재를 구하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할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소재지의 마을이장(나이반)이 조율하며, 협상 불가 시 이후 진행은 법무부 산하 국가경제분쟁중재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다.

합작사업 혹은 지분 100% 단독투자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양자간 조정 : 분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 행정적 조정 : 양자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획투자부, 산업부 또는 기타 해당 부서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기획투자부의 투자진흥감독위원회(IPSC)에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한은 30영업일이다.
- 경제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 : 상기의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의 경제분쟁해결센터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소송 :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이 있다.

라오스는 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중재판정은 라오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국적이 뉴욕협약 가입국일 것
- 외국중재판정의 내용이 안정, 평화, 환경과 관련, 라오스의 헌법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지불 의무 당사자가 라오스 국내에 재산, 운영사업, 지분,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할 것

금융 시장 현황

라오스의 금융 부문은 라오스 국립중앙은행, 재무부, 국영상업은행, 민간은행 및 기타 외국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은행업이 금융부문 전체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라오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은행업에 자본이 편중되어 있는 점 외에도

국가적인 예금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금융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립중앙은행의 관리감독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시장은 2010년 한국 증권 거래소의 지분참여로 개설되었으나, 2018년까지 상장기업이 7개사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라오스 경제에 기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에 있어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상업은행 및 환전거래소 등 시장이 환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해 실업률을 2%로 줄이고 658천 명의 기술인력 양성과 716,893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농림업에 치중된 노동인구를 수공업,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 시행 중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고급인력의 이직률 역시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2018년도 최저임금은 1,100,000 kip(약 133달러)으로 이는 2015년 900,000 kip(약 110달러)에서 3년 만에 20%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최근 6~7%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나, 관련 법령에 명기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은 사회보장 기금 가입 및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기구(S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등록해야 하며, 가입 후 월 급여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6%)와 근로자(5.5%)가 나누어 납부한다.

말레이시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 · 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 · 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 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1)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

2015년 5월 21일 나집(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8.5월 재집권한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10월 18일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기검토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 정부의 국가 경제발전 포부 및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8~2020년중 중점 추진할 정책을 재설정하였다. 수정된 11차 말레이시아 계획은 기존 거시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경제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도록 사회계층간·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질적 성장 추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파급력이 큰 개발 프로젝트 및 구조 개혁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절차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 재정 개혁과 공공서비스 지배구조 개혁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정 제11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4.5~5.5%
- 2020년 1인당 GDP: 47,720링깃(USD 11,695)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3.2%(2015년)→3.0%(2020년)
- 물가상승률: 2.0~3.0%
- 고용: 2020년 실업률 3.5% 이하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

○ 6대 전략적 추진분야²⁰⁾

수정 전(6 Strategic Thrusts)	수정 후(6 Pillars)
① 공정사회를 위한 포용성 향상	① 공공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
② 국민복지 개선	② 포용적 경제발전 및 복지 개선

20) 2018년 10월 마하티르총리는 기존 11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6개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를 수정·보완하여 6개 핵심부문(Pillar)으로 재설정하였다.

③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가속	③ 지역 균형발전 추구
④ 지속가능성·복원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④ 인적자원 역량 강화
⑤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강화	⑤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⑥ 번영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혁신	⑥ 경제성장 강화

(2) 지역 발전전략

말레이시아는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 지역 경제활동을 위한 에코시스템 강화, 지역(6개 지역)별 비교우위 분야를 기초로 한 특성화된 지역산업클러스터 촉진 등 경제기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역별 비교우위 산업

					
북부지역 · 제조업(전기전자, 기계장비, 바이오, 항공, 의류기기) · 물류(수송·보관) · 관광(미술·오락·휴양) · 농업(논·어업)	동부지역 · 광업(석유·가스) · 농업(임업·어업) · 제조업(석유화학) · 물류(수송·보관) · 관광(미술·오락·휴양)	중부지역 · 도소매 유통 · 숙박·음식료 · 금융·보험 · 관광(미술·오락·휴양) · 부동산·기업서비스 · 제조업(항공)	남부지역 · 제조업(전기전자, 석유화학, 농업 기반 가공산업) · 광업(석유·가스) · 관광(미술·오락·휴양) · 물류(수송·보관) · 부동산/교육 · 농업(식량작물)	사바지역 · 농업(임업·어업·오일팜) · 광업(석유·가스) · 물류(수송·보관) · 관광(미술·오락·휴양) · 교육	사라왁지역 · 농업(임업·어업·오일팜) · 제조업(알루미늄, 유리, 철강, 목재, 수산물) · 광업(석유·가스) · 정보통신기술

(3) 2020년도 정부 예산안

2019년 10월 11일 발표된 2020년 예산안은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성장 촉진 및 공평 분배’라는 제목으로 신경제·디지털시대의 성장촉진,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대국민 투자, 단합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사회 건설, 공공기관 및 재정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2020년도 정부 편성예산은 2,963억 링깃으로 전년대비 6.0% 축소된 규모이다. 2,410억 링깃(81.4%)은 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552억 링깃(18.6%)은 개발투자금으로 편성하였다.

최근 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수출 및 민간부문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8년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무역긴장 심화, 공공 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중 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률이 확대되었으나, 2018년 이후 기저효과, 조세제도 개편(물품용역세 → 판매서비스세)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 감소 등으로 크게 둔화되었다.

실업률

실업률은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6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신규 노동공급 규모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 규모가 균형을 이루며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 국제수지 흑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상반기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5.0	4.2	5.9	4.7	4.7
GDP(억 달러)	3,018	2,978	3,124	3,543	..
1인당 GNI(링깃)	36,710	38,412	41,627	43,086	..
물가상승률(%)	2.1	2.1	3.8	1.0	0.2
실업률(%)	3.2	3.5	3.4	3.3	3.3
외환보유액(억 달러, 기말)	953	945	1,024	1,014	1,027

환율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2017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2018년 2/4분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이탈,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다.

▶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단위: 1달러당 링깃, 기말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4.292	4.486	4.062	4.139	4.187

정책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17년까지 정책금리(Overnight Policy Rate)를 3.00%로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으로 3.25%로 0.25%p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9년 5월 물가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금융여건이 일부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책금리를 다시 3%로 인하하였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단위: %, 기말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3.25	3.00	3.00	3.25	3.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18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2,475억 달러, 수입은 2,176억 달러로 4,651억

불의 무역규모와 299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매년 20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234,039	199,248	189,743	224,994	247,519
수입	208,950	176,089	168,684	203,059	217,606
수지	25,089	23,159	21,059	21,935	29,913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13.9%), 중국(13.9%), 미국(9.1%)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9대 수출대상국이다.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19.9%), 싱가포르(11.7%), 미국(7.4%)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입의 4.4%를 차지하는 8대 수입대상국이다.

▶ 2018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비중)
1	싱가포르	34.5(13.9%)
2	중 국	34.4(13.9%)
3	미 국	22.5(9.1%)
4	홍 공	18.5(7.5%)
5	일 본	17.1(6.9%)
6	태 국	14.1(5.7%)
7	인 도	9.0(3.6%)
8	베트남	8.5(3.4%)
9	한 국	8.3(3.4%)
10	호 주	8.3(3.3%)

〈수입〉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비중)
1	중 국	43.4(19.9%)
2	싱가포르	25.5(11.7%)
3	미 국	16.1(7.4%)
4	일 본	15.8(7.2%)
5	대 만	15.7(7.2%)
6	태 국	12.1(5.5%)
7	인도네시아	10.0(4.6%)
8	한 국	9.6(4.4%)
9	인 도	6.6(3.0%)
10	독 일	5.3(2.5%)

자료: World Trade Atlas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석유가스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29.4%를 차지하였고, 3대 수입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원유이며, 2018년 기준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7.9%를 차지하였다.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 2018년 말레이시아의 수입국 기준 13위, 수출국 13위의 무역대상국이다.

※ 출처: 말레이시아대외무역공사(MATRADE),
<http://www.matrade.gov.my/en/malaysian-exporters/services-for-exporters/trade-market-information/trade-statistics>

▶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對말레이시아 수출	7,588 (-11.6)	7,735 (2.0)	7,533 (-2.6)	8,045 (6.8)	8,983 (11.7)
對말레이시아 수입	11,101 (0.05)	8,609 (-22.4)	7,508 (-12.8)	8,715 (16.1)	10,206 (17.1)
교역수지	-3,513	-874	25	-670	-1,22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집적회로 반도체, 경유, 합성고무, 휘발유, 선박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증유, 컴퓨터 부품 등이 주도하고 있다.

▶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3,178		총계	5,104	
1	집적회로반도체	1,037	15.4	천연가스	1,758	21.0
2	경유	701	105.5	집적회로반도체	1,447	14.0
3	합성고무	564	20.0	증유	1,213	37.4
4	휘발유	468	87.3	컴퓨터부품	350	8.4
5	선박	408	93.0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336	27.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2017년 기준, 세부 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은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는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i)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ii)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40% 부가가치 산출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 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다음의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식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랏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b) 수입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AP 대상 상세품목은 www.miti.gov.my 참조).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 (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체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된 결과로 인한 품질 저하,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말레이시아 철강업체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부과 관세를 내고 있다.

Megasteel사는 2015년 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년 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등이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당초 2016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3.78%, 포스코-베트남은 3.06%,

현대제철은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가 결정되었으나, 2019년 로컬밀인 CSC Sdn. Bhd.의 재심 요청에 따른 심의 결과로 2019년 5월 8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포스코는 0%, 포스코-베트남은 3.06%, 현대제철은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로 변경되었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부과 된다.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5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 까지 5년간 14.91%를 부과하고 있다²¹⁾. 2019년 9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품은 1개이다. 강선 재와 변형코일 철근(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1.90% 이다²²⁾.

▶ 말레이시아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9.10월 기준)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3907.60	반덤핑	2014.06.16.	2015.03.14.	14.91%
냉연압연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7219.31.000 7219.32.000 7219.33.000 7219.34.000	반덤핑	2017.05.15	2018.02.08	현대제철: 0% 현대BNG: 0% 포스코: 4.44%

21)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참조

22)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70414_P.U.\(A\)_1232017.pdf](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70414_P.U.(A)_1232017.pdf) 참조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any form(CRSS))	7219.35.000 7220.20.190 7220.20.900				기타: 7.27%
강선재와 변형 코일 철근 (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	7213.10 7213.91 7213.99 7227.90	세이프 가드	2016.05.27	2018.04.15	'17.4.15.-'18.4. .14 : 13.90% '18.4.15.-'19.4. .14 : 12.90% '19.4.15.-'20.4. .14 : 11.90%
냉연코일 (Cold-Rolled Coils (CRC))	7209.15.000 7209.16.000 7209.17.000 7209.18.290 7209.18.900 7225.50.000	반덤핑	2018.11.09 (재심 개시)	2019.05.08	포스코 : 0% 포스코-베트남 : 2% 현대제철 : 11.55% 기타 : 21.64%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안전 헬멧(Motorcyclist Safety Helmet)
- 안전벨트(Motorist's Safety Seatbelt)
-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
- 가스 기구(Gas Appliances)
- 화재 안전 물품(Fire Safety Products)

-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Cement, ceramic tiles, ceramic sanitary ware)
-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 차세대 디젤 엔진(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년 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군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²³⁾

지식재산권 보호²⁴⁾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3) http://www.treasury.gov.my/pdf/lain-lain/msia_regime.pdf 참고.

24)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1년 발효된 동법 및 특허법 부분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C)에서는 이러한 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9월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하였으며, 동 의정서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 출처: <http://www.myipo.gov.my/en/malaysia-accedes-to-madrid-protocol/>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업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4%이며 2020년부터는 과세 연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 중 최초 60만 링깃에 대해서는 17%, 6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연간 과세 소득이 5,001링깃 이상일 때 1~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2018년 9월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 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GST)가 폐지되고 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가

제도입²⁵⁾되었다. 일괄적으로 6% 세율이 적용되었던 GST와는 달리, 판매세는 품목에 따라 5%, 10% 또는 별도(석유제품) 세율이 적용되며, 서비스세는 6%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 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5) 2015년 4월 말레이시아는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폐지하고 물품용역세를 도입하였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제조업분야에서 총 580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 하였다. 2018년에 FDI로 승인된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전기전자제품 관련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산업, 화학제품 관련 산업 등이 그 뒤를 따른다.

▶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액	20.8	30.5	39.6	36.1	59.0	21.6	58.0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5개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으로서 전체 제조업분야 승인된 FDI 중 443억 링깃(76.4%)을 차지하였다.

▶ 2018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중국	19,673.3	19.7%
2	인도네시아	9,035.6	9.0%
3	네덜란드	8,336.9	8.3%
4	일본	4,133.3	4.1%
5	미국	3,155.0	3.2%
6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768.5	2.8%
7	한국	2,495.4	2.5%
8	싱가포르	1,834.0	1.8%
9	홍콩	1,250.6	1.3%
10	파나마	892.0	0.9%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총 8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신고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2015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산업분야로는 전지전자,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 산업(에너지), 금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 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對말 투자	금액	279	54	239	398	141	8,192
	건수	92	124	134	137	155	2,315
對韓 투자	금액	28.2	89.5	89.7	188	22	7,900
	건수	18	20	19	23	19	8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이하인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를 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향후 몇 년 안에 RM 140,000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 사항이 되기도 한다.

현재 약 53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운영 중이다.

▶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메탈,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CJ Bio, OCI, 신세계마미, 아모레 퍼시픽 등
도소매업	포스코인터네셔널,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코웨이 등
서비스업	SK, 대한재활서비스 등
유통업	GS 홈쇼핑, CJ 오쇼핑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9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세계 190개 국가 중 15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가했다. IMD의 2019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22위로 평가 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 역시 2018년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25위로 발표하였으며(한국은 15위)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제도, 비즈니스 역동성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TF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TF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 (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8년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01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1,100링깃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요 도시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월 1,200링깃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년 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²⁶⁾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장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26)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 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6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7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투자 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후로도 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의 투자는 개척자제도의 과세대상 소득 감면폭과 ITA의 과세대상 소득의 감면 상한이 100%로 늘어난다. 인센티브 신청은 투자청(MIDA)에서 관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10년간 100% 과세대상 소득 감면 또는 ITA 혜택을 통해 5년간 자본지출의 100%를 과세소득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투자(reinvestment)에 대해서도 일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²⁷⁾.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27) 업종별 인센티브 상세내용: <https://incentives.mida.gov.my>

받은 회사의 경우 ▲ 회사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5년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 바이오 넥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및 ▲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IT 분야의 경우 MSC(Malaysia super corridor, 말레이시아 정보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Cyberjaya라는 과학 단지, IT도시를 구축하였으며 MSC프로그램은 4가지 클러스터(Creative Content & Technologies, IHLs & Incubators, InfoTech, Global Business Services)로 나누어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관련 장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주요 프로젝트 입찰 지원 ▲ 인프라 및 정보 제공 등 10가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3) 서비스 분야 투자 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투자 지분 참여 제한을 없앴에 이어, 2009년 4월 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 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27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 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 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100% 소유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기업이 도소매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통 소비자부에서 발급하는 WRT(Wholesale Retail Trader) License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과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정체를 보여왔다. 2017년 유가회복 및 무역 등 대외지표 개선, 서비스업종 성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수산업	1.0	8.4	11.7	-7.7
광업	4.7	0.9	16.7	10.6
제조업	4.9	3.8	10.1	4.1
건설업	8.2	10.3	8.9	5.3
서비스업	5.1	7.2	8.2	7.7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산출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2017년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산출액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유지, 금속 및 비금속 제품 순으로 높다.

▶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총 산출액 (Value of Gross Output)

(단위: 10억 링깃)

구분	2010	2015	2017
제조업 전체	836.5	1,142.0	1,275.8
전기전자 및 광학	223.1	321.9	361.8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244.1	299.1	340.4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146.6	199.8	214.0
금속 및 비금속 제품	95.9	134.6	157.5
운송장비 및 기타 제조 및 수리	58.2	91.9	100.5
목재제품, 가구, 종이 및 인쇄류	47.7	62.9	67.4
섬유 및 의류	12.4	18.2	19.5
음료 및 담배	8.6	13.4	14.7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18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2018년도는 제조업과 전기 분야의 생산지수가 개선되었다.

▶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업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광업	102.4	102.7	100.3	101.4	100.3
제조업	104.3	110.7	116.0	115.9	119.2
전기	108.5	111.3	115.4	116.6	120.8
산업합계	104.1	108.7	112.0	112.3	114.6

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 · 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증가중인바, 에너지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년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년 국가에너지정책, 1980년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년 4대 에너지정책, 2001년 5대 에너지정책,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발표된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에 에너지 부문 개발 방향을 에너지 부문 이해당사자간 협력 강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제고 및 최종 소비자 참여 장려, 석유 및 가스 부문 성장 촉진, 수송부문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발전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전력 부문 안보 확보, 에너지 관련 개발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사후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2015년 기준 약 59억 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규모(Installed Capacity)는 26,522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1,954MW, 사바가 1,324MW, 사라왁이 3,244MW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시장은 전체 51,584ktoe중에서 43.3%(22,357ktoe)를 사용하는 교통분야와 26.2%(13,496ktoe)를 이용하는 산업분야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나집 정부에서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한 바 있었으나, 현 마하티르 정부에서는 원전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 재생에너지법 도입과 이에 따른 발전차액지원(FiT : Feed-in Tariff) 제도 실시 등을 통해 지속 증가(2009년 53MW → 2014년 283MW → 2018년 602MW)하고 있고, 현 마하티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5년까지 20%(수력발전 제외)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80MW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 · 건설 시장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의 동남아 기준 3대 해외 건설시장(전세계 기준 10위)으로 2018년까지 총 299건의 건설공사(207억 미불)를 수주하였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주요건물(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제2타워,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관 등), 기간시설(페낭대교,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등)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1차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2018년 10월), 이전 건설업의 성장세를 하향 조정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4.3% 성장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이는 상업용, 주거용 건물 등에서 공통적으로 건설 수요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점과 대형 프로젝트들이 2019년 5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루어지거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검토대상 프로젝트는 총 11건으로, 동부 해안선 철도건설, 경전철-3(LRT3), 모노레일-2 건설(MRT-2) 등 6건은 재협상을 통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계속 추진 중이다. 다품목 송유관 및 트랜스 사바주 송유관, 이민관리 시스템, 모노레일-3(MRT-3) 3건은 중단되었으며, 말-싱가폴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환승 시스템 건설 2건은 현재 연기·보류된 상태이다. 당초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은 2013년 2월 말-싱 정상간 합의이후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입찰을 추진하여 왔으나, 18년 재검토 결정이후 최근 2020년 5월말까지 입찰을 연기하고 2030년 완공 목표로 조정하는 것을 양국이 합의하였다. 동 사업은 말-싱간 350km 구간을 90분 안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8개 역(말 7개, 싱 1개)을 건설하고 상부(차량·시스템, 민자), 하부(토목·건축, 재정), 운영(민자)의 세 부문으로 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고속철도공단(MyHSR)은 2019년 5월부터 기술부분, 사업부문에서 최적의 사업안(사업비 절감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다. 동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용절감 방안을 토대로 싱측과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 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외환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변화

외환위기 이전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 다기화된 금융기관 - 채권시장 미발달 - 간접금융시장 의존 - 경직적인 규제 및 감독 - 이슬람금융 기능 미약 - 금융상품 가격발견기능 미흡 - 자금조달 차별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최적화된 금융기관 - 심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시장 - 기업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중개 - 견고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소비자보호프로그램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토대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조달 확대 -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구축 - 금융 및 실물경제간 연계성 강화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6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 은행 16개 등이 영업 중이며 이외에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성(2019년 9월 기준)

구분	1986년			2019년		
	국내	외국계	계	국내	외국계	계
일반은행	22	16	38	8	18	26
이슬람은행	1	0	1	11	5	16
국제이슬람은행	0	0	0	0	1	1
투자은행	12	0	12	11	0	11
기타 금융회사	42	5	47	2	0	2
합계	77	21	98	32	24	56
보험회사	53	10	63	14	23	37
재보험사	1	0	1	2	5	7
타카풀사	1	0	1	11	4	15
재타카풀사	0	0	0	1	3	4
합계	55	10	65	28	35	63

자료: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 BNM

IMF 및 세계은행도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펀드 등 각 영역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할랄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할랄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www.halal.gov.my 참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할랄시장의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할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1970년대부터 할랄 산업을 직접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할랄인증체계, 할랄산업단지 등 할랄산업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중동 이슬람국가, ASEAN 국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전세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3월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HDC)는 양국간 할랄산업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인적교류 확대, 할랄 인증 및 표준 개발, 할랄제품 공동 개발, 할랄공급망 확대,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국제세미나, 컨퍼런스,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한-말 할랄산업 당국자 및 업체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민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양국 기업간 합자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하여 현지에서 생산중인 한국 할랄 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9년 5월부터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교역 투자 현황

교역현황

한국의 對몽골 교역은 큰 폭의 무역흑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몽골경제 침체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화장품 등이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광물, 양모 및 가죽 등이다.

▶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09	-15.0	228	9.4	308	34.7	230	9.0
수입	10	-77.6	14	36.7	27	90.1	25	92.8
무역수지	199	-0.2	214	7.5	281	31.3	205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투자현황

2019년 9월 기준 한국은 몽골의 제9위 투자국, 몽골은 우리나라의 제55위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의 대몽골 투자액(누적)은 총 4.8억 달러이다. 대몽골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다.

▶ 한국의 대물골 업종별 투자현황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58	17	11,282	5,225	1.1
광업	286	48	319,174	129,268	26.7
제조업	164	92	65,747	23,633	4.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	11	12,459	2,771	0.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4	4,891	3,211	0.7
건설업	168	77	98,025	54,991	11.4
도매 및 소매업	380	162	151,997	89,812	18.6
운수 및 창고업	52	17	18,653	14,052	2.9
숙박 및 음식점업	31	23	11,850	9,479	2.0
정보통신업	64	25	45,692	29,762	6.2
금융 및 보험업	23	10	4,031	3,662	0.8
부동산업	129	41	106,390	57,081	1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	46	23,511	18,628	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30	23,887	14,221	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3	400	130	0.03
교육 서비스업	6	4	370	370	0.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	11	43,762	25,014	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6	2,020	1,250	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11	2,683	676	0.1
N/A	2	0	8	0	0
합 계	1,630	638	946,834	483,236	10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2019.10.21.), 단위: 건, 개, 천불, %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2018년 몽골의 국내 총생산은 32.3조 투그릭으로 GDP 성장률 6.9% 기록하였다. World Bank의 2018년 10월 기준 국가별 GDP 순위에 의하면, 몽골의 GDP는 127억 달러로 조사대상국 19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총생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116억 달러	112억 달러	115억 달러	130억 달러	n/a
GDP 규모*	23조1,069억 투그릭	23조9,680억 투그릭	27조8,955억 투그릭	32조3,073억 투그릭	17조4,194억 투그릭
GDP성장률*	2.3%	1.0%	5.3%	6.9%	7.3%
1인당 GDP**	\$3,918달러	\$3,660달러	\$3,672달러	\$4,103달러	n/a

자료: *는 몽골통계청, **는 World bank

산업별 국내총생산(2018년)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비중(%)
광업	7,604	24.3
농림축산업	3,495	10.7
도소매	3,076	16.5
제조업(가공)	3,057	10.9
부동산	1,820	5.7
건설	1,164	4.2
금융, 보험	1,559	4.9
운송, 창고	1,508	4.6
교육	1,190	3.7
공공분야	1,223	3.8
정보통신	564	2.1
전력가스	540	2.0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10억 투그릭

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는 2018년 기준 광업 24.3%, 도소매 16.5%, 제조업 10.9%, 농림축산업 10.7% 등 주요 4개 산업의 GDP기여율은 62.9%이다.

몽골 교역 현황

2019년9월 기준 몽골의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105.5억 달러 수준이며, 1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교역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수 출	4,669	4,916	6,200	7,011	5,946
수 입	3,797	3,358	4,335	5,875	4,599
무역수지	872	1,558	1,865	1,136	1,347
교역규모	8,466	8,274	10,536	12,886	10,545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수출품 중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직용 섬유와 그의 제품이 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22%, 기계 및 가전 제품이 20%,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19%를 차지하며, 이들 품목은 전체 수출의 61%를 구성하고 있다. 몽골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몽골 무역에서 수출비중이 89%, 수입비중이 33%이다. 그 외 몽골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 등이다.

▶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동, 아연, 철강, 형석, 석탄, 원유, 캐시미어 등	석유제품, 철강, 버스, 트럭, 음료, 닭고기, 쌀, 섬유 등
對러시아	형석, 양털 등	석유제품, 밀가루, 쌀, 마가린, 전력, 버스 등
對일본	-	승용차, 트럭 등
對한국	광물, 의류, 가죽 등	석유제품, 버스, 휴대폰, 트럭 등
對미국	-	닭고기, 승용차, 트럭 등

자료: 몽골 통계청

▶ 주요 교역대상국(2018년 기준)

	중국	러시아	영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기타	총계
수 출 (비중)	5,295.5 (92.8%)	85.9 (1.2%)	172.8 (2.5%)	20.7 (0.3%)	10.6 (0.2%)	8.1 (0.1%)	22.6 (0.4%)	329.8 (5.5%)	5,946 (100%)
수 입 (비중)	1,528.9 (33.2%)	1,260.6 (27.4%)	22.2 (0.5%)	202.9 (4.4%)	474.3 (10.3%)	135.8 (3.0%)	234.3 (5.1%)	739.8 (16.1%)	4,598.8 (100%)
총교역액 (비중)	6,824.4 (64.7%)	1,346.5 (12.8%)	195.0 (1.8%)	223.6 (2.1%)	484.9 (4.6%)	143.9 (1.4%)	256.9 (2.4%)	1,069.6 (10.1%)	10,544.8 (100%)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물가 및 환율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2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 6%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록하였다. 2016년 물가상승률은 1.1%, 2017년 4.3%, 2018년 6.8%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3.25%까지 인상하였으나, 201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5%로 인하하였다. 이후 물가상승,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13.0%, 2016년 8월 15.0%로 각각 다시 인상하였고, 2016년 12월 14.0%, 2017년 6월 12.0%, 2017년 12월 11%, 2018년 3월 10%로 각각 다시 인하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11%이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석탄자원 수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2013년 9월 평균 환율(1달러=1,662투그릭) 대비 약 61% 평가절하(1달러=2,670투그릭, 2019년 9월)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일부 품목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4103.9	skins of goats	1piece당 1500투그릭
4301.1	Raw furskins of goats or kids	1piece당 1500투그릭
4401, 4403, 4406, 4407, 4409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그 외에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 털 가공 및 옷 생산을 위한 공장 장비 및 부속품
- 농업용 장비, 트랙터, 밀가루 공장용 자재 등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 신재생 에너지관련 연구 및 생산기계장비와 그의 부속품

수입부과금

-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부과

- 특별세율은 그간 미 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년 1월 「특별세법」을 개정하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 (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2009년 4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는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현재는 국내산, 수입산 맥주의 차등 없이 335 투그릭(관세율 25센트) 부과

몽골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확대금융제도(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주류, 담배, 유가 등 제품에 대한 특별세를 인상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18년부터 적용)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리터당	1,595	1,670	1,740
	- 약품공장, 병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리터당	1,450	1,450	1,450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15,950	16,700	17,400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리터당	3,190	3,335	3,480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리터당	6,380	6,670	6,960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14,355	15,000	15,660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리터당	7,975	8,340	8,700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리터당	15,950	16,700	17,400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19,140	20,010	20,88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320	335	350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800 7,180	835 7,505	870 7,83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320	335	350
6	컬런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830	4,000	4,1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870	3,000	3,1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0-15,950 0-17,400	0-15,950 0-17,400
9	디젤	톤당	0-21,750	0-21,750	0-21,750

▶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 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1500이하	75	160	335	1,000
2	1501~2500	230	320	500	1,170
3	2501~3500	305	400	670	1,335
4	3501~4500	685.75	800	1,085	1,750
5	4501 이상	1,421	2,720	3,915	6,597.5

주: 특별세 면제 대상은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임.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 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0월 현재 몽골정부는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천만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0만 투그릭 이하의 경우 외국 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헌정은 2012년 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 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국가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 금지되어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국가등록청에 관련 서류 제출시 6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속기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과 함께 도로경찰청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몽골 금융 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 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19년 9월 기준 총 13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6위의 Khan 은행, TDB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 State은행, 울란바토르 시티 은행이 전체 예수금 및 대출자산 각각 약87%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ING, SMBC, Bank of Tokyo-Mitsubishi UFJ, Bank of China 및 ICBC 등 총 5개 기관이 진출하고 있다.
- 보험
 - 2019년 9월 기준 18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업 형태는 주로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9년 상반기 기준 538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총 자본금은 1.5조(약6억 달러)투그릭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였으며, 10년 연속 증가세이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4%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 또한 주식 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사업을 위해 몽골 중앙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몽골에서의 은행사업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전 자산규모로 “Bankers Almanac” 세계은행 랭킹의 Top100에 포함되어야 한다.
 2. Standard&Poor's, Fitch 등 기관에서의 신용등급은 A이상, Moody's의 A2이상 평가를 받은 은행이어야 한다.
 3. 외국은행은 모국 외의 국가에서 지점을 설립해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 법 위반 및 금융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4. 외국은행은 몽골에서 1년 이상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년 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미국 등과의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 양허,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양허 약속

-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8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62.2%를 2018년까지 철폐하고, 2025년까지 88.6%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70%를 2018년까지 철폐, 2024년까지 추가 19% 철폐 약속
-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9%를 발효 후 16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EAEU FTA
 - 201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7.9%를 발효 후 16년 이내에 철폐 약속
- 아세안-홍콩(중국) FTA (AHK FTA:Asean-Hong Kong FTA)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5%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아세안-한국(A-K) FTA(2007년)와 베트남-한국(V-K) FTA(2015년)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V-K FTA는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2012년 수입액 기준 6.1%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 또는 V-K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²⁸⁾하며, 수출자는 A-K FTA 또는 V-K FTA 중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8)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을 참조하면 된다.

A-K FTA 또는 V-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 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4%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3%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 미파쇄)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향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베트남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령 125/2017/ND-CP(일부개정 2017년 11월 16일)」 및 「122/2016/ND-CP (2016년 9월 1일)」에 의거 적용된다. 한국의 수출입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HS 코드 확인을 명확히 하여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²⁹⁾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베트남 관세율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9)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아세안-인도 FTA(AI FTA; Asean-India FTA),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FTA(Vietnam-EEU FPA),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홍콩 FTA(AHK FTA; Asean-HongKong FTA) 총 12개이며, 베트남-EU FTA가 서명되었고, 한국이 포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72/2015/TT-BTC」 및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07/2019/TT-BTC(일부 개정)」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월 1회 일괄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어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를 늦출 수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에서의 규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물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2만건의 신고대행 실적을 보유한 통관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년 4월 1일 이래(주류 관련 조항은 2010년 1월 1일 발효), 2016년 10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법을 발표하였다. 2014년 12월 초,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으로 변경되고,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류
- 주류
- 24인승 미만 자동차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요트
- 각종 유류제품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 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 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 호수 등의 준설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수산물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बाट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식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업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쇠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철판, 분필, 자, 콤팩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Decree No. 125/2017/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양력 1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베트남에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거주한 경우
- 항구적 주거지를 가진 경우(상주신청을 한 주거가 있는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한시적 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 주거를 임차한 경우 등을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 구간별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이상: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납부한 뒤 수입될 수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일시수입-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샘플은 VND 50,000을 초과하지 않거나 오직 샘플로써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것에 한정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광고 및 홍보물품은 1kg을 초과하지 않는 1부만 면세 적용 가능함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면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판촉물과 팜플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 시에도 면세 범위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도록 하였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과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번역이 불가하거나 번역을 하였을 경우 의미전달이 불가한 국제적 또는 식물학적 성분의 이름 등을 제외하고, 필수기재정보는 베트남어로 표기
 - 수입재화에 베트남어로 표기된 필수기재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한 추가적인 라벨이 본래의 라벨과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표기된 내용은 본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 그 밖의 Decree 43/2017/ND-CP Appendix I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필수정보(예. 화학물질의 경우, 수량, 제조일, 사용기한, 성분, 화학물질 식별번호, 경고표시, 예방법, 사용 및 보관 방법 안내문)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 의약품 : 의약품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품질인증서(ex. ISO 9001) 등 서류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 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는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 및 2018년 5월 15일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가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

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 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 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트랙터·오토바이의 부품 기기·프레임·타이어, 자동차·트랙터의 차대(chassis) 중 중고 엔진이 부착된 새 차대와 새 엔진이 부착된 중고 차대를 모두 포함,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9,5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5,5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

- 보건부 : Circular 31/2017/TT-BYT
- 교통부 : Circular 39/2016/TT-BGTVT
- 산업무역부 : Circular 41/2015/TT-BCT, Circular 29/2016/TT -BCT

- 정보통신부 : Circular 42/2016/TT-BTTTT
- 공안부 : Circular 14/TT-BCA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50/2009/TT-BNNPTNT
Circular 50/2010/TT-BNNPTNT
Circular 44/2011/TT-BNNPTNT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3/2010/TT-BLDTBXH

환경관련 규제

「2005년 환경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2014년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이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20개 장 170개 조로 구성된 신규 「환경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기존법과 유사한 내용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실효성이 보완되었으며, 환경보호 관련 새로운 정책과 방침이 법문화되었고, 일부 내용이 세부화·구체화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재정 내 환경보호 관련 지출항목 편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보호 지출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정책 추가,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규정 신설, 폐기물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세부 조건 마련 등이 있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약품, 수의 용품
-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한편, 신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제도로서 ① 환경보호 마스터플랜(국가 단위와 성단위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②전략적 환경평가(이행 대상 : 국가 및 지방 성·시 단위, 경제구, 공단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과 계획) ③ 환경영향평가(이행 대상 : 국회·정부·총리에게 투자결정권이 있는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자연보전지역·관광지역·문화·역사 유적지·생태보존지역 등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④ 환경보호계획서(이행 대상 :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대상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미대상 생산·사업·서비스 방안)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2019년 5월

13일자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no. 40/2019/NĐ-CP」)은 18개 업종별 107개 프로젝트 군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 전문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 「입찰법」 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 제43/2010/QH1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 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제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전자입찰의 경우, 베트남 총리가 전자입찰에 대한 2016~2025 마스터플랜 (결정서 1402/QD-TTg)을 2016년 7월 13일에 승인하였다. 내용에 따른 2025년까지의 목표는 ‘①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 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 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 등 3가지로 정하였다. 이밖에,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입찰방식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능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대내적으로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 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지식재산권, 식품 품종에 대한 권리 규정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조치들을 담고 있다.

2006년 공포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법원, 검사, 시장 관리 당국, 세관 당국, 경찰 기관 및 모든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이 잠정적 조치는 물론, 수출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통제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집행 당국은 물론 지식재산권 소유주 및 관련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된 지식재산권 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의견을 발표한다.

2009년 개정 지식재산권법(law 36/2009/QH12)에서는 영화, 사진, 응용 예술 작품 및 익명 작품에 대해 최초 출판(발표)일로부터 75년간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등록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선등록 원칙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었다.

형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7/2009/QH12)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높여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 법에서는 벌금 형량을 최대 5억 동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산업재산권 침해가 의도적으로 영리화된 경우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금 없이 벌금형과 최대 2년간 재교육의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시 최대 3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공동 시행규칙(Circular 07/2012)을 규정해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통신사,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SNS 및 검색 엔진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상에서 관리, 전송되는 콘텐츠는 물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거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능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2년 6월 21일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투자장벽

베트남 개정 신투자법 시행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법(Law No. 67/2014/QH13, 2015년 시행)을 개정한 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안은 1) 투자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가격 및 경매 입찰 규정, 3) 프로젝트의 기계 및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4) 기업등록 증명서의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5) 투자인센티브 조건 변경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16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신투자법에서 투자 금지 1개 분야(폭약 관련 사업)를 추가하고 조건부 투자 분야를 267개에서 243개로 조정한 개정 신투자법(Law No. 03/2016/QH14)을 발표하였고, 2019년 8월 29일에는 투자법상 조건부사업에 대해 12개 사업이 제외되고 6개가 추가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베트남의 투자법에서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 등 투자 조건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Decree 60/2015/ND-CP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시행령(118-2015-ND-CP)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업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과 법적 근거 등이 국가기업등록포털³⁰⁾을 통해 발표되는 바, 이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 <https://dangkykinhdoanh.gov.vn/en/Pages/default.aspx>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갈,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 자본출자, 인수 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 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 2차 소집 시(15일 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 2차 소집 시(15일 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
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 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 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 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년 10월 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ΓNo.1804/2003/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기존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규 환율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5)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 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의 투자용도, 유류제품 수입 증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 18일부터 개인 예금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 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QH11)」이며, 2018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창설하였는데,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국가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경쟁관리국이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애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47/2014/QH13)」에 따르면,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최대 3개월 이하만 체류가 허용되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 출장용 무비자 입국 시(15일) 출국 후 30일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자관련 애로사항이 있다.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Decree 11/2016/ND-CP」, 2016년 4월 1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해외에서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 또는 기타 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도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오다, 1994년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입법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즉 스리랑카의 수입장벽은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간소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글로벌 순위 115위, 평가점수로 보면 56.4점으로 전년대비 1.4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3개 국가들 중에서는 25위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여 보면 네팔(136위), 파키스탄(131위), 인도(129위), 몰디브(141위) 등에 비하면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가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 지수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폭은 0% 무관세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실행관세는 10.3%로서 2010년 11.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 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레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현재는 제5라운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항공
항만세(PAL)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에 비해 10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진흥세(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
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
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이 추가로 확대되었다.

국가재건세는 수입자, 제조업자, 소매 및 도매 서비스공급업자의 자체평가
(self-assessment)에 근거해서 납부하는데, 현지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
공급업자는 세무서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수입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수입시 국가재건세를 관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항공항만세(PAL)는 2002년 「금융법(Finance Act No. 11 of 2002)」에
의거하여 수입품에 7.5%가 부과된다.

수출진흥세(Cess)는 자국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과되었는데,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약 2,000여개
이상의 품목들에 부과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 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자들은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수입자는 세무서(Inland Revenue)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보해야 하고, 관세신고서(CUSDEC)를 작성하여 인보이스, B/L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관자료자동시스템(ASYCUDA)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모든 이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화물 통관이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대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스리랑카의 경우 평균 48시간으로, 남아시아 평균 100.8시간에 비해 신속한 편이다. 수입에 소요되는 경비 면에서는 300달러로 남아시아 평균 504.6달러에 비해서도 효율적이다. 아울러, 수입 서류 면에서는 스리랑카가 48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남아시아는 100.8시간이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경비 면에서는 스리랑카가 283달러인 데 반해, 남아시아 평균이 276.7달러여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

하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 관행으로 인해 아무리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된다.

다양한 무역협정상의 특혜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각 개별 협정별로 제출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상공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중국, 인도,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그리고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13년 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국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리랑카는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다. 다만, 최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체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으로 123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한편,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속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하며, 동 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선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2008년 3월에 발효된 「환경보존세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evy Act No.26 of 2008)」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수는 환경보존통합계정에서 관리되다가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투자된다. 가령, 동 법에 의거하여 핸드폰 사용시 발생하는 e-폐기물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며,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시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만,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13년 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고,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09년 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627/2 of 9 November 2009」)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상품 및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전체 GDP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조달을 경제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한금액(threshold) 및 상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13개의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용역(Works), 서비스(services), 물품공급(supplies)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조달되는데, 긴급구매 등 특정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s), 각료급 조달위원회(PCs)를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입찰공고(call for tenders)는 반드시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현지 신문에 요약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체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입찰 문의방식이 유선이 아닌, 팩스와 이메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AS 이용가능성,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이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기도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해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 공사계약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7.5%,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10% 가격우대를 한다. 가격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 스리랑카 개인 사업체이거나, 2) 스리랑카 현지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파트너십이거나, 3) 스리랑카 현지인이 소유권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며, 계약가격의 10% 이상을 도급계약하지 않은 스리랑카 현지등록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 제조된 물품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15%,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20% 가격우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된 노동, 원자재 비용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자신들의 제조/조립 생산시설로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

2010년에는 전자입찰 시스템(e-procurement)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일반 공고 등이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10% 절감할 수 있는 전자정부조달(E-GP)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8년 현재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이며, 98%에 달하는 페이퍼 방식의 정부조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19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조달위원회(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03년의 「지재권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과 2006년의 「지재권 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 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입법조치 중으로서 아직 관련 입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공연및음반조약(WPPT), WIPO 저작권조약(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56%, 파키스탄 83%, 방글라데시 84%이고, 한국은 32%, 미국은 15%이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특정 분야를 목표로 하여 조세 감면과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 10월 이후부터는 어떠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정부는 투자를 촉진 시키고, 비즈니스 친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 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하며, 4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스리랑카의 최저투자금액은 2011년부터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의 경우 3백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투자법」 16조 해당기업)의 경우 1백만 달러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아 외국인 중소기업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법규는 없지만 「소비자법(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으로 불공정 경쟁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 경쟁적인 관행에 대하여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별무하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현지기업의 외환자금 보유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대금지불방식으로서 T/T 방식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주로 L/C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세는 T/T 방식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L/C 거래에 따른 행정상의 실무적인 애로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미숙으로 노무관리가 오히려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자 해고기준 완화, 정리해고시 보상 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 합리화, 노조 구성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선부른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노무관리가 쉽지는 않다.

특히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사규 준수거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달서나 경고서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향후 법적 노무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 해고시에도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Warning) → 2차경고(Show Cause) → 내부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스리랑카 은행가에서 한국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경제 개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018년 3.1%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 홍콩, 페르시아만 걸프의 지역적 이슈 등에 따라 2019년 경제성장률을 0.0~1.0%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던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 규모는 경기 회복과 함께 2018년 전년 대비 14.5% 성장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 하락 추세이다. 2018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1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나 수입은 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 16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8위이자 수입대상국 7위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총 24개의 자유무역협정(양자간 13개, 다자간 11개)이 발효 상태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의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아래와 같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1	Stout or porter. not exceeding 5.3% vol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19	Stout or porter. exceeding 5.3% vol		
22030091	Other beer including ale. not exceeding 5.3% vol		
22030099	Other beer including ale. exceeding 5.3% vo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19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60개 품목), 담배(31개), 유류(19개), 자동차(478개) 등 4개 품목군, 588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³¹⁾

수입부과금

수입 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31)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1994년 4월 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8/19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1~2025년 사이에 GST를 현 7%에서 9%로 2%p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TP: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³²⁾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 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32)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 for Import)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목	관할기관
1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Singapore Customs
2	총 모양의 라이터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3	폭죽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4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예: 가공/비가공/파우더 형태의 코뿔소 뿔)	National Parks Board
5	전기통신장비 (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6	담배 (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Tobacco Regulation Branch, Health Sciences Authority
7	규제약품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19년 10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 CA)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위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19년 10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nterprise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³³⁾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승인국가명	국가코드	비고
대한민국	KR	육류 및 달걀은 반드시 싱가포르식품청 승인 기관에서만 수출 가능

33)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익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담당한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아래와 같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미승인
가금류	승인
신선란	승인
가공란	현재 싱가포르식품청 승인 기관 없음
보존란	미승인
개구리 다리	미승인

자료원: 싱가포르 식품청(2019년 10월 기준)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년 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2023년에 검토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1톤당 S\$10~15로 인상할 계획이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³⁴⁾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털(www.gebiz.gov.sg)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털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 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예상 금액 최대 6천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

34)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털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털(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털에 등록해야만 포털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털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6,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6,000< ≤S\$9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90,000	

자료원: SME Portal.SG (2019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

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 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년 11월 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2월 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פור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4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 기반 Makara Capital사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Makara Innovation Fund(MIF)를 설립했다. MIF는 지적재산(IP)이 풍부하고 해외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을 위한 동남아시아 첫 사모투자펀드로, 10~15개사에 각 3천만~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פור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 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 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나,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인건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 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여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 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Restricted Property)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그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내고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 정책을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1981년 체결된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상호 서명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 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 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 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פור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2018년 4월,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개편되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싱가포르에 단기로 방문하는 여행객은 1년간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12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Basic Theory Test)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편리하다.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 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발급 즉시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에서 한글 및 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영문 면허증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2개월 이상 거주 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다. 현재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싱가포르 화폐 및 외환의 흐름을 관리한다.

2018년 10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158개의 상업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의 현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는 모두 외국은행이다. 외국은행 중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소매은행업 허가를 받은 시중은행은 29개이며 도매은행은 96개, 역외은행은 1개이다. 참고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총 4개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50여 개의 종합금융회사, 150여 개의 보험 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외환거래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 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발달해 있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금조달 및 외환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금융 서비스

아시아 대표적인 금융 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선진화 되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조세 회피처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등 더 자세한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매년 다르다.

2016년에 법인세의 50%(최대 S\$20,000), 2017년에는 법인세의 50%(최대 S\$2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8년 법인세 환급률을 최대 S\$ 15,000 한도 내 40%로 소폭 감축하되 법인세 환급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현재 최대 S\$ 10,000 한도 내 환급률 20%가 적용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요 세수 재원으로서 2019/2020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세는 총 세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평균 MFN(Most Favored Nation) 실행관세율은 2016년 기준 13.4% 이나, 농작물에 대한 실행 관세율은 47.2%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화초 60%, 천연고무 70%, 자동차 및 오토바이 60-75%, 건포도 및 커피 100%, 술 150%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례로 인도는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를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인도의 對한국 실질 관세율이 2009년 9.9%에서 2016년 3.3%로 인하되었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부가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 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수 십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 IGST(Integrated 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한 것이다. 통합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상품은 동일 상품에 해당하는 인도 품목의 세율을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적용받아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 된다.

전형적인 공산품 기본관세는 20%이며,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0%-28%)가 적용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기본관세(BCD) 20%,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IGST) BCD+SWS의 18%가 합해지면, 약 수입 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된다.

▶ 인도의 관세 항목

구분	관세항목	세율(%)
(A)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B)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
(C)	부가가치세 부과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D)	부가가치세(IGST 'C')	18.0
(F)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
(J)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자료: KOTRA, <https://news.kotra.or.kr>

또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세율,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통합부가가치세의 품목별 적용세율은 점차 수정 및 보완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2019년 7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 전자기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37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전격 인상하였다. 에어컨 부품 품목의 기본 관세를 10%에서 20%로 2배 인상하였으며, 에어필터, 오일 필터 등 자동차 부품의 기본관세를 이전 7.5%에서 15%로 2배 인상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인도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AEO제도 도입, 2017년 DPD시스템 도입, SWIFT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 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는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하므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Single Window 시스템과 유사하나, 현재 세관전산망에 연계된 기관은 6개(Food Safety and Security, Animal Quarantine, Plant Quarantine, Drug Controller, Textile Committee등)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IGES)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paperless 제도와 유사하다.

2018년 7월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부가가치세(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DRI) 중심의 사후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이는 추세라 우리 기업의 관세관련 통관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DRI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실행관세 인상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아세안 FTA를

활용해서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휴대폰, 전화기, IT장비 및 전자 부품 등에 대해서 사후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DRI가 이익률을 조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CTH + 역내부가가치비율 35%)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불인정함에 따라, 한국에서 핵심 부품은 조달하고, 아세안 국가에서 조립공정만 수행하여 역내 부가가치비중이 낮은 전자 부품 등을 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 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6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407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8년 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 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 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년 12월에 714개 품목, 2002년 2월에 715개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인도의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몼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12.5%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던 동 품목의 세율이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3%로 적용됨에 따라, 관세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CEPA 및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7월 1일에서 8월 3일 기간 동안 3.38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한국산 금이 인도에 유입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만이 한국산 금, 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바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 인도는 반덤핑 31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2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화학·플라스틱 202건, 섬유 32건, 철강금속 31건 등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들 품목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27건으로, 반덤핑 26건(조치 중 21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1건(1건 조치 중임)이다. 품목 별로 보면 화학 11건, 철강·금속 7건, 플라스틱·고무 3건, 섬유·의류 3건, 전자전기 1건, 기계 1건, 기타 1건이 해당되며, 냉연강판, 스판덱스, 과산화수소, 액틸 헥사놀, 페놀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질산나트륨의 반덤핑 규제 조치가 2019년 3월 18일 종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23일부터 2년 6개월간

적용되었던 열연후판(코일제외)의 세이프 가드 조치도 2019년 6월 22일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19년 6월말 기준 태양광셀·모듈에 대해서만 세이프 가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군별로 이루어지며 품목별로 관할 정부부처, 기관, 법령이 나뉘어져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제품 인증제도로 BIS, CRS, CDSCO, FSSAI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AERB, TEC 등 일부 특수품목에 대한 인증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은 한국의 KS 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제품 인증을 심사하고 발행하는 기관이다. 각 산업분야의 표준 관련 품목이 21,000여개에 이르며,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166개로, 의무등록 116개 품목과 강제등록 5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의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표준국(BIS)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SR(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는 BIS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록제도이며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PC, 프린터, POS기기, 핸드폰 등 44개 전기전자 및 IT 관련제품이 대상이 된다.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 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 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

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 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 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 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 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 인센티브(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수출 인센티브(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은 2015년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재화 수출 제도(MEIS)로 통합한 것으로,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반면, 2020년 1월부터 WTO 규정에 맞게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세 환급제도(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RoSCTL)로 수정할 예정이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절한 수준의 로열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19년 7~8월간 정부는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 100% FDI 허용,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현지조달 규정을 완화시키고,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26% 까지 외국인 자본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FDI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 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었으나,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FDI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분의 외국인투자에 정부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 주요 산업부문 FDI 규제현황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49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컨텐츠	49	정부승인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정부승인
민간은행	74	정부승인
공공은행	20	정부승인
증권인프라사, 보험, 연금	49	정부승인
전력거래	49	정부승인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정부는 격년 주기로 지역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도 30% 현지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외국인 자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지 조달 구매 제도를 완화시켰다.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 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여지침(Preferent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

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달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달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해지 - 2천만 달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달러 이상 7억5천만 달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자금사용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p>※ 자금 사용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거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을 적용하였다가, 2019년 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인하, 신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4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은 배당금(dividend)에 대해 기본세율 기준 15%의 배당 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로 실질 법인세부담(기본세율 기준)이 45%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실질법인세 부담 40%)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2001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한 이후 외투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어, 2012/20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가격 조정액은 1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다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년 11월 1일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 · 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 2019년 11월 인도 정부는 복잡했던 44개의 노동 연방법을 ‘Labour Code on Industrial Relations Bill 2019’로 개편하여 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개편된 노동법은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연금, 근로조건 등 4개 분야로 통합·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 시 해고로 간주하지 않고, 100명 이상의 근로 기업에서 해고 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감축 인력의 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제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고용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였다.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각각 123,416명, 142,383명 등 총 265,799명, 2018년에는 각각 119,791명, 150,457명 등 총 270,248명 등 급속도로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등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3월부터 E-FRRO를 시행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1년씩만 허가하고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으나, 인도 정부는 최대 5년 체류규정을 개정하여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최초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는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최초 2년간은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한화 기준 1억6천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비자, 연구비자, 사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불허하고 출국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2017년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은 뉴델리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KEB 하나은행은 2015년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데 이어, 2019년 4월 그루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KB 국민은행도 2019년 2월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농협,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년 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19년 7월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의 100% FDI 허용하였다.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 26건이며 태양광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1건으로, 2016년 11월 23일부로 2년 6개월간 적용되었던 열연후판(코일제외)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2019년 6월 22일 종료되었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양국은 2018년 7월 정상 순방 계기로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의 정례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연례적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1차 협력회의, 2019년 9월 2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2016년 158억 달러, 2017년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 기록하고 있다. 양국은 낮은 자유화율, 제한적 양허품목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대한 개정협상이 2016년 6월 이래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정상방문 시 양국이 조기 타결에 합의하였다.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 시장에서 화학, 철강 등 대인도 주력품목의 양허율이 확대된다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6년 동안 양국간 경제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018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6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 되었다. 양국 경제 협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경제·산업·교통·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2022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상호 교역순위는 201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역 현황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49억 달러(수출 66억불, 수입 83억불)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회복세로 반전하여 180억 달러(수출 84억불, 수입 96억불)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수출 88억불,

수입 112억불)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6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다.

2019년 상반기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39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으며, 수입은 47.3억 달러로 10.1% 증가,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휘발유(8.8억불), 합성수지(2.7억불), 직접회로반도체(2.2억불), 편직물(2억불), 경유(1.4억불), 열연강판(1.4억불), 합성고무(1.2억불), 냉연강판(1.1억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9.2억불), 천연가스(4.5억불), 기타금속광물(2.1억불), 신발(1.5억불), 냉연강판(1.5억불), 강반제품(1.4억불), 직물제의류(1.4억불), 원유(1.3억불), 식물성유지(1.3억불), 편직제의류(1.3억불) 등이다.

▶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반기
수 출	13,955 (2.9)	11,568 (△17.1)	11,417 (△1.3)	7,872 (△30.7)	6,603 (△16.1)	8,404 (27.2)	8,833 (5.1)	3,926 (△13.0)
수 입	15,676 (△8.9)	13,190 (△15.9)	12,271 (△7.0)	8,850 (△27.8)	8,281 (△6.4)	9,571 (15.5)	11,161 (16.7)	4,732 (△11.2)
무역수지	△1,721	△1,608	△854	△978	△1,678	△1,167	△2,328	△806
총교역액	29,631	24,744	23,688	16,722	14,884	17,974	19,994	8,658

자료: 무역협회

투자 현황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 10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2018년 누계, 신고기준)이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세 번째 투자 대상국(1위: 베트남, 2위: 싱가포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제6위 투자국(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18년 기준)이다. 2019년 6월까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161억 달러(수출입은행, 누계, 신고기준)로, 2018년에는 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연간 생산 25만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 (15억 5천만 달러)하기로 발표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차 진출과 함께 우리 기업의 인니 진출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년 10월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인니 정부는 투자, 무역, 노동 관련 약 80개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 제정 추진 등의 개혁을 통해 투자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도모할 예정인 바, 관련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더욱 활발한 투자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활발한 해외 투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에 그친 4.8%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2016년 5.02%, 2017년 5.1%, 2018년 5.2%, 2019년 5.0% 예상(IMF)),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여 지속적인 점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8년 대외 경제 불안과 무역긴장의 고조, 미국 금리인상,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루피아/달러 환율이 급등(18년 초 13,000 수준에서 18년 10월 15,000 돌파)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9년 들어 14,000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니 중앙은행은 세계경제의 조정 국면 속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조치를 취하였다.(18.11월 6.00% → 19.10월 5.00%)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GDP	명목(억 달러)	8,607	9,324	10,154	10,225	세계 16위(IMF, 2018)
	1인당(달러)	3,369	3,604	3,885	3,871	
경제성장률(%)		4.8	5.02	5.1	5.2	2019년 5.0% 예상
실업률(%)		6.2	5.6	5.4	5.3	
물가상승률(%)		6.4	3.53	3.8	3.2	
중앙은행 기준금리(%)		7.50	4.75	4.25	6	역레포금리
외환보유고(억 달러)		1,059	1,164	1,302	1,207	1천억 달러 유지 목표
달러당 환율		13,864	13,473	13,555	14,481	
GDP 대비 재정적자(%)		2.60	2.49	2.51	1.75	재정 건전한 편 (3.0%유지조항)

자료: IMF, Bank Indonesia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6차례 경제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 추진하고 있다. 경제 개혁패키지의 핵심은 ① 예측가능성 증가(최저임금 산정식 도입, 규제완화 및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증가), ② 시간·비용 절감(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인하, 일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 감면, 물류비용 감소 노력 등), ③ 시장개방(주요 업종(영화, 제약, 의료, 전자상거래, 관광 등 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에 대한 100% 개방 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 제1차~16차 경제개혁 패키지 주요 내용

No.	발표일	주요 내용
1차	2015년 9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기업 경영 확실성 및 법적 분쟁해결력 강화 ※ 1차 때는 경제개혁 3대 정책방향을 중점 발표
2차	2015년 9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의 이자소득세 감면 ■ 산업용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
3차	2015년 10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 산업의 에너지 가격 인하
4차	2015년 10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산정식 도입 ■ 정부보조 용자 및 수출금융 지원

No.	발표일	주요 내용
5차	2015년 10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재평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부동산 투자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이슬람 은행 설립시 인허가 신속화
6차	2015년 11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시 세금 인센티브 지원
7차	2015년 12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국영 지정지역에서의 노점상 무료임차 지원 ■ 노동집약 산업의 노동자 소득세 면제
8차	2015년 12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부품 21개 부문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민간사업자에 의한 원유개발 인센티브 제공 ■ 토지이용계획의 일목요연화
9차	2016년 1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물류서비스의 단일 결제시스템화 ■ 국가 단일 전산시스템 운영
10차	2016년 2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35개 부문 완화
11차	2016년 3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대출 지원 ■ 제약산업 로드맵 제시 ■ 지역 부동산 투자신탁 취득자산의 세율 완화
12차	2016년 4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109위⇒40위권 진입 목표 ■ 10개 평가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13차	2016년 8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 인허가 33개 → 11개, 절차기간 981일→44일
14차	2016년 11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mmerce 및 디지털 시장 관련 규제 완화
15차	2017년 6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스템 개선 및 물류 경쟁력 강화 ■ 물류 원활화를 위한 교역 행정 간소화 ■ 운송업 역할 및 규모 확대
16차	2017년 8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허가 관련 절차 및 비용 간소화 ■ 정부기관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16차 추가	2018년 11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외자유지를 위해 부여하던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조정 ■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 개정 ■ 천연자원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인니 금융시스템내 예치 의무 부과 * 19.11월 현재 총칙규정 개정 등 세부 내용 논의 지속중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년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유도유노 전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 온 보호주의적 경향³⁵⁾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등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프라 확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2013~14년에 이어 2018년 3분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외환확보를 위한 수입억제정책 등 보호주의적 색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루피아화 환율은 미국 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등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약세인 15,000Rp/\$를 상회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2018년 들어 5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정책, 실물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캠페인³⁵⁾, 전방위적인 수입수요 감축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8년 말부터 환율이 14,000대로 안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루피아화 환율은 13,000후반~14,000초반대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147개 소비재 수입에 부과하던 원천징수 소득세율(소득세법 제22조 : 재화수입 등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연말에 공제)을 인상(18.9.13일 발효)하였다. 통관시점에 관세 외에 추가 현금부담을 유발하고, 환급대상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사치품(210개)은 기존 7.5%에서 10%로, 국산대체 가능 일반소비재(218개)는 2.5%에서 10%로, 기타 소비재(719개)는 2.5%에서 7.5%로 인상하는 재무부령 No.110/PMK.010/2018을 발표하였다.

35)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2014년 1월,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07/2012)」이 '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2014년 2월)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36) 수출대금 국내은행 보관에 세제혜택 검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세 감면검토, 유력기업인의 대규모 환전 홍보, 경제단체 수출대금 국내유지 서약 등

둘째, 정부 관제자가 물건 조개기 통관에 따른 탈세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전자상거래 면세범위를 당초 100\$에서 75\$로 축소하였다.

셋째,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주요 발전사업이 수입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융약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을 선언('18.9.6)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인프라 계획(35GW 신설) 중 약 15.2GW(약 250억\$)를 차지하는 물량이 당초 '19년 상업 운전 개시를 '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넷째, 2018년 9월 1일자로 광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와 철도, 선박 등의 교통수단에 BD20(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 정부의 실험 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B30(바이오디젤 3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Local Contents 상향 압력을 행사 중이다. 즉, 정부조달에 관한 TKDN규정(대통령령 No.16/2018)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총 금액의 25% 이상을 자국산으로 사용할 것을 압박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카르타-수라바야 철도와 파툼 반항구 개발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 주요 발전사업에 대한 Local Contents 제고 요청이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기기(4G스마트폰)의 TKDN에 이어 디지털송수신기(DTV)에 대한 TKDN도입 초안을 발표(2018년 7월말) 하였으며, 언론 등에서 여타분야에도 TKDN을 도입·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
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유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과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윈스탑
서비스센터를 2015년 1월 구축하고 빠르고 간단하며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2016년 9월 새로운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정책의
3대 정책방향은 1)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료주의 철폐, 법 집행
강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 2)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3) 부동산
부문 투자 촉진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되는 실물
경제의 회복, 국내산업의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16년 5월에 개정된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신규·추가 개방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투자진출 과정뿐 아니라 전 기업의 사업등록 및 허가 사항을 OSS system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투자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제16차 경제개혁패키지(추가) 발표를 통해 54개 세부 산업분류에 대한 조건부 개방(중소기업 유보 또는 합작조건)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한 총칙 규정 개정 등 세부 사항이 아직까지 논의 중인 바, 이와 관련한 동향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년 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되었고 11월에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CEPA 체결을 통해 일부 업종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개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6억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 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도 주춤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기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293.1억 달러와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와 7.1% 감소했다.

2019년 10월 조코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이와 관련한 옴니버스 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2015년에 4.8%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5.02%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7년 5.1%, 2018년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에는 미중무역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도 다소 하락하여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풍부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6,416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세계은행은 2017년 12월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20% 정도가 중산층에 속하며, 45%는 더 이상 빈곤하거나 빈곤에 취약하지 않은 aspiring class 라고 하였다. 한편,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7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산층 성장 및 이동통신 보급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자 상거래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95억 4천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간 11.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3년에는 총 163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부 핵심조직인 해양조정부 업무에 투자 기능을 추가하고, 창조경제청을 관광·창의경제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의 경제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시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차원의 규제 및 행정 간소화, 고용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 제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이니셔티브(Making Indonesia 4.0)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의 경착륙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성상 루피화의 변동에 따른 환율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

(2) 높은 고용조정 부담 및 지속적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근로계약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각각 지급, 근속기간 및 해지 사유에 따라 중복 가산지급 등 (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지속적 인상 불가피

(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2011년 10.3%, 2012년 18.5%, 2013년 44%, 2014년 17.44%, 2015년 12.1%, 2016년 11.5%, 2017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 잠정)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이다.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투자 인·허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한다. 또한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에도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 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투자법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터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신규 투자를 하는 법인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무기 기초 화학 산업, 농업·플랜테이션·산림작물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제약 원재료 산업, 반도체 및 컴퓨터 제조산업, 보건장비 부품 제조산업,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차량 제조산업, 로봇틱 부품 제조산업, 선박 제조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기차 제조산업, 발전소 기계 산업, 경제 인프라스트럭처, 농업·플랜테이션·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데이터 가공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등 18개
 - 최소투자금액 1천억 루피아 이상일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20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면제
 - 투자금액 1천억~5천억 루피아 : 5년간 50%
 - 투자금액 5천억~1조 루피아 : 5년간 100%
 - 투자금액 1조~5조 루피아 : 7년간 100%
 - 투자금액 5조~15조 루피아 : 10년간 100%
 - 투자금액 15조~ 30조 루피아 : 15년간 100%
 - 투자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100%
- (절차) OSS 전자인허가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재무부 장관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면제 결정시부터 상업 생산시까지 투자 실현에 관한 보고서 및 상업 생산 시부터 면제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 정제, 천연가스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국세청) 이관(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 (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증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 (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2016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44 2016년」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2014년 발표된 「대통령령 No.39 2014년」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2016년 리스트는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쉽도록 수정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된 투자제한리스트는 투자금지업종(20개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145개 업종),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350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 서비스 부문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부문들이 주로 개방되었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화산업은 부문별 대폭 개방이 주목을 받았다.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보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분야가 기존에는 자국 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되었다. 또한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등에도 외국인 지분 취득률이 67% 까지 상향되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국내기업에만 투자가 허용됐던 것에 비해 100% 지분 취득이 가능(단,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이며, 1천억 루피아 미만시 49%로 제한)하게 되었다. 통신 콘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메시지, 콜센터, 통신망 서비스 등) 부문도 49%에서 67%로 확대되었고,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도 100% 개방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허용 지분범위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제한사항 및 투자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투자제한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것으로, 성장의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

한편 2018년 11월에는 제16차 경제개혁패키지(추가) 발표를 통해 54개 세부 산업분류에 대한 조건부 개방(중소기업 유보 또는 합작 조건)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총칙규정 등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2019년 11월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주요 대외기관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 참고 :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인도네시아 경쟁력 평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MD	42위(↓ 5) (총61개국)	48위(↓ 4) (총61개국)	42위(↑ 6) (총63개국)	43위(↓ 1) (총63개국)	32위(↑ 11) (총63개국)
WEF	37위(↓ 3) (총140개국)	41위(↓ 4) (총138개국)	36위(↑ 5) (총137개국)	45위(↑ 9) (총140개국)	50위(↓ 5) (총141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09위(↑ 11) (총186개국)	91위(↑ 18) (총190개국)	72위(↑ 19) (총190개국)	73위(↓ 1) (총190개국)	73위(-) (총190개국)

※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7년말 기준 16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45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1985년부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동 법령은 1997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2001년 산림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의 공동선언으로 다시 규제가 되었으며, 2012년 무역부는 동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 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립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립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립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립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9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2014년 대선공약에 이어 재등장해 당분간 원목수출금지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m³)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m³)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산림부장관, 무역부 장관 공동선언)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 2012년 원목수출 금지 법안 제정(무역부)

또한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 (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8년 팜 농장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향후 3년간 신규 팜농장을 위한 산림전용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지를 재평가 하고 있으며, 2019년 66백만ha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영구개발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Permatan/ OT.140/6/2012」)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 · 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과 병해충청정지역(PFA : Pest Free Area)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탄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네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중 충청남도 지역이 PFA를 획득하여,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충청남도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판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한·아세안 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을 맺고 있다.

당초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나, 여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다각적 FTA 협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호주와의 CEPA가 체결됐으며, 2019년 11월 한국과의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년 2월 7차 협상이후 중단되었으나, 2019년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각각 93.0%, 97.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19년 11월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동의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일반 품목군(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일반 품목으로 양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HS 8단위 기준 798개 품목)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민감품목(HS 6단위 308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로 감축되었고, 전체 품목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에 따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싱글윈도우 홈페이지(<http://eservice.insw.go.id/>)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ASEAN FTA

2004년 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하였다.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ASEAN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오랜 협상 끝에 원산지 규정 간소화, 무역원활화 조치, 다자 경제·기술 협력 강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의 Industry 4.0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조산업 개발 센터(New MIDEK)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맥주 신고가격에 60% 관세, 와인 및 과일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아세안 HS 분류표(AHTN)를 인도네시아도 201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번호는 관세율 적용 뿐 아니라 수출입제한대상 여부 결정시에도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 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 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세액 추징 시 행정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 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철광·니켈 등의 광석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BPOM, SNI,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2019년 11월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득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한, 2016년 12월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PER/12/2016, 2017년 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텐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

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 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1월 기준 강제인증 품목은 총 205개이다.

한편,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선스 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 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19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 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3건이며, 증발기와 직물, 과당시럽에 대한 세이프가드 3건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반덤핑 4건 중, 냉연코일과 PET에 대한 반덤핑 건은 덤핑판정 후 실제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3건(조사중 3건))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분류	비고
과당시럽 (fructose syrup)	1702.60	세이프 가드	'19.10.28		농산물	
직물 (Fabrics)	5208/5209/5210 5211/5212/8407	세이프 가드	'19.9.18		섬유 의류	
증발기 (Roll Bond Evaporators)	8415.90	세이프 가드	'19.6.12		기계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	7607.11/19	세이프 가드	'18.10.9	'18.10.25	철강 금속	-세이프가드 관세율 : 1년차 6%, 2년차 4%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Ceramic flags and paving)	6907.21/22/23	세이프 가드	'18.3.29	'18.6.22	유리 도자기	-세이프가드 관세율 : 1년차 23% 2년차 21% 3년차 1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	반덤핑	'16.8.22	'18.2.19	화학	- 2018.2 : 반덤핑 판정 (관세부과 미실행) (2020년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분류	비고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01	'16.11.24	화학	- 제소업체 : PT Kaltim Nitrate Indonesia - 대상국 :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 2016.11.24 최종판정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 가드	'14.2.12 '17.8.18 (재심)	'15.1.21 '18.1.4 (연장결정)	철강 금속	- 연장 기간: 2018.1.21~2021.1.20 . 1년차: 17.75% . 2년차: 17.50% . 3년차: 17.25%
석도강판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2.6.25 '17.10.27 (재심)	'14.1.15 '18.12.31 (연장결정)	철강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 실업 4.4%, 기타 7.9% - 연장기간 : 2019.2.14.~2024.2.14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7209.16/17/18/19 7209.26/27/28/90 7211.23/29/90	반덤핑	'11.06.24 '15.9.10 (재심)	'13.03.19 '16.2.1 (재심결과)	철강 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재심결과 발표 후, 관세부와 미실행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 (약 3천6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3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3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다.

▶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50,000,000	5
5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0 -	30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9년 기준 네번째로 큰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14년 81만5천 명, 2015년 83만3천 명, 2016년 80만4천 명, 2017년 81만6천 명, 2018년 80.5천 명, 2019년 88만 6천 명이며(2014~2019년 연간 연평균 1.7% 증가), 2019년 탑승률은 평균 80.2%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교역규모 증가세(2015년 167억 달러, 2016년 149억 달러, 2017년 180억 달러, 2018년 200억 달러)와 함께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한·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급	1,152,950	1,143,707	1,059,372	1,025,914	1,038,478	1,104,472
수송	814,812	833,027	803,395	816,395	805,348	885,526
L/F	70.7%	72.8%	75.8%	79.6%	77.6%	80.2%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7% : 33.3%)

▶ 한·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 → 인도네시아	19,888	17,993	19,949	19,811	20,280	17,350
증감율	7.3%	-9.5%	10.9%	-0.7%	2.4%	-14.4%
인도네시아 → 한국	9,520	8,893	9,914	10,196	10,380	7,381
증감율	14.9%	-6.6%	11.5%	2.8%	1.8%	-28.9%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8.6% : 31.4%)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1982년 11월 10일 가서명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989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7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995년 11월 17일, 2000년 5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7년 3월 28일에 이어 2012년 6월 28일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PT.Indonesia AirAsia Extra, Lion mentari Airlines, Sriwijaya Air가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 한·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20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포지트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7회를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2000년 5월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2000년 5월 AM)하다. 항공 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14일~15일 회담에서 신설된 바 있다.

▶ 운항 현황('19년 동계시즌)

국적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18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서울/덴파사르/서울(주9회) (貨) 서울/자카르타/페낭/서울 (주2회)
	아시아나항공 (주7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인도네시아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주14회)	(客) 자카르타/서울/자카르타(주7회) 덴파사르/서울/덴파사르(주7회)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하다.

(2) 토지제도와 개발사업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미발달로 토지와 관련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상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60년에 제 정된 기본 농지법 (이하 “기본농지법”)이다. 기본농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원으로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개간권, 벌목권 등 7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토지가 아직 상당히 있고, 이들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기본농지법상의 위 7개의 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될 수 없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사업부지에 이러한 관습법적 미등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국가 및 인도네시아 자연인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물론이고 순수 내국인투자법인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의 권원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4가지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인 건축권과 사용권이 중요하다.

건축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투자 법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농지법상 건축권은 최초 30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후 20년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권 보유자는 정부에 새로운 건축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및 상속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보권은 건축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권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나 토지상의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인 이외에도 외국인 개인 및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도 보유할 수 있다. 기본농지법은, 사용권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법은 모두 70년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법을 통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70년까지라고 이해된다. 사용권 역시 건축권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3)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제도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할 때 요구되는 개별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인허가의 종류 나 절차는 해당 지역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인허가는 아래와 같다.

- 위치허가 (Izin Lokasi) :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농업부 규정에 따른 위 치허가(Izin Lokasi)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위치허가는 해당 토지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이용된다는 증빙으로서 이후 토지 의 양도, 임대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항상 구비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허가(Izin Penggunaan Pemanfaatan Tanah) : 위치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토지의 목적 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 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 주택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의 지역구획과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 다. 사전 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회사 설립서류인 영업허가, 회사등록증, 납세자번호와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구획과에 사전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지역의 기본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사전 심의는 지역구획과 내의 용도지역, 도로, 건축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전심의 승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 환경영향허가 및 교통영향허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 를 마치면 본 허가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허가와 교통영향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및 유지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AMDAL 또는 UKL/UP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 향평가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하여 해당 지역 관청의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앞서 기술 한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납입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할 토지가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 보유자와의 토지이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종교용, 사업용, 사회문화용, 기타 특수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임시주거용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이후 준공시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준공허가 후 준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을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T))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를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 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 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5)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발전 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 (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 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 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 토지사용권자, 미이전전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 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 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마)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 (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ICT 시장규모는 약 350억불 규모로 아시아 국가들 중 중간정도로 평가되나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ICT 성장률은 2011년 10.02%, 2012년 12.28%, 2013년 10.39%, 2014년 10.02%, 2015년 10.06% 수준이나, ICT분야가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분기 기준 3.8% 수준으로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은 큰 국가로도 볼 수 있다.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발전지수(IDI)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111위를 기록하였다.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연령층과 중산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ICT

산업 시장이지만, 빈부격차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7년 기준 100명당 4.2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100명당 173.8명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57.3% 수준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2.3% 수준이고, 유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2명, 무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95.6명 수준이다. 유선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무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ITU, 2017) 스마트폰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 4G LTE 서비스 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년 3G 서비스 개시 이후 2015년 하반기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도권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2017년 2분기 현재 55,701개의 4G 기지국을 설치하였으며, 3분기 현재 약 83,218개의 마을 중 45,811개의 마을에서 4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통신정보부는 밝히고 있다.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나,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Telkom, Indosat, XL Axiata 등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5G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의 정보화진흥원(NIA), KT, 삼성과 인도네시아 텔콤셀 등이 함께 배드민턴, 여자 농구, 골프 등 경기와 연계한 5G 체험관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건), e-Edu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8월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전자상거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시장은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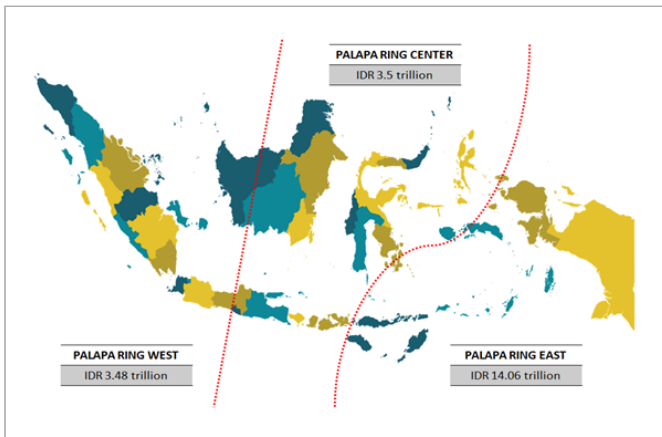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3) 통신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 구축을 위해 총 33개 주 440개 시·군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통신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서 서부, 중부, 동부 패키지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은 팔라빠 링(Palapa Ring) 구축(서부 팔라빠링 : 1.2조 루피아/중부 팔라빠 링 : 1조 루피아/동부 팔라빠 링 : 5.4조 루피아)이 완료돼, 개관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0년에는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66억 루피아)가 지속 추진될 것이다.

▶ Palapa Ring 프로젝트 광케이블 추진 현황(2019년)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외곽이나 지체된 지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전국 83,218개의 마을 중 해당 지역에 속한 마을은 22,521개이며, 그 중 통신이 전혀 되지 않거나 신호가 미약한 7,3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에는 393개 마을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하였다. USO 예산은 통신사업자 수익의 1.25% 기부로 충당이 되고 있다.

2014년 10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광대역통신망의 설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담은 2014~2019 브로드밴드 계획(Broadband Plan 2014-2019, IB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지역은 30% 인구에 대한 유선 20Mbps, 전체에 대한 무선 1Mbps, 농촌 지역은 6% 인구에 대한 유선 10Mbps, 52% 인구에 대한 무선 1Mbps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alapa Ring, Joint Pipes와 같은 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 USO펀드 개혁 및 ICT 인적자원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4) 외국인 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6년 개정된 Negative List(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와 운영
- ② 국내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 ③ 국내 방송사 독점 업종 - 공영 TV 및 라디오(국내 방송사 독점)
- ④ 국내자본 100% 업종 - 통신망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
- ⑤ 외국인 투자비율 최대 67% 허용 업종 - 유·무선·위성통신,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운영, 콘텐츠, 콜센터 및 기타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공급, 데이터통신시스템,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NAP) 및 기타 인터넷서비스
- ⑥ 외국인 투자비율 최대 49% 허용 업종 - 우편(POS), 전자상거래공급자 (1,000억 루피아 미만/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가격비교, 온라인분류광고)
- ⑦ 사업 확장시만 최대 20% 허용 업종 - 사설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

또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외국자본 협력 가능)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년 10월 시행)」에 따라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도록 되어(Data Localization), 관련 업종 투자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 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 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중위험(Yellow), 고위험(Red) 등 4개의 채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 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중위험 채널은 세관의 서류심사,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 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하는 보세지역(보세공장, Kawasan Berika) 제도와 수출용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보세공장, KB)의 경우 내수판매를 전년도 수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활용하며, KITE는 보세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 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
- 노동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tional)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종교상여금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상여금(르바란 명절 상여금 / THR, *Tungangan Hari Raya*)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규계약은 물론 비정규계약을 포함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종교축일 7일 이전에 지급

해야 한다. 종교상여금 지급 기준은 12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1개월분 급여(기본급+고정수당)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기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도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텍(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됨으로써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대 사회보험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 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항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 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어 2015년 10월 23일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 2014~2019년 주요 지역 월 최저임금

(단위: 월, Rp)

주 또는 시 · 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카르타수도특별주	2,700,000	3,100,000	3,355,750	3,648,035	3,940,972
서부자바주 반둥군	2,001,195	2,275,715	2,463,461	2,678,029	2,898,744
서부자바주 반둥시	2,310,000	2,626,940	2,843,662	3,091,346	3,339,580
서부자바주 버카시시	2,984,000	3,327,160	3,601,650	3,915,354	4,229,756
서부자바주 버카시군	2,925,000	3,261,375	3,530,438	3,837,940	4,146,126
서부자바주 보고르시	2,711,000	3,022,765	3,272,143	3,557,147	3,842,785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2,655,000	2,960,325	3,204,551	3,483,667	3,763,405
서부자바주 까라왕군	2,987,000	3,330,505	3,605,272	3,919,291	4,234,010
서부자바주 수까부미시	1,645,000	1,834,175	1,985,494	2,158,431	2,331,752
서부자바주 수까부미군	1,969,000	2,195,435	2,376,558	2,583,557	2,791,016
서부자바주 수방군	1,928,000	2,149,720	2,327,072	2,529,760	2,732,899
반튼주 땅그랑시	2,710,000	3,043,950	3,295,075	3,582,077	3,869,717
반튼주 땅그랑군	2,710,000	3,021,650	3,270,936	3,555,835	3,841,368
반튼주 찰레곤시	2,760,590	3,078,057	3,331,997	3,622,215	3,913,078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	2,710,000	3,045,000	3,296,212	3,583,313	3,871,052
중부자바주 스마랑시	1,600,000	1,909,000	2,125,000	2,310,087	2,498,587
중부자바주 살라따가시	1,287,000	1,450,953	1,596,000	1,735,930	1,875,325
중부자바주 즈빠라군	1,150,000	1,350,000	1,600,000	1,739,360	1,879,031

외국인 근로자법 개정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 10호에 대한 시행세칙인 노동부 장관 칙령 2019년 제 228호가 발표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종사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외국인은 18가지의 업종에서 2,000개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직책은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발간한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기준이다.

▶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사업 종류와 직책의 수

업종	외국인 가능 직책 수
(1) 건설	181
(2) 부동산	6
(3) 교육	780
(4) 제조, 가공산업	70
(5) 수처리, 폐수처리, 재활용, 복원 사업	19
(6)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57
(7) 물류 및 창고업	51
(8) 요식업	12
(9) 농림어업	10
(10) 대여, 인력 관련, 여행사, 기타 지원 서비스	3
(11) 금융 및 보험 산업	32
(12)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4
(13) 정보통신	244
(14) 광산업	592
(15) 도매업, 소매무역, 차량 유지보수	46
(16) 전력, 가스, 지열, 공기 냉각	40
(17) 기타 서비스	8
(18) 전문적, 과학, 기술 활동	20

자료 : Asia Briefing(2019.10)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통관 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9년 말 기준 205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9,589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2)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 스 : +(6221) 5747045
-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 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3)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4)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2015년 7월 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 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열티 및 기타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또는 사후 70년), 산업디자인권(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어 진다. 그 외에는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태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다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격상시키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재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표권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5호(UU Nomor 15 Tahun 2001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서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3영업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 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재심사 실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위원회(Appeal Commiss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이후까지 연장 신청 가능

(3) 상표권의 등록취소

- 상표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등록 출원 시 신청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4)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특허권

인도네시아 「특허 관련 2016년 법 13호 (UU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에서 특허권을 특정기간 동안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한 가지 발명에 대해 한 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할 필요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항변서 제출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3)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

저작권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또는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된다.

(1)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물 등록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을 위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
- 형식심사 요건 누락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등록 증명서 발급

(2) 저작권 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3) 효력

- 「저작권에 관한 2014년 법률 제 28호(UU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거하여,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WAYANG 연극, 노래, 작곡, 건 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음
- 초상화, 영화, 비디오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산업디자인권

「디자인에 관한 2000년 법률 제 31호(UU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미적 인상을 주는 창작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
-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심사관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카자흐스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인구(만 명)			1,730	1,760	1,780	1,810	1,830	1,860
G D P	총액 (억 텡게)		39.1	39.7	45.7	51.7	60.2	64.0
	(억 달러)		2,185	1,793	1,337	1,587	1,747	1,669
	성장률		4.3	1.0	0.9	3.9	4.1	4.1
	1인당 GDP		12,710	10,440	7,660	8,970	9,400	9,140
인플레이션(%)			7.3	13.8	8.5	7.0	5.3	5.9
평균환율(텡게/달러)			179.19	221.73	342.16	326.00	344.71	-
대출금리(%)			10.9	13.2	15.3	14.2	12.5	12.8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120,755	76,523	62,113	78,102	94,769	-
	수출		79,460	45,955	36,736	48,503	61,111	-
	수입		41,295	30,567	25,376	29,599	33,658	-
	무역수지		38,165	15,388	11,360	18,904	27,453	-
총외채(백만 달러)			157,695	153,398	163,717	158,917	156,921	161,271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23,809	15,368	21,367	20,960	24,263	-
실업률			5.0	5.0	5.0	4.9	4.9	4.7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29,209 (102,396)	27,871 (91,263)	29,710 (90,928)	30,997 (89,331)	30,927 (88,915)	28,660 (89,117) *2019.11월 기준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2019.12월, Country Report), IMF *f : 2019년 전망치

카자흐스탄은 2007년 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9년 1.2%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3년 5.9% 등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4년부터 국제 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유가 회복, 카사간 유전³⁷⁾의 생산 재개 등으로 2017년에는 성장률이 3.9%에 도달했다. 2018년에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에 따른 텡게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제유가 및 카자흐스탄 석유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에도 카자흐 정부의 자원개발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과 카자흐 석유 생산량 지속 증가 등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년 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8월 기존 관리변동 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이후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텡게 환율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4월, 8월)에 따른 루블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텡게화는 18년 9월 기준 380.9 텡게까지 가치가 추락³⁸⁾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 1차 「2010~2014 산업혁신개발계획」에 이어 제2차 「2015~2019 산업혁신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한 지속적

37)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해상유전으로 가채 매장량이 1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임 (2013년 10월 생산 중단 후 2016년 9월부터 생산 재개)

38) 2019년 12월 20일 기준 텡게화환율은 384.46텡게이다.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2014년부터 자유가 기초,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³⁹⁾,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6월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기와 같은 기존 초대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어 2015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 비즈니스, 투자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지속 증가해 2013년에는 13.2억 달러, 2014년에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2015년 7.6억 달러, 2016년 6.4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교역량이 다시 반등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입이 전년 대비 249% 증가, 교역량은 135% 증가하여 15.3억 달러⁴⁰⁾, 2018년은 2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39) 2018.10.5.일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대국민 연설(18.10.5)을 통해 동 프로그램의 이행기간을 2025년 까지 연장했다.

40) 원유(925.4%), 우라늄(284.9%) 등 에너지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기계, 승용차, 철구조물, 화장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우라늄, 합금철 등 원자재이다.

▶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억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1월)
교역규모	13.2 (10.8)	14.7 (10.9)	7.6 (-48.2)	6.5 (-14.5)	15.3 (135.7)	21.6 (41.1)	39.0
수출	10.7 (21.4)	9.1 (-14.8)	4.5 (-49.9)	3.6 (-19.9)	5.3 (46.1)	8.0 (50.9)	24.0
수입	2.5 (-19.2)	5.6 (185.3)	3.1 (-45.6)	2.9 (-6.5)	10.0 (249.9)	13.6 (36)	15.0
무역수지	8.3	3.5	1.5	0.8	-4.7	-5.6	9.0

자료: KOTIS, WTA, KITA.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9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실투자금액 기준)은 약 26.2억불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LG전자 현지 생산 공장, 롯데제과의 라햇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SK건설 알마티 민자도로 건설 등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 되어 부과되는 경우 대부분이며, 평균관세율은 약 10.6%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⁴¹⁾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통관신고는 상품 반입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2009년 11월 27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기관과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다.

41)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한편, 이들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켜 단일시장 구축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도 추가로 가입하여 2018년 10월 현재 EAEU 회원국은 총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이다. 회원국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⁴²⁾ 2018년 1월부터는 EAEU 세관법이 발효되었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2011년 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42) 해당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준수할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신관세법에서는 AEO 공인 취득 조건을 개선하였다. 1종 AEO 공인은 선보증금 1백만 유로를 납입하여야 하며, 1종 공인 취득 후 6년 동안 규정을 준수할 경우 예치금은 15만 유로까지 낮아진다. 2종 AEO 공인은 보증금 조건을 개발 중이며 재무제표 안정성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AEO 공인 취득 대상을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또한 EAEU 가입 회원국은 AEO 상호인정이 가능해진다.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상품이 충분한 처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생산, 또는 충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의 처리결과로 인해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 상품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화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년~2002년 기간 중에 상품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소재 (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 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에는 동일사례가 없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다.⁴³⁾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충,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43)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lry Loquo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o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주류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인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는 1,000개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카자흐스탄 인증은 1993년 제정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소련 시절의 강제인증인 GOST-K(Gosstandart of Kazakhstan)가 활용되었으나, 2015년 EAEU 출범에 따라 현재는 동 인증 대신 EAC라는 EAEU의 단일 인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GOST-K 증명서는 만료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만료일 이후에는 EAC 인증만이 인정된다. 다만,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새로운 ‘EAC’ 인증은 EAEU 회원국내에서 통일 적용되고 있다. 인증서는 러시아어로 발급되며, 1년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본 인증서 만료전 최소 2개월 이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CIS 외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EAC 인증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AC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타 EAEU 회원국에서 발행된 것도 유효하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EAEU 회원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공급 계약서, 송장, 위탁판매증서, 화물 관세 증명서, 본 제품 인증서, 기술 증명서, 사업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에는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나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의료기기 등록인증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EAC 인증 대행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인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카자흐스탄 인증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구분된다. 시험소·인증기관은 NACE(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다. 인증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등의 민간기업이 존재한다.

-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아스타나지사(Astana Branch)

- 주소: 4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1506,1507)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0808, 221-9941, 221-9212
- 팩스: +7-727-228-565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 +7-727-262-1175
- 홈페이지 : www.ceska.kz
- 이메일 : info@ceska.kz

-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 +7-727-225-4631
- 홈페이지 : www.oskcs.kz
- 이메일 : info@oskcs.kz

-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274-9392

- 홈페이지 : www.intercert.kz
- 이메일 : talibayeva.g@standard.kz
- KazakhExpoAudit LLP
 - 전화 :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 certification.kz
 - 이메일 : info@certification.kz
-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 abc-cert.kz
 - 이메일 : info@abc-cert.kz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아스타나(Astana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알말린구 관할(Almalinsk District)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1393
- 팩스: +7-727-279-6577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Labelling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쏘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 전화 : +7-800-080-8010

- 홈페이지 : atameken.kz

환경관련 규제

에너지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1, 2, 3, 카테고리 4의 경우 10년이며, 4 카테고리의 경우 무제한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에너지부 지방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지방정부와 에너지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산 및 중국산과의 경쟁에 불리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입찰)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투자개발부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약 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2022년까지 정비할 나날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허법은 1992년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3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8년 6월에는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은 관련 전문 기관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배상(개정 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9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NIIP)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에 등록, 권한을 획득⁴⁴⁾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4)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된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 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물 (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진흥원(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 비율 상향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 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광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 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가 급락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외국계은행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년 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7년에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비율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 및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3월 동 지분 전부 매각 후 철수하였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 임차기간을 기존 10년 → 25년(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으로 2015년 11월 개정하였지만,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을 향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 가능성과 연계,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2016년 4월부터 각 지방 주요도시에서 벌어져, 2016년 8월 개정토지법 시행을 2021년 8월 까지 5년간 유예한 상태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2013년 6월 18일)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Kazakh Invest에서 “One-stop Shop”을 운영 중이며, 외교부, 공공행정반부패청, 투자개발부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 Kazakh Invest One-stop shop 담당번호 : +7 7172 620 620
-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관련 사이트(공공행정 및 부패청) : <http://kyzmet.gov.kz/en/kategorii/proekt-protecting-business-and-investments>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분야는 방송이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년 7월 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로 변경하였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는데,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2%(2019년 기준) 규모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가 침체하면서 자국 노동시장 보호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바,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2013년 경제활동인구의 1.2%에서 2014~16년 0.7%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노동사회 보호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경제활동인구의 4.2%로 증가시켰으며, 2018년, 2019년도 비중 역시 4.2%로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였다(2016년 4월 8일 협정 발효).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원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2,525달러)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9.5%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농지의 경우 0.50ha 이하 20달러/0.01ha, 0.50ha 이상 100달러/0.01ha, 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0.48~28.95달러/sq meter (1ha = 10,000 sq meter)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1-117MCI, 2019년 Monthly Caclulation Index(MCI) 2,525 탕계)
- 관세: 평균 10.6% (품목에 따라 다름)

의무 의료보험제도 도입

카자흐스탄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⁴⁵⁾ 의무 건강보험제도(Mandatory Health Insurance Scheme)를 2016년 7월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사회의료보험기금(Social Medical Insurance Fund)가 설치되며, 고용주와 고용인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의 2%를 납부해야하며, 2022년 3%로 인상된다. 고용인들은 2020년부터 급여의 1%를 납부(급여에서 차감), 2021년부터는 2%로 인상된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세(Social Tax) 세율을 2018년부터 당초 11%에서 9.5%로 인하하였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곡물 등이다.

45)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www.mz.gov.kz)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찰조사, 통관지원,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3(지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 전화: 02-391-8906, 02-379-7876(영사과)
- 팩스: 02-395-9766(영사과)
- 근무시간: 09:00~12:0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2014년 6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년 11월 발효되어 관광 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제한 없이 1회 입국 시 30일 무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체류예정인 경우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단기 90일 이내 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면제된다. 다만, 입국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텔예약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 운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누르술탄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시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탱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탱게화 환율은 2018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4월, 8월)에 따른 루블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탱게화는 2018년 9월 380.9 탱게까지 가치가 추락⁴⁶⁾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자유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 방어를 위해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최고 17%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후 환율 및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7년 기준금리는 10.25%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 9.25%까지 인하하였다. 현지은행의 2019년 10월 현재 예금금리는 평균 9.1%, 대출 금리는 평균 18.0%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 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록 카지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사 야기된 은행권의 부실

46) 2019년 12월 20일 기준 탱게화 환율은 384.46탱게이다.

채권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최소 자본금 상향 등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할릭 은행(Halyk Bank)의 카즈콤 은행(Kazkommertsbank) 인수 및 합병과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27개의 시중은행이 영업 중이며, 이중 외국계 은행은 11개이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융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 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BK)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외국계 은행 11개를 포함하여 27개가 영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년 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맹 공동 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년 4월 재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년 11월 22일) 및 서비스 부문(2011년 9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가입 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년 11월 30일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년 1월 관세동맹,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2017년 4월 EAEU 5개 회원국은 통합 관세법에 서명하였으며, EAEU 신관세법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존 회원국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 조건의 최대한 수용 등이다. 2018년에는 전자통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통관절차가 4시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 5월 EAEU-베트남간 FTA가 최초로 체결되었고, 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EAEU는 이란, 인도, 싱가포르, 이집트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과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현재 FTA 협상 개시를 협의 중이다.

캄보디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세계은행(WB)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2018년 기준 총 GDP가 237.2억 달러, 1인당 GNI가 1,477달러로 저소득국을 벗어나, 중저소득국에 진입하였다. 또한,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 및 외화 유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유화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망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놈펜-시하누크빌을 잇는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와 프놈펜 신공항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하누크항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설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 경제금융부는 2021-2023 캄보디아 복합운송 마스터플랜(Intermodal Transport Master Plan 2021-2030)을 2020년에 공표할 예정이며 캄보디아와 주변국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주요 물류·유통 거점에 대한 물류 센터와 허브 개설을 통해 물류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국가재정계획에서 인프라에 대한 건설 및 복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7.9% 증가한 14억불을 할당하였다.

▶ 캄보디아 투자 진출관련 주요지표

부패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61/180	2018년
기업환경	World Bank	138/190	2019년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98/129	2019년

캄보디아는 외국투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없으나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법적제도 미비와 선별적 실시 등이 투자가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의 법령(Prakas) 643호에 의거 기업은 캄보디아 공인회계기구(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ors)에 등록된 독립회계법인 으로부터 발급된 연례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기준 KHR 30억(미화 75만) 이상, 총자산 KHR 20억(미화 50만)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중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캄보디아 회계국(National Accounting Council)은 2010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도입하여 캄보디아 재무 보고기준(CIFRS)을 운영중에 있는데 금융기관의 경우는 동 제도를 2019년 까지 도입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주요 산업 및 정책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섬유(봉제, 신발, 가방), 관광, 농업, 건설 등이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2017년 153달러 : +9.3%, 2018년 170달러 : +11.1%, 2019년 182달러 : +7.1%, 2020년 190달러 : +4.4%)으로 기업의 생산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봉제업이 수출·고용 측면에서 큰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유럽 및 미국 등이 주요

수출지역이다. 고용면에서는 2차 산업 고용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무역특혜제도(Everything But Arms : EBA)가 적용되고 있는데 EU가 캄보디아 내 인권문제 등으로 동 제도 적용을 중단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봉제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등 주요지역에 외국 방문객(2018년 620만명: 전년대비 +10.7%)이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민간에서 앙코르와트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2016년부터 압사라(Apsara)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입장료를 약 50% 인상(1일권 \$20→\$37, 3일권 \$40→\$62, 일주일권 \$60→\$72)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앙코르와트의 외국인 방문자는 250만 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판매 역시 72% 증가한 1억 8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1회 연장 가능케 하거나, 인터넷 예약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에는 위챗(Wechat)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중국기업이 공항을 건축 중이다. 또한 캄보디아 최대 항만도시인 시하누크빌에는 30개 이상의 중국 카지노가 개업하면서 중국인 거주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대 중국관광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중국관광객 유입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농림어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2.0%이며, 캄보디아 농림수산물부(MAFF)는 쌀의 생산과 수출 촉진을 주요 목표로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4월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캄보디아 쌀 수출량은 1,300천톤 수준이며 중국의 캄보디아 쌀 수입 증가와 EU의 셰이프가드 적용은 쌀수출의 주요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8년 기준 3.2백만 헥타르에서 5.63백만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기시즌에 80%를 재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쌀생산은 기계화되었지만 관개수로 개발 미흡, 높은 물류 수송비용 등 인프라 기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쌀생산 과잉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부문은 캄보디아 주요 산업의 하나로 2012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는 64억달러(3,052건) 규모였으며, 2016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만 2018년 승인된 전체 건설 프로젝트는 52억 달러 규모(2,867건)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건설프로젝트의 절반이상이 중국자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를 중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각전략과 함께 「산업발전계획 2015~2025」를 발표하였다. 모든 투자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정한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백만달러 이상으로 적격투자심사(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6대 중점 분야(농산업·식품생산 및 가공·폐기물처리 제품 제조·관광 및 공예품·부품/장비 제조·IT연구)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9년 57.8(2018년 58.7)점을 기록하여 186개국중 105위(2018년 101위)로 하락하였는데, 무역자유, 정부신뢰도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37.4 ▲	정부 지출	85.9 ▼
경제 자유도	29.9 ▼	통화 자유	79.4 ▼
정부 신뢰	16.7 ▼	무역 자유	65.4 ▼
노동 자유	63.0 ▲	투자 자유	60.0
재정 건전성	89.1 ▼	금융 자유	50.0
법원 효율성	27.6 ▲	세금 부담	89.7 ▼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18 Index of Economic Freedom

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QIP를 득한 품목의 수입의 경우 1.4일, 다른 경우 3.4일로 단축되었으며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도 2018년 160국중 98위를 하였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중간가세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AEC 서명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 행정 등의 이유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 되었지만 최근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이 캄보디아 관세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하여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들이 해소를 해소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 하는 등 양국 간의 수입, 수출을 위한 정책상의 장벽들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기조가 예상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5%: 등유
- 10%: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음료
- 15%: 자동차용 디젤연료, kerosene
- 20%: 필터담배
- 25%: 윤활유, 시가
- 30%: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포도주
- 40%: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승용차(1,000cc 초과 3,000cc 이하)
- 65%: 승용차(3,0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경우 150~250cc의 경우 15%이며 그 이상은 25%이다. 차량은 캄보디아 전체 관세금액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통관이 엄격하고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 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차량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산 신차를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요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캄보디아 관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통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 제조연도에 상관없이 수입은 가능하나 2019년부터 2006연식을 최하연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한다. 이로 인해 40ft 컨테이너의 통관 스캐닝 비용은 32\$에서 16\$으로, 20ft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된다.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ft 컨테이너 1대당 터미널 핸들링 비용이 \$600~700 정도이다.

과거 수입통관 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 4월 30일부로 선적전 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인데 2017년 10월 반덤핑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준법 발효는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 전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2017년 10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 강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플라스틱 봉지를 의무적으로 유료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제 환경보호 기조와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목재 및 모래 수출도 금지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캄보디아의 쌀생산대비 수출감소로 쌀가격이 폭락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20백만달러를 조성하여 쌀가공업체들의 적극적인 농민이 생산한 쌀구매를 독려하였으나 그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자금을 쌀가공(정미 및 건조) 시설에 저리로 융자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전기구매 및 판매를 하는 Electricite du Cambodia, 프놈펜상수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Rural Development Bank, Green Trade Company(쌀 저장 및 유통), Phnom Penh Autonomous Port, Sihanoukville Autono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품품종보호법, 2014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을 가입하여 캄보디아 대표 농산물인 캄팟 지방(Kampot)의 후추와 두리안, 그리고 바탐방(Battambang)의 쌀 등을 등록하고, 2016년에는 국제공동특허(PCT), 2017년 헤이크협약(산업 디자인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WTO가 2012년 7월 1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미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EU, 한국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TO가입 및 ASEAN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제도강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인터넷을 통해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하였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것이다.

2014년 불법복제방지 위원회(The Cambodian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가 설립되어 불법복제 단속 및 상표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씩 점검과 함께 복제제품 몰수 및 소각이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는 만연한 편이다.

한편 2019년 한국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하여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와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 된 후 해당 특허에 관련 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100% 외국인투자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지분야는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금지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지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금지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금지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작, 쌀 가공, 보석 및 광산가공, 출판 및 인쇄, 라디오 및 TV, 목재 가공, 견직조 등의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 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비용(QIP 비용은 \$1,750)이외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의 면허를 대부분 인정(예로 의사, 회계사 등)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2,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를 부과, 본사와의 거래 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있어 법인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출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QI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 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 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년 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었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년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캄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부문

캄보디아는 2011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n Securities Exchang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개 업체(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2012, Grand Twins International 2014, Phnom Penh Autonomous Port 2015, Phnom Penh SEZ 2016, Autonomous Port of Sihanoukville 2017)가 거래소에 주식 등록되어 있으며, 3개 회사가 채권상장 되어 있다. 최근 CSX는 상장기업 국가육성, 모바일 트레이딩, 외국인의 주식거래, 캄보디아 정부 및 기업 채권 발행 등 자본 확충 및 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CLEDA Bank가 상장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캄보디아에 대해 B2로 등급을 매겨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B3를 매기고 있다.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장벽은 없다. 2018년말 현재 43개의 상업은행, 14개의 특수은행, 7개의 MDIs, 74개의 MFIs, 15개의 리스회사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2017년 3월부터 MFI의 최대 이자율을 18%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10% 이상의 거액 여신의 동일인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2018.6월 현재 은행의 평균 여신금리는 11.32%이며,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상업은행 75백만달러, 특수은행 15백만달러, MFIs 30 백만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시장 자산의 90% 수준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8년말 이들의 자산은 400억달러 수준이다. ACLEDA Bank와 Canadia Bank가 내국은행으로 자산기준 1위와 2위 은행이다. 캄보디아의 2018년말 부실대출 비율은 은행 2.2%, MFI 5.0% 수준이다.

캄보디아에는 전복은행 계열의 PPCB, 우리은행 계열의 WB,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여신을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여신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신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여신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여신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업의 재무상태 보다는 담보 및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최근 캄보디아 재경부는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보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8년 캄보디아 정부채권 발행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채권 발행 및 거래촉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ODA를 통해 금융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예금자 보호장치를 위한 자문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캄보디아의 높은 달러 이자율로 인해 2015년까지 비거주 외국인들의 캄보디아 달러저축율도 높았으나 2017년에는 대부분 저축이자율이 6%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등의 대출시 10%는 반드시 자국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은행들이 해당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였다.

경쟁정책

캄보디아는 WTO 가입시 경쟁법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고 있지 않다. 2016년 호주정부와 함께 캄보디아 경쟁정책에 대한 법안 초안(Draft Law)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대한 소식은 없다.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미미하며, 캄보디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최근 캄보디아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다양한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2018년 170 달러, 2019년 182 달러, 2020년은 190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봉제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정되지만, 실제 타 산업군의 공장인력 인건비 상승률에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음.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근속보상금제도’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보장기금제도’등 기본급 외 법적수당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며 인건비를 상승시켜 투자진출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표되거나 공표이후에도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잇따라 공표되는 등 운영 불확실성이 커 진출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년 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 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년 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년 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년 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대사관은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섬유제품 이외 항공운송시 즉시 통관 후 관련서류제출, 신규농기계 수입시 관세율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신규진출기업의 현장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특정 상품을 특혜 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GSP+ 지위를 활용한 대EU로의 수출 규모 확장 노력, 지역개발 및 국가 디지털화 작업, 2018-2040 키르기스공화국 국가발전 전략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2019년 상반기 키르기스공화국의 총 무역 규모는 32.3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8% 하락한 수치이며, 이 중 수출액이 8.92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7.6%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23.44억 달러로 72.4%를 차지해 무역수지는 14.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37.5%로 총 12.14억 달러의 규모이며, 그 밖에 주요 교역국은 중국(27%), 러시아(22.3%), 카자흐스탄(14.3%), 영국(12.6%), 우즈베키스탄(5%) 등이다.

2019년 1월 1일 기준 1달러당 69.84솜이었던 키르기스공화국 솜(som)화의 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주재국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시도 끝에 2019년 10월 28일 현재 1달러당 69.83솜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및 통관 관련

관세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협약이 키르기스공화국에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스공화국의 관세 문제는 EAEU 관세 규정(EAEU Customs Code)을 포함한 EAEU의 관련 법규와 「관세규정법(Customs Regulation Act)」을 포함한 키르기스공화국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산하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이 관세 통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특혜

키르기스공화국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에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스공화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공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2016년부터 키르기스공화국은 EU로부터 GSP+ 지위를 인정받아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생산된 6,000여 가지의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EAEU 가입에 따른 기술규제

EAEU 가입에 따라, 키르기스공화국은 46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36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충족한 재화는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키르기스공화국에서는 15개의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ies)과 29개의 시험연구실(testing laboratories)이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스공화국 경제부 산하 표준화계량센터(Center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CSM)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립된 기관으로, 표준화, 계량, 인증 제도, 국제 협력 분야에서 관련 기능을 이행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재화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labeling of goods)」에 따라 키르기스공화국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재화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을 구축하였다. 키르기스공화국에서 판매되거나,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의무적인 표시 대상이다.

키르기스공화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표시(labeling)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4년 제정, 2015년 개정된 「정부조달법(The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Public Procurement)」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 정부 내각개편 이후 정부조달 업무는 재무부 정부조달국(Public Procurement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2015년 개정된 「정부조달법」을 통해 정부 조달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맞추고, 전자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조달과정 및 예산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부패를 제거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조달 절차는 전자 시스템(www.zakupki.gov.kg)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public councils)을 설립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키르기스공화국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적재산 개혁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산업자산,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⁴⁷⁾

키르기스공화국은 199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국내 지적재산권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⁴⁸⁾

키르기스공화국은 1998년 1월 문학 작품, 음악 및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건축 및 조경 작품, 사진 작품, 과학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의 제작과 사용을 규정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한 이후, 「상표 및 서비스 상표, 상품 원산지명에 대한 법」, 「특허법」,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49) 50)}

상표권의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등록된 변리사 혹은 기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⁵¹⁾ 상표권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통해 10년 더 등록 연장이 가능하다.⁵²⁾

발명 특허권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47) <http://patent.kg/ru/about-us-2/regulation/>

48)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sample-page-5/>

49) <http://patent.kg/ru/sample-page-5-4/sample-page-2/>

5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5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5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하다.⁵³⁾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⁵⁴⁾

경쟁정책

키르기스공화국은 반독점규체청이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었으나,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기 규제법은 효력을 잃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경쟁법」을 비롯해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 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⁵⁵⁾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비양심적인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스공화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⁵⁶⁾ 동 법에 따르면 국내 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⁵⁷⁾

그러나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의 생산 및 제공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태의 시장의 여건 하에서 인정되는 자연독점 분야가 존재한다. 「자연독점법」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53)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9?cl=ru-ru#5>

5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5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56)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57)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운송, 비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⁵⁸⁾

키르기스공화국 반독점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상품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비양심적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⁵⁹⁾

반독점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 있다.⁶⁰⁾

환경 관련 규제

키르기스공화국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동 규범들은 환경과 환경 구성 요소들이 공화국의 국가 자산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정의⁶¹⁾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 사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및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환경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⁶²⁾

58)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5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6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61)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62)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키르기스공화국의 환경 보호, 생태계 안전 보장, 환경 보호·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환경 전략 및 정책 구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보호 산림청이다.⁶³⁾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 법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키르기스공화국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⁶⁴⁾에 속하는 경제 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동 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업이나 기타 활동 이행 전에 국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업의 전개 과정 혹은 결과로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거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진행 혹은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⁶⁵⁾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가 결정한다.⁶⁶⁾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키르기스공화국 경제부는 정부투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부처이며, 총리실 산하 투자진흥보호청(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63) http://www.ecology.gov.kg/public/images/file_library/201909221504146.pdf

64)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65)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6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Agency)이 투자, 수출, 민관파트너십 분야에서 국가정책 추진을 전담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⁶⁷⁾

키르기스공화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법이 2003년에 제정된 「투자법」으로, 1997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국민 대우 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강한 법이다. 동 법률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키르기스공화국 내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사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⁶⁸⁾ 또한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률로 특정 조직 및 법적 형태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규모, 구성, 자본 구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⁶⁹⁾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키르기스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⁷⁰⁾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스공화국은 관련법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외의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⁷¹⁾

키르기스공화국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터키, 미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3년 11월 22일 협정이 발효되었다.⁷²⁾

6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1583>

6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566?cl=ru-ru>

6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190>

70) Ibid

71) Ibid

72)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menultem=186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키르기스공화국 내에는 비쉬케크, 마이막, 나른, 카라콜, 레이렉 등 총 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등의 부분 면제, △세관절차 간소화,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 노동자의 입출국 제도 간소화, △구역 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통신, 수도, 전기, 교통 등)로의 접근성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73) 74)}

조세제도

키르기스공화국에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2008년 10월 제정, 2009년 1월 발효된 「세금 규정(Tax Code)」을 기초로 세금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이행 및 납세 등의 이행을 통제하는 기관은 국세청(State Tax Services)이다.

세금의 종류는 일반세와 특별세로 구분되며 일반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수익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광물세(mining taxes), 판매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토지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 특별세에는 중소기업, 특히, 자유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high tech park) 등에 관한 세금이 포함된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27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⁷⁵⁾

금융

키르기스공화국의 은행 제도는 키르기스공화국 국립은행(National Bank),

73) <http://invest.gov.kg>

74) <http://mineconom.gov.kg/ru/direct/8/79/82>

75) <http://www.sti.gov.kg>

상업 은행 및 여타 금융·대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활동은 2016년에 제정된 「키르기스 국립은행,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립은행은 키르기스공화국 중앙은행으로, 적절한 화폐 및 신용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물가 유지, 화폐 구매력 유지, 은행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은행은 키르기스 공화국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자금 보유 등 은행 활동과 관련한 표준 요구사항 수립, 상업은행 간부 및 감사 위원 임명 등과 관련한 의무적 요구사항 수립, 관련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은 보증금 보호시스템(deposit protection system)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은행보증금 보험법(Bank Deposit Insurance Act)」에 의해 규율된다.

2019년 6월 기준 키르기스공화국 내에는 25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2019년 6월까지 은행 부문의 총 자산 규모는 2,293억숨이며, 이는 2018년 말 2,220억 숨보다 3.3% 증가한 규모이다. 은행 부문 여신 포트폴리오 규모는 2019년 6월 기준 1,385억숨으로, 2018년말 1,279억숨보다 8.3%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로 273억 숨(15.5% 증가)이다.⁷⁶⁾

노동

키르기스공화국에서 근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2004년 8월에 제정, 2018년 6월에 개정된 「키르기스공화국 근로규정(Labor Code)」이며,⁷⁷⁾ 키르기스 공화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들은 키르기스공화국의 국내법의 불가분의

76) www.nbkr.kg

77) Labor Code of the Kyrgyz Republic, August 4, 2004, No. 106 (with the latest amendments as of June 26, 2018)

일부분을 구성하며,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키르기스공화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에서 근로자를 위해 우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은 키르기스공화국의 국내법, 계약보다 우선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하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은 최대 3개월, 간부 직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3일 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용 계약에 따라 주5일 근무 또는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737숨(약 25불)로, 대체로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키르기스공화국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 시간이 종료되는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스공화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키르기스공화국 이민청(State 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EAEU 가입에 따라, EAEU 당사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국적인들은 노동 허가 없이 키르기스공화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연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새해 시작 4개월 전에 정부가 결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8년 GDP는 약 77.0억 달러(세계은행)이며, 제조업 발달이 미미해 수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거주 노동자들의 이주노동 송금액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바, 러시아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이 2%대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억불)		92.4	79	70	71	77
1인당 GNI(불)		1,340	919	796	801	826
GDP 성장률(실질)		6.7	2.0	-1.0	2.5	3.5
물가 상승률(%)		6.0	5.5	6.0	7.2	6.5
환율(불, 연평균)		4.94	6.16	7.84	8.55	9.15
인구(백만)		8.4	8.6	8.7	8.9	9.1
무역 (백만불)	교역액	4,126	3,398	3,223	3,263	3,636
	수출	527	572	668	873	874
	수입	3,599	2,826	2,553	2,390	2,762
외환보유액(백만불)		177.4	64.4	107.3	641.8	366.8

* 출처: EIU, IMF(1인당 GDP만 추정치)

타지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0% 차지) 및 면화(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을 받았으나, 2018년 이후 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타지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자국 화폐인 소모니(Somoni)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타지키스탄 경제는 대외 경제 변동성(특히 러시아 경제 상황)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6-2030)을 수립하고, 관광업 진흥 및 외국인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잦은 법률제도의 변경,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의 낙후,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한-타지 교역 현황

(단위: 만불)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역 규모	4,448	5,130	2,424	2,296	2,239	2,383
수출	4,429	4,849	2,027	1,780	1,594	2,382
수입	19	281	397	516	645	1
무역 수지	4,410	4,568	1,632	1,264	949	2,381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0년 1억 3,37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무역규모는 2,38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타지키스탄 수출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2,382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2018년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승용차, 합성섬유, 타이어 등이다.

대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수입액은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타지키스탄 진출 우리 기업은 K 자동차 현지 대리점과 H 자동차의 현지 딜러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진출은 KOICA 원조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인 D 엔지니어링이 유일한 실정이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직'이 면사, 면직물 생산에 연간 2,900만불 규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년 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사가 2010년 타지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품목 평균 양허 세율(8.0%)—농산물(10.4%), 비농산물(7.6%) 11개 서비스 섹터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향후 관세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법인 등록에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지 세금위원회 산하,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Unit window)'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 이딘노예 아크노: <http://www.andoz.tj/index.php/ru/edinoe-okno>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직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신원보증서/ 위임장(사본)
- 비자(비즈니스 또는 노동비자)
- 거주등록증(3개월 이상)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직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 자유경제지대(FEZ)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각 FEZ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 제출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설립 신청서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증(3개월 이상)
- 노동 허가증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산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지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3%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4%

- 개인 소득세 25% (타지에서 182일이상 거주할 경우 자국민 수준의 개인 소득세인 8~13% 납입)
- 부가가치세 18% (교육, 식료품, 건설업의 경우 5%)
- 소비세
- 사회 보장세 (고용주가 25%, 노동자가 1% 납입)
- 천연 자원에 대한 세금 (계약서에 따라 1~10%)
- 알루미늄에 대한 판매세 5%
- 도로세 1% (2020년까지 적용)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승용차 기준) 7.5%
 - *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지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발표
 - * 두산베: 500TJS/헥타르
 - *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375TJS/헥타르
 - * 공화국직할주·호록: 250TJS/헥타르
 - * 기타 농촌지역: 180TJS/헥타르)
- 부동산세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하: 9%~12.75%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상: 15%
 - * 지방계수: 두산베 1%,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0.8%, 공화국 직할도시, 호록: 0.55%, 기타 농촌 지역: 0.4% 등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의 정부등록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등록 1년 이후부터 설립자는 타지키스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신설기업의 공인 자산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설립자가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조건아래, 신설기업에 국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

* 타지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체 수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회(보장)세 면제

* 타지키스탄 영토 내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타지키스탄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 특별 면제

- 면섬유 분야는 12개월동안 소득세, 부가가치세, 통관세, 부동산세 등을 면제
- 수력발전소 건설 분야 Royalty 및 Bonus에 관한 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
- 관광분야는 사업시작후 5년동안 Royalty 및 Bonus에 관한 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
-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

관세 제도

관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 6.1%이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스탄 외환법은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 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 현지 은행의 외환화(달러 등) 보유 부족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일 출금이 불가하거나 현지화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현재 한-타지간 ‘투자보호협정’(1995년 7월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약’(2016년 9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취약한 유통망, 광물 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등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지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에 유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타지키스탄 투자법(영문): <http://gki.tj/en/base/investment/>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http://www.andoz.tj/index.php/ru/>

타지키스탄 관세청: <http://www.customs.tj>

[입찰 정보]

타지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즈니스 정보]

<http://www.doingbusiness.org/>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세법은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되어오다, 2017년 11월 13일부로 91년만에 신관세법(Customs Act, 2017)이 발효되었다. 신관세법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관세법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세관련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신속성 향상이 기대된다.

태국의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년 12월 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96%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는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0.81%이며 조제 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 내에서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NAFTA 및 EU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10월 현재 13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 칠레, 방글라 7개국

협력기구(BIMSTEC) 등 13개국과 7개이다.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홍콩 등 7개국과 6개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아세안-홍콩 FTA는 2017년 11월 12일 서명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태국-EU FTA 협상은 2014년 5월 군부 정권 집권이후 잠정 중단된 이래 태국 총선 실시 이후로 연기되었으나 2019년 10월 15일 유럽연합(EU)은 태국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태국은 파키스탄, 터키, 스리랑카와 양자간 FTA 협상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2%에서 최대 5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바 있는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 폐기되었다. 반면, 2001년 2월 탁신(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10개 분야 115개 품목(2019년 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 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이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중에 있다. 한편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태국에는 총 389명의 AEO(수출입업자 198명, 세관 브로커 191명)가 활동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일반원칙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40% 이상의 권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447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조합기준, 특정 공정기준 등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으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부과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 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5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23일부터 5년간 2.81~58.85%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 되고 있다(단, 현대제철은 2017년 5월 16일부터 2.81% 적용).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과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년 7월 제소되어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 2013년 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년 2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핑관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에 관하여 재심에 착수한 이래 2019년 1월 일몰재심결과 도색 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 종료를 결정하였다. 한편, 비도색 강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5년간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되었다(13.82~22.55%, 단, 동국제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6.31% 적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5년 9월 조사에 착수, 3반덤핑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세아제강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세율은 51.53%로 결정되었다(세아제강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11.96%).

2017년 7월 20일부터는 5년간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에 관하여 3.49~53.88%의 반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세아제강 3.49%, 현대제철 32.62%, 세아 FS 16.10%, 일반 기업 53.88%)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13년 9월부터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고 2015년 7월 재심결과 3년간 추가 연장(적용관세율: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 하였으나 2019년 2월 재심 결과 세이프가드 부과 종료를 결정했다.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조사에 착수, 2014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확정하였으나 2017년 6월 재심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21.00%, 2년차 20.87%, 3년차 20.74%). 이로서 2019년 10월 기준 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비합금 열연강판 1건이다.

▶ 반덤핑 조치 사례(2019년 10월 기준)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13/12/18	14.28-19.47%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6/12/18~ 일몰재심중)	0.67-33.32%
	Japan	13/3/03	26/02/15	0-50.92%
	Republic of Korea	13/3/03	26/02/15	50.99%
	Taiwan	13/3/03	26/02/15	0-33.99%
Cold-rolled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06/02/14	-	9.24-20.11%
	Taiwan	06/02/14	-	8.80-17.47%
	Vietnam	06/02/14	-	14.35%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China	10/1/13	10/1/19	2.65-29.50%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Taiwan	10/1/13	10/1/19	5.85-24.14%
	Republic of Korea	10/1/13	10/1/19	13.82-22.55%
	Vietnam	25/03/17	-	3.20-40.49%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Vietnam	25/03/17	-	4.30-60.26%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 공사용으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7/5/3	23/05/15	33.26%
	Argentina	27/5/3	23/05/15	37.94-53.09%
	Brazil	16/05/17	-	34.4%
	China	12/08/11	23/6/17	30.91%
	India	27/5/3	23/05/15	20.02-31.92%
	Indonesia	27/5/3	23/05/15	24.48%
	Iran	16/05/17	-	7.25-38.27%
	Japan	27/5/3	23/05/15	0-36.25%
	Kazakhstan	27/5/3	23/05/15	68.11-109.25%
	Malaysia	12/08/11	23/6/17	23.57-42.51%
	Republic of Korea	27/5/3	23/05/15	13.58-58.85%
	Romania	27/5/3	23/05/15	27.95%
	Russia	27/5/3	23/05/15	24.20-35.17%
	Slovakia	27/5/3	23/05/15	51.95%
	South Africa	27/5/3	23/05/15	128.11%
	Taiwan	27/5/3	23/05/15	3.45-25.15%
	Turkey	16/05/17	-	27.27-38.23%
	Ukraine	27/5/3	23/05/15	30.45-67.69%
	Venezuela	27/5/3	23/05/15	78.44%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China	17/09/16	-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	11.96-51.53%
	Taiwan	17/09/16	-	2.38-29.04%
	Vietnam	17/09/16	-	310.74%
Citric acid	China	9/1/4	20/01/14 (18/1/19부터 일몰재심중)	57.79%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High carbon steel wire rods	China	17/5/14	(17/5/19부터 일몰재심중)	12.26~36.79%
Low carbon steel wire rods	China**	10/03/16	-	12.81~31.15%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30/11/12	30/11/18	30.34~112.51%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China	20/07/17	-	3.22~66.01%
	Republic of Korea	20/07/17	-	3.49~53.88%

* 연간 1천톤 이내의 조선산업용은 0%, 연간 1천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0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 HS코드 7229.9000.090에 한해 12/08/17부터 0%적용

자료: WTO(<https://i-tip.wto.org/goods>),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http://btir.dft.go.th/Home.aspx>)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최저 2%~최대 50%, 픽업트럭 최저 2.5%~ 최대 40%의 높은 소비세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년 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로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 산정 기준을 과거 현지생산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을, 수입차의 경우 CIF 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단, 개별소비세 국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으로 시장 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CIF) 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종류	2016년 1월 1일~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30*	25*	10	≤ 100	25*	20*	8*/4*
	101-150			20	101-150			16/8
	151-200	35	30	25	151-200	30	25	23/10.5
	>200	40	35	30	>200	35	30	26/13
	> 3,000 cc	50	50	50	> 3,000 cc	40	40	40

종류	2016년 1월 1일~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PPV/ Double Cab/ Space Cab/ Pick-up	≤ 175	23*/10			≤ 175	18/8(6)		
	≤ 200	25*/12/5/3, 18			≤ 200	20/10(9)/4(3)/2.5(2), 15		
	>200	30/15/7/5, 18			>200	25/13(12)/6(5)/4(3), 17		
	> 3,250 cc	50			> 3,250 cc	40		
에코카 /E85, 81	≤ 100	14*/12*			≤ 100	12*/10*		
	101-120	17			101-120	14		
전기차/BOI		10/2				8/2***		

*주 1: 안전성기준(active safety standard)을 충족해야 함.

** 주 2: 2019년 4월 6일부터 No Cab, Space Cab, Double Cab 차량 중 탄소배출 기준이 km당 0.005g 미만인 개별 소비세율 () 안의 세율로 인하

*** 주 3: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BOI 승인 전기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0%) 예정,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2%의 개별소비세율이 재적용

자료: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고 2007년 11월 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된 이래 2017년 1월 1일부터는 무세화 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산 3,000cc급 자동차의 경우 한-ASEAN FTA에 따라 종전 80%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7월 총선당시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년 8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년 9월 14일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제도의 혜택은 1,500cc 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로 토요타,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아), 타타(인도), 현대(한국) 등의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태국 내에서 생산하지만 1,600cc를 판매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독성 물질 등의 생산·유통·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 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커서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년 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 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 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년 10월 31일, 상품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한편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는 상당수의 품목이 포함되면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약 590만 명(2018년)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보유량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년 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국영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헌법에는 경제/금융 체계에 관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제7장은 △시장경제 체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동 장려(134조) △조세시스템(135조) △재정시스템(136조) △국가예산시스템(137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8조) △화폐 제도(139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7년 10월 개최된 원로이사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무료로 공급하던 가스, 전기 및 수도 등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최된 인민이사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유틸리티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결정(무료 제공량 폐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방 차원의 자급자족,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를

위한 신속한 조치, △중소기업 육성, △식량 안보를 위한 사농업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2018~2024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2019년 2월 '2019~2025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국유재산 감축, 디지털화,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등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한다는 목표(2018년 20개소에서 2018년 86개소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총 333개소가 민간에 매각되어 민영화된 기업의 수는 9년간 16.7배 증가) 아래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서 에너지, 건설, 수송,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의 천연가스와 1억 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TAPI 가스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CP)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가솔린, 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10%를 유지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2015년부터 GDP 성장률이 6%대에 그쳐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을 2019~21년 각각 5.6%, 5.1%, 4.9%로, IMF는 2019~20년에 6.3%, 6%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급 지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급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및 자원, 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아시아 실내 무도대회, 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렐리, 국제역도대회 개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은 반면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⁷⁸⁾

물가상승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2014년 11%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1월 마나트화 평가절하,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에도 16%, 2016년 11%, 2017년은 16%, 2018년은 17.5%의 물가상승이 있었다.⁷⁹⁾ 2019년에도 외환사정 악화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2019년부터는 거시경제 환경 호전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⁸⁰⁾

78) IMF에 따르면, 2014년에 28억 달러, 2015년에 51억 달러, 2016년에 76억 달러, 2017년에 43억 달러, 2018년에 29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9) EIU 통계 참조

80) IMF 전망에 따르면 '19년 13.4%, '20년 13%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 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신차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2014년 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향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 4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 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등 교통, 물·환경, 보건의료, IT, 섬유, 금융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추진(제1회 한-투 비즈니스 협의회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2019년 4월 개정의정서 서명)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2018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54.7%에 이르는 약 35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약 35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와 230bcm(이중 180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bcm으로 줄었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1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을 재개(1.2bcm)하였고 2024년 6월까지 5년간 연 5.5bcm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engaz는 2006년 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배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년 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 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 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전체 중국 가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D 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건설이 2019년 말에 착공될 계획으로 늦어도 2022년 말에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년 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 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년 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아 2단계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4bcm, 2014년 26bcm, 2015년 30bcm, 2016년 29.4bcm, 2017년 31.7bcm, 2018년 35.6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India) 프로젝트(1,814km)가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2차 추진 운영위원회에서는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TAPI 가스관 착공식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아프간 구간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IsDB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은 투르크가 제시한 가스 가격 인하와 안전보장 비용, 건설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rans-Caspian Gas Pipeline, TCP)은 투르크 가스를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르크의 투르크 멘바시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연결하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으로 총 길이 300km, 연 용량 30bcm으로 2019년 3월 Frebort 주 투르크 EU대표부 대사대리, 투르크와 EU간 가스공급 기본협정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나, TCP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GDP(십억 달러)	29.2	35.1	39.1	43.4	35.8	36.2	37.9	42.7
경제성장률(%)	14.7	11.1	10.2	10.3	6.5	6.2	6.5	6.2
CPI 상승률(%)	5.3	5.3	6.8	6.0	7.4	3.6	8.0	9.4
상품수출(십억 달러)	16.8	20.0	18.9	19.8	12.2	7.5	7.8	8.3
상품수입(십억 달러)	11.4	14.1	16.1	16.6	14.1	13.2	10.2	2.7
경상수지(십억 달러)	-0.243	-0.308	-2.880	-2.769	-5.054	-7.605	-4.369	-2.988

자료: 세계은행, IMF

▶ 투르크메니스탄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361,773	130,923	19,822
수입	472	837	126	156	31	92	51	116
총액	243,186	194,346	141,315	193,143	182,193	361,865	130,974	19,706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2018년 19백만 달러이고, 수입은 2018년 116천 달러로 매우 미미하여,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흑자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플랜트·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산업기계, 철구조물, 밸브, 철강관 등 플랜트 건설 기자재이다. 2018년 기준 수출에서는 자동차(버스)가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하며, 수입에서는 기호식품 및 신변잡화가 수입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 당 20달러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 과일, 주스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최근에는 담배와 주류)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건설 기자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권리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시부터 10년 동안 투자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외국인 투자법 제8조에 의거), 외국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지상권 설정 장벽

내국인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에서, 식량 안보 및 자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단체, 기업을 포함하는 자국 국민 및 법인에게 최대 99년 동안 농업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법을 개정하였다.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차권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임차권의 제공 대상 :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 임시 시설물
-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최대 40년, 임시소매점, 창고, 주차장 등은 5년 까지 허용되고, 토지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상가 등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년 1월 1일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나트에서 3.5마나트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매입 기준은 3.4913 마나트이며,

매출기준 3.5175 마나트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를 10% 인상하였지만, 2018년 Economic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17.5%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 매입을 제한(2016년 1월부터 개인 환전 불가)하고 있으며, 아시가바트 신공항,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렐리, 국제역도대회 개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외환 부족으로 추가 평가절하 요인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나, 송금 금액 및 횟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참고로 외환 송금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private clients(USD)
up to 500	30
from 501 - 1,000	45
from 1,001 - 5,000	60
from 5,001 - 15,000	70
over 15,000	0.25% from amount, min 100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ies	1% from amount, max 20,000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legal entities and entrepreneurs without formation legal entity:(USD)
up to 500	35
from 501 - 1,000	65
from 1,001 - 5,000	80
from 5,001 - 25,000	90
from 25,001 - 50,000	115
over 50,000	0,20% min 150 USD, max 600

정부 보증 및 상업 신용장 개설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은 차관 공여 사업에 대하여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을 하지 않기 때문에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보증이 필요한 공적 개발원조 형식의 차관 공여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며, 상업차관만 제공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의 상업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현재 상업신용장은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 내의 금액을 본인 거래 은행이나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음할인 또는 수출 선대금 용자가 가능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상품 수취 후 하자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Certification 형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이 하자있는 신용장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장벽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⁸¹⁾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정부 발주사업 종사자의 노동허가 신청 시에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에 발주관청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중 주민등록상 다른 주 출신의 근로자도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81) 다만 1인 지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내지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크 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신규 여권으로 다시 비자 초청장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⁸²⁾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한 과표의 10%(인별 기초공제 50마나트),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82)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 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적의 외국기업(지점 등)이 투르크메니스탄 내 세적등록 및 소득귀속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15%(선박 및 항공기 임차 등은 6%) 및 부가세 1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지방세

법인의 경우 도시 발전세는 이익의 0.5%(분기납부), 주거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연 1회 납부, 개인의 경우 매월 2마나트 납부),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고세(아시가바트의 경우 광고비의 5%, 기타지역 4%), 주차장 소유세, 자동차세, 자동차 운행세(가액 산정)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중에 따라 차별된다.

공공요금

그동안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던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Elders Council)를 통해 전격 유료화 되었다. 2018년 9월 25일 인민이사회에서 그간 유지해 오던 무료 공급량이 폐지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전 유료화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공공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천연 가스)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 : 1000m³ 당 20마나트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와 난민 : 천연 가스 1000m³ 당 20마나트.
- 상기 이외의 소비자(해외투자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제외) : 천연가스 1000m³ 당 20마나트
- 해외투자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 천연가스 1000m³ 당 50달러
- 주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 액화 가스 킬로그램 당 20텡게

(전기)

- 정부부 예산 및 동등한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 법인체 : 3.31마나트/100kWh
- 주 소유의 자립 법인체, 사업에 종사하는 비 국유 법인체, 개인 기업가 : 6.28마나트/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 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2.17 마나트/100kWh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주재국에 등록된 사무실과 지사를 통해 설립된 법인 : 3.58US달러/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인된 외교 공관, 외국 영사관, 각 주 및 정부기구, 국제기구와 이들 기관의 주재국 지사 및 영구 대표부 : 3.31마나트/ 100kWh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재국 시민 : 무료 공급량을 초과하여 소비한 전기에 대해 2.50마나트/100kWh(부가가치세 포함)

(수도)

- 월 입방미터 당 50텡게
-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용수는 10m³ 당 2.75US달러

(버스)

- 1회 탑승권 50탱게
- 연금생활자 월 이용권 1마나트
- 초중고생 월 이용권 2마나트

법인, 대표부 및 지사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재정경제부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영문 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혹은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혹은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협 발행의 해외건설실적)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재정경제부 소속 경제위기에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 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 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 서류들을 재정경제부⁸³⁾에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경제위기에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로 이송한다. 경제위기에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제위기에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에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동 번호(code)를 재확인⁸⁴⁾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83) 2017년 10월 5일자로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합

84) 재정경제부 및 경제위기에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경제위기 예방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1991년 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년 9월 가입), 국제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2015년),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 협약(1999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2016년) 등 국제조약과 WIPO, EAPO (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고,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중 80% 정도가 등록(공식 출원 및 등록 현황 미공표)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명권 보호법이 제정되고 발의되었으며, 12월에는 건축물 특허 등록과 관련해 저작권 및 관련권법이 개정되었다.

정부 조달

2011년 7월 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 과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 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6월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14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었다. 다만 2018년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Ashgabat-Turkmenbashy 고속도로, Turkmenbashy-Garabogaz-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2020년에, Ashgabat-Turkmenabat 고속도로(600km)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센터 등) 개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년 8월 Erdogan 터키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2018년 5월 준공되었다. 전체 면적은 140만 m², 연간 처리량 2,700만 톤으로 여객, 컨테이너, 벌크 화물 페리용 열차 및 폴리프로필렌 터미널, 조선소 및 수리소를 보유하고 있고, 조선 및 선박 수리공장은 1,800m에 이르며, 선박 17척을 동시에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⁸⁵⁾,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16 11월에는 UN의 지속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제7차 아프간지역경제협력회의(RECCA VII)에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Lapis Lazuli Ruute Agreement’ 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기본료 1마나트로 저렴하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85)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송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되었다.

매우 비싼 편이다.⁸⁶⁾ 무선 전화의 경우⁸⁷⁾, TMC社, 투르크멘텔레콤社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성 발사한 이후 통신 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되레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와 3G 인터넷 모두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현지 기업인 Altyn Asyr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 체류시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초과 체류시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3개월) 및 의료진단서 제출 후,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⁸⁸⁾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86)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 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87) MTS社(러시아)의 서비스가 2017년 10월 돌연 중단되었다.

88)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서가 2016년 11월 26일 아시가바트에서 교환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2019년 개정의정서 서명 국내절차 진행 중)되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제1차: 2010년 6월 제2차: 2011년 3월, 제3차: 2014년 8월, 제4차: 2015년 1월) 2019년 4월 정상방문 계기 노력하였으나 양국간 일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480개 품목에 대해 5.0~80.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Custom Duty, 0~30%), 규제 관세(Regulatory Tax, 15~80%를 초과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0~25%: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이 있다.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거래 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 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 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09~2010년

- 수입자동차에 대해 당초 50%의 관세에서 800cc이하(50% 유지), 1,800~2,500cc(90%→100%), 2,500~3,000cc(100%→150%)로 인상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텐서(5% → 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 →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 주석판 제조를 위한 CRC Black Plate(10%→5%), 변합기와 컨트롤 패널 원자재 세율인하,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의 관세 면제, 태양열관련 설비의 면세범위 확대
- 2010년 7월 롯데의 현지 투자업체인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7.3%→3%) 인하

○ 2011년도

-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소재시 50%, 국내 유관 제조업체 미 소재시 35% 관세 부과
- 의약품 중 항생제, 항알러지제, 항당뇨성, 결핵치료에 필요한 22개 필수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면제

- 2012년도
 -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4%) 인상
 -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증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증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항공기·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 2017년도
 - 스탬핑 호일(stamping foils)에 대한 관세 면제
 - 조립식 모듈 패널(pre-fabricated modular clean rooms panels)에 대해 당초 20% 관세에서 3%로 인하
 - 의약품 산업 용도 논우븐 패브릭(non-woven fabric)에 대해 당초 16% 관세에서 5%로 인하
 -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 of polyesters) 수입에 대해 5% 규제관세(RD) 부과
 - 알루미늄 음료수 캔에 대해 당초 11% 관세에서 20%로 인상
- 2018년도
 - 연방세무위원회 (Federal Board of Revenue) 추가 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카드(SIM Card), 방적사(Cotton Yarn)에 대해 5%, 밀(Wheat) 60% 등 570여개 품목에 규제관세(RD)부과
- 2019년도
 - 18개의 의약품 및 약 1,600개 산업 원자재에 대한 관세(CD) 인하, 휴대폰 및 타이어에 대한 규제관세(RD) 감소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기준 4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4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24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53건의 수입 규제 조치(반덤핑 52건, 상계관세 1건)가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대한 수입 규제 현황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4건으로, 품목별로는 화학 3건, 기타 1건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파키스탄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세율(%)	비고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2015.9.2. 일몰재심 개시 2017.1.20. 일몰재심 종료 후 2015.9.2.부터 관세 부과기간 5년 연장
2016.1월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14.89 18.57 16.22	2017.7 최종 판정 (한국 14.89%)
2016.11월	Sulphonic Acid	대한민국, 중국,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21.59 10.57 11.25 20.24 10.09 13.40	2018.1 최종 판정 (한국 21.59%)
2016.11월	Polyvinyl Chloride Resin	대한민국, 중국, 태국, 대만	14.97 20.47 13.98 16.68	2018.4 최종 판정 (LG케미칼은 4.0% 적용)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관세 세입 성과

2019년 10월 발표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주요 관세 항목 중 자동차 관세 수입이 지난해 24.0% 증가하여 총 관세 수입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POL제품의 비중이 약 11.8%로 파악되었다. 상위 10개 주요 수입 품목이 관세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총 58.6%에 해당한다.

▶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백만 루피, Rs)

순위	관세 항목	회계연도		성장률(%)	2017/18 점유율(%)
		2016/17	2017/18		
1	자동차 및 부품	78.3	97.1	24.0	15.6
2	POL 제품	60.9	70.7	16.0	11.3
3	쇠, 철 류	33.2	41.4	24.7	6.7
4	기계류	35.6	38.9	9.4	6.3
5	전기제품	26.0	30.9	18.5	5.0
6	식용 기름	24.9	28.2	13.1	4.5
7	세라믹 제품	17.0	21.8	27.9	3.5
8	플라스틱	7.7	12.2	59.2	2.0
9	쇠, 철 가공류	11.6	11.8	1.8	1.9
10	제지류	9.6	11.7	22.4	1.9
-	소 계	305.0	364.9	19.6	58.6
-	기타	202.1	258.2	27.8	41.4
-	총 계	507.1	623.1	22.9	100.0
-	환불/반환	11.1	14.7	32.9	-
-	순 총계	496.0	608.3	22.6	-

자료: Fiscal Policy Statement 2018-19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파키스탄 표준 품질 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

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으로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18년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확인이 필요하다. 주로 CE, ISO, FDA 등 미국 및 유럽에서 발행되는 국제적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www.psqca.com.pk)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표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 후 파키스탄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표준을 입수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총 24개의 국제 인증 관련 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약 3,000개의 국내 기업이 ISO 9000 인증을 획득했다.

파키스탄 표준 품질관리국에서는 2019년 기준 총 78개 항목에 대해 파키스탄 기준충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각 항목별도 파키스탄 표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PSQCA의 웹사이트에서 E-카탈로그를 통해 파키스탄 표준에 대한 문서번호를 검색해볼 수 있다.

한편, 중고 기계 및 플랜트 관련 제품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파키스탄은 사용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고기계의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중고 기계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아래 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상태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한 확인서를 선적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 Messer Lloyds of London
- Messer Quality Tech, LLC
- Messer ABS

- Messer Bureau Veritas
- Messer SGS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 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2019년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정부는 향후 EURO III 또는 EURO IV로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7월 기준 4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4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 제한품목 세부 리스트는 아래의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⁸⁹⁾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 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89)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pk)

2019년 현재까지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수주 사례를 전면 재검토 하여 문제 발견 시 관련 정치인 및 관료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 척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감사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파키스탄의 특허권 관련 기본법은 Patent & design Act 1911이며 산업자원부(Ministry of the Industries & Natural Resources)에서 관리한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6년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특허청(Patent Office)에서 관리한다. 특허 신청 후 기술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으면 18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발급되며, 기술적인 문제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권 관련 기본법으로는 Trade Mark Act 1940와 시행세칙으로 Revised Trade Marks Rules 1963이 있다. 상무부 소속 Trade Mark Register에서 관리하며 등록 후 존속 기간은 7년으로 갱신 등록 후는 15년간 유효하다. 선 사용주의 및 선 등록주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상 선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상표(공공 소유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섬유류 상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표 등록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상표 등기소(Trademarks Register)에 하는데, 상표 등록이 접수되면 그 접수 사실이 상표 저널에 게재되며 이의가 있는 자는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과거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 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IMF 구제금융 수혜를 계기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증대를 위해 금융, 석유, 가스, 발전, 운송관련 국영기업 30여개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신규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이와 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대우고속버스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oin & Protection Act 1976)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01)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돼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인센티브 환급(법인세 및 Sales Tax 환급 등)을 지연하여 이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에 법인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연락 사무소 포함) 설립 시에는 약 5,000~7,000 달러가 소요되며 기간은 약 8주가 걸린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1년 7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신규 지사·사무소설립을 희망하는 외국회사는 보안심사통과(Security Clearance)를 내무부로부터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SECP가 발급하는 외국투자자 등록증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2019년 현재까지 유효하다.

2019년 10월 파키스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은 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해 총 22개이지만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슨, 대우버스 등 소수의 업체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 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제조업 중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 등을 향유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펫,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는 연방정부 산하의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⁹⁰⁾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여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년 9월 10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90) www.epza.gov.pk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제공하지는 않으며 신규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2019년 현재 2개의 산업단지(Korangi Creek Industrial Park, Bin Qasim Industrial Park)를 SEZ로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라호르 지역의 Rachna Industrial Park 등 3개의 산업단지는 현재 SEZ 지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다.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2 또는 제3의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 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단기금융으로는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외자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은 없다.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외화 대출의 경우는 연 15%대, 현지화 대출의 경우는 기업의 차입 목적에 따라 3~1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 시 은행 측에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통상 이자율의 지급 수준의 20% 정도가 된다.

수출 금융 시에는 수출 소요 자금 대부 제도가 있는데, 투자기업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부 금액은 신용장 금액 혹은 수출 계약서 금액이 되며 이자율은 연 7%가 적용되며, 수출 불이행 시는 차입금의 2.5배를 변상해야

한다. 장단기 대출 이자율은 연 15% 내외이며 아직도 금품 수수나 커미션 제공이 많다. 기준금리의 경우 2019년 IMF 구제금융 조치 등으로 인해 8년만의 최대 수준인 13.25%에 달한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 (1998년 5월 핵실험 직후 외환계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및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 여파로 2017년 12월 이후 대미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2019년 10월 기준 달러당 155~160 루피에 육박하고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가 최근에 보고된 바는 없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달러계좌 보유가 금지되어 현지화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달러 송금시 환전을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0~35%), 소득세(10%),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 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2013년 까지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3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후 매년 1%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29%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기준 25%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2,500만 파키스탄 루피 이하, 연매출 2억 파키스탄 루피 이하, 근로자 200명 이하의 기업으로 법인세율 20%가 적용되어 왔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년 7월 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효력을 2005년 7월 15일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 내에 발생하는 외국인 관련 각종 분쟁 발생 시에 국제중재법에 따른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투자분쟁 해결이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 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년 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우리 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2019년 현재 상호간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느장행정과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 10월 은행 총예금

4조 1천억 루피, 총대출 3조 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3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 자본(MCR)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3억 달러를 보유하고 최소 자본적정성비율(CAR)이 8% 이상일 경우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⁹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종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91) http://www.sbp.org.pk/about/banks_nbfis/capitalbanks/creq1.htm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는 금, 은,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광물산업은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액화천연가스가 생산 및 수출을 시작하여 전체 경제 및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하였다. 광물분야(△금 △구리 △니켈 △코발트)와 에너지분야(△석유 △액화천연가스 △컨덴세이트)의 2018년도 수출액 총합은 약 87억불 규모이다⁹²⁾.

최근 들어 천연가스는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엑손모빌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한 190억불 규모의 PNG LNG 프로젝트는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LNG 수출 선적 1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⁹³⁾.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Peter O'Neill 전 총리 정부를 거쳐, James Marape 현 정부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2) 자료는 www.worldstopexport.com 참조함.

93) PNG LNG 공식 사이트 참조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업, 수산업, 산림업 분야에 초점을 두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석유, 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8월 글로벌 통상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비광물분야 특히 농수산물임업에서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구조를 개혁하고 해당 분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공개하였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 및 원자재에 집중(70% 이상)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물임업 등 부문별 정책 마련, △해외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파푸아뉴기니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으로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이 야기한 피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의 생산수준 하락, 금, 원유, 컨테네이트 등의 생산수준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2019년 1월 ~ 2019년 3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0.7%를 기록하였다. 물가 상승은 △식당과 호텔, △교육, △교통, △음식/비알콜성 음료, △주거비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19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4%로 전망된다.

2018년 7월-2019년 6월 인플레이션은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높은 정부 지출과 외환시장 압력이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인 KFR을 2019년 6월까지 6.25%로 유지하다 점차 인하하여 2019년 10월 5.5% 수준이다.

무역의 경우 액화천연가스를 제외한 수출물품들의 현지 통화인 키나(PGK) 기준 가중평균가격이 2018년 동기 대비 2019년 1월~3월 분기에 3.7% 하락하였다. 금을 제외한 모든 광물제품의 키나(PGK) 기준 수출가격이 3.6% 하락하였다. 농수산업 제품 및 목재의 키나(PGK) 수출가격 또한 4.4% 하락하였다. 목재를 제외하면 농수산업 제품의 수출가격은 2018년 동기 대비 11.4% 하락하였는데 이는 해당 물품들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파푸아뉴기니 현지 통화인 키나(PGK)는 2019년 1월 ~ 2019년 3월 분기 세계주요통화대비 평가절하 되었다. 유로화 대비 6.1%, 영국 파운드화 대비 5.3%, 일본 엔화 대비 4.7%, 호주 달러 대비 3.0%, 미 달러 대비 0.8% 평가절하 되었다. 2019년 3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약 21.77억 미불 수준이며, 이는 약 5.5개월간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향후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지속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파푸아뉴기니 내 LNG 산업 관련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도 제2차 LNG(Papua LNG)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시장가격 상승, 농작 기술 발전, 최근 우호적인 기후 조건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 정부 역시 비광물 분야 육성 차원에서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있어 위험요소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제정치경제 상황 및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에너지 분야〉

엑손 모빌 사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190억불을 투자한 파푸아뉴기니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사업인 PNG LNG 프로젝트는 2018년 기준 830만 톤의 LNG를 생산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LNG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APEC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내 에너지 부존량은 천연가스 4,400억 입방미터, 석유 6억6천만 배럴, 가스 콘덴세이트 2억6천2백만 배럴이다.

현재 진행중인 파푸아뉴기니의 차기 대규모 프로젝트는 Gulf 주 PRL 15 지역에 위치한 Elk-Antelope 가스전으로서, 이는 예상 가스 부존량이 6-7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파푸아뉴기니내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다.

〈광물분야〉

2018년 파푸아뉴기니의 광물산업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로 Lihir 금광, Ok Tedi 금·구리 동광, Porgera 금광 등 3개 광산이 파푸아뉴기니내 전체 광물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adang 지역에 소재한 Ramu 니켈-코발트 프로젝트의 2018년 니켈 채굴량은 35,355톤(2017년 34,666톤), 코발트 채굴량은 3,275톤(2017년 3,308톤)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파푸아뉴기니 총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및 관련 산업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의 약 2% 미만(약 7천만 달러)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커피, 코코아, 코프라, 팜유, 설탕, 고무, 고구마 등이며, 커피, 코코아, 팜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쌀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식량은 아니지만 최근 연간 20만 톤 정도를 소비하면서 점차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쌀 생산은 연 평균 1만 톤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의 쌀을 호주, 태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Rice Policy 2015-2030을 발표하였다.

파푸아뉴기니 농축산부는 쌀 수입업자별로 연간 최대 수입허용량 또는 쿼터를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쌀 산업 기술 지원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 정부 국정기조(알로타우합의2) 및 국가개발계획(MTDP3) 등에서도 농산업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푸아뉴기니 내 쌀 상품화 및 소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임업〉

파푸아뉴기니는 열대목재 수출국으로서, 연평균 200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며, 국토의 약 3,900만 헥타르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1,500만 헥타르에서 양질의 열대수가 성장한다.

2018년 약 9.29억 미불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였고 이는 총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2017년 기준 326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이 수출되었고, 이 중 286만 입방미터 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산림업 협회측에 따르면, 수출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입방미터당 약 90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8년 9월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3차 중기개발계획 발표에서 2021년 내로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가공 후 수출을 통해, 고용 증진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원목 가공 산업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로 미비를 비롯한 열악한 각종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공되는 원목의 양은 미미하며,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제재소는 7개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설립된 신규 제재소는 전무하다.

또한 산림조림 분야에서도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림지와 관련된 토지권리 문제로 인해 방치된 상황인데, 조림지 면적의 경우, 1990년대는 6.5만 헥타르 규모였으나, 현재는 4만 헥타르 수준으로 감소했다.

산림산업 관련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벌목 및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규제가 중복·혼재되어 있다.

〈수산업〉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5%가 파푸아뉴기니 EEZ에서 어획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어획된 참치는 제2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레이(Lae)에서 캔 및 정육(loin)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태평양해양산업구역(PMIZ)을 Madang 지역에 설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참치 조업권 판매에 있어 과거에는 선박조업일수 입어제도(VDS)를 운영하면서 자국에서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톤 당 200불 규모의 조업권 할인혜택(discount)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국내 가공물량 제고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자국 내에서 실제 가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톤 당 400 미불 규모를 환급(rebate)한다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였다.

수산업, 특히 참치 통조림 수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통상환경 변화로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수입 관세 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생산한 참치 통조림은 영국으로 수출할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으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향후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WTO기준인 24%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무역협정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AT)〉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체결한 PICAT 회원국이다. PICAT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무역 관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2008년 상호간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등 파푸아뉴기니에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있다.

〈APEC〉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SEAN〉

파푸아뉴기니는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otonou 파트너십〉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무역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79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EU 15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2009년에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EU와 파푸아뉴기니는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PA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 수출을 위한 특별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WTO〉

파푸아뉴기니는 1996년 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외무역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

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영세율(Zero Rate) 0% :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상품들.
-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
-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일부사치품)

이 밖에도 설탕은 종류에 따라 최대 3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40~11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 관세 상황

2017년 말경의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2018년 1월 1일자로 254개 품목에 한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추가로 2019년에 664개 품목(나무 가구류, 쇼핑 봉투 포함)에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2019년 수입관세로 인한 세수는 약 1.08억 미불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1999년도에 WTO의 권유로 도입된바 있는 관세감축프로그램(TRP)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하향한다는 기존의 수입관세 정책 동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금번 수입세 상향조절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자국제조업의 경쟁우위 제고 △경제활동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밝혔다.

관세가 상향된 주요 분야는 이미 자국에서 일정 수준 생산이 가능한 △육류·유제품 및 조리용 기름(팜유)분야와, 자국생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된 △유류 수입(휘발유·경유) 분야 등이다.

육류 관세 상향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냉장육 및 햄 등은 12.5%~20% 수준이며, 일부 품목은 1킬로당 3.50 PGK(약 1불) 수준이다.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2015~2017년도 간 무관세였으나, 신규 도입 제도로 인해 리터당 0.10 PGK(약 0.3불)이 부과되며, 향후 2020년 내 추가적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수입세율은 수입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IRC(Internal Revenue Commission)에 문의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 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랍스터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a Indu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PNG 상공부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 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악어가죽(5%), 백단향(sandal wood, 5%)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하며, 국가문화 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 및 저작권 인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 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 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합작 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회사 설립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현지 회사 혹은 외국 회사(overseas branch)를 설립할 수 있고, 신청 양식은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다.

절차	소요기간	비용
1. 현지회사 혹은 외국회사 등록(registration)	1일-3주	PGK 500
2. 등록된 회사에 대한 인증서 발급(certification)	2주-5주	PGK 2,000

자료: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현지 회사

파푸아뉴기니 현지 회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명, 주주·대표·사무진 관련 정보(대표 중 최소 1인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여야 하며, 사무진 임명은 선택 사항임.), 투자 자본, 파푸아뉴기니 현지 주소지, 기업헌장(company constitution)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외국 회사

외국 소재 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비거주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명, 주요 사업 활동 및 장소, 대표의 국적·생년월일·주소,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회사 설립계획서 등본 등을 명시하여 하며, 현지 대리인(resident agent)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지의 개인 혹은 회사가 해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문서 수발 및 제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0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3.50 PGK(약 1미불 수준)이다.

법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일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시급의 2배, 공휴일은 정규급여의 1.5배, 이외 평일과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시급 계산은 1년을 52주로 산정하여, 연봉을 1년간 총 근무시간(44×52)으로 나누거나, 주당 총 급여를 44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급휴가는 연 9일의 법정공휴일 외에 현지인에 대하여는 농촌노동자 연 1주, 도시노동자 연 3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업종 및 출신 국가에 따라 연 4-7주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 연 6일까지의 병가가 주어진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15년 근속의 경우 6개월 수준으로 주어진다.

외국인 창업 제한 분야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 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14일	토지 가치의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한다.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De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 3) De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 4) Department of Forest : 임업

이밖에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용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계좌 개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년 4월 21일 발효)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시에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포기가 많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파푸아뉴기니는 전체 190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은 143위를 차지했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19년 10월 기준 누적신고건수는 총 117건, 누적신고법인은 39개, 누적 신고금액은 약 2.85억 미불, 누적투자금액은 약 1.95억 미불이며 누적송금 횟수는 274회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9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1,058개 품목의 55%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관세율(%)	적용품목(개)					
	2014	2015년	2016년	2017	2018	2019
0	495	496	496	1,415	1,415	1,582
1	2,229	2,242	2,242	1,630	1,660	1,528
3	2,280	2,268	2,268	2,277	2,290	2,256
5	651	659	659	704	668	672
7	969	963	963	1,053	1,050	1045
10	1,360	1,369	1,369	1,550	1,546	1584
15	1,213	1,202	1,202	1,410	1,410	1372
20	187	191	191	245	245	245
25	4	4	4	4	4	4
30	229	227	227	577	577	577
35	27	35	35	33	33	33
40	146	136	136	130	130	130
45	6	6	6	8	8	8
50	19	19	19	18	18	18
65	5	5	5	4	4	4
총계	9,820	9,822	9,822	11,058	11,058	11,058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비율(%)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2.8	12.8	14.31	14.31	14.3
1	14.74	15.01	13.82	13.85	13.78
3	20.59	20.71	20.4	20.45	20.5
5	6.37	6.04	6.08	6.02	5.98
7	9.52	9.5	9.45	9.63	9.65
10	14.02	13.98	14.32	14.15	14.16
15	12.75	12.75	12.41	12.38	12.38
20	2.22	2.22	2.22	2.22	2.18
25	0.04	0.04	0.04	0.04	0.04
30	5.22	5.22	5.22	5.22	5.25
35	0.3	0.3	0.3	0.3	0.23
40	1.18	1.18	1.18	1.18	1.29
45	0.07	0.07	0.07	0.07	0.07
50	0.16	0.16	0.16	0.16	0.16
65	0.04	0.04	0.04	0.04	0.04
총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index.php?page=mfn>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19년 현재 7.74% 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이 11.49%로 가장 높으며, 화학 4.33%, 기계/장비 7.68% 수준이다.

▶ 필리핀의 관세율(Average Nominal Tariffs)

(단위: %)

연도	농업	화학	섬유/제지/ 목재/가죽	철/비철	기계/장비	평균
2014	11.92	4.07	9.24	5.75	5.80	7.12
2015	11.83	4.07	9.24	5.75	5.79	7.10
2016	11.83	4.07	9.24	5.75	5.79	7.10
2017	11.48	4.34	9.36	5.85	7.83	7.79
2018	11.49	4.34	9.36	5.85	7.79	7.78
2019	11.49	4.33	9.36	5.84	7.68	7.74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7월 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2006년 2월 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년 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별도로 물품가격의 20%가 종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세제개혁으로 인해 자동차, 유류, 설탕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물 등의 품목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특별소비세 상승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7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 (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 등을 통해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했는데 2008년~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 페소/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했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8월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가 4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페소, 2년차에 3,178페소, 3년차에 3,019페소, 4년차(2018.3~2019.3.23.)에 2,868페소가 부과되었다.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 코드 4805.24/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의 판지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기업의 수출액은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째(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2019.6.18.~2020.6.20.) 845.80페소가 부과 중이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2015년 5월 11일부로 필리핀 정부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5월 27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년 5월~2016년 4월) PHP 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5월~2017년 4월)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 640(약 14달러)가 부과되었다.

2019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90.00)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며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부터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한국정부는 폐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동 품목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하였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년 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셰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로 적용하고 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수입차에 대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수입 억제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하였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빅(Subic) 경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년 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년 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블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5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식품,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2018년 11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 :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따라 공공사업(국제경쟁입찰 및 일부 인프라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필리핀인의 필수 참여 지분율이 기존 75%에서 60%로 축소되었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 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

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또한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는 2019년 상반기(1월~6월) 137억 3000만 페소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전체 압류액 236억 페소의 60%에 육박한 수치로 압류 제품의 대부분은 담배, 주류, 약, 개인용품 등의 제품으로 밝혀졌다.

정부 보호정책 아래 메트로 마닐라의 대형 소매업자들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 CD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이고, 길거리 소매상의 불법 복사본 판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 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11차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 2018.10)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었던 매스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하여 개방되었고, 사설경비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완전 개방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투자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조정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면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되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은 최소 10만 달러, 필리핀투자유치기관인 PEZA, CDC, SBMA 등록시 4만 달러, 100% 수출기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며,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1천만
트럭 조립	8백만
모터사이클 조립	2백만

자료: Executive order No.156 of the Philippines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년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다. 조세는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86년 11월 9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하였다.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 통과 시, 2020년부터 법인세가 29%로 조정되고 10년에 걸쳐 20%로 낮아질 예정이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 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 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경쟁 관련법으로는 필리핀경쟁법(The Philippine Competition Act(R.A. 10667))이 존재한다. 동 법은 필리핀 시장 내 사업자들의 ▲반경쟁 담합(가격, 생산량, 유통담합 및 부정입찰 등) 및 ▲공정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약탈적 가격책정, 차별 등),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반경쟁적 인수·합병 방지 및 규제(일정규모 이상의 인수·합병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에 통지 의무 규정(2019.3.1.발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집권 후 10개항의 사회경제 정책방향(10 Points Socioeconomic Agenda)을 발표하고 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개혁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세개혁은 균형성장, 빈부격차 완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등의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2017년 9월 1차 종합조세개혁법안(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통과 후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법인세 개편 등이 주요내용인 2차 조세개혁법안(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 CITIRA)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차 조세개혁 내용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인상이 주로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존 연 1만 페소 이하에도 5%를 부과하였으나, 연소득 25만 페소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5만 페소 이상은 초과액에 따라 20%~35%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은 부동산가(Net Estate Value)에 따라 0~20% 차등 부과하던 것을 부동산가의 6%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였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기존 10만 페소 초과 증여분에 대해 2~15%까지 차등 부과하던 것을 25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 6%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액이 연 매출의 70%를 넘는 수출중심 기업에 대한 매출은 기존 면세에서 12%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 부가세 면제대상 거래도 축소하여 임대차 거래 면세한도를 기존 월세 1만 페소에서 1만5천 페소로 상향하고,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도 연매출 1.5백만 페소에서 1.9백만 페소로 상향하였다.

한편, 소비세를 인상하여 유류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4.35 페소에서 7페소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10페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디젤유는 경우 기존 면세에서 리터당 3페소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6페소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00만 페소 자동차 기준으로 60만 페소의 4%에다 60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탕세를 인상하여 과당음료의 경우 리터당 6페소, Corn syrup은 리터당 12페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담배의 경우 한 갑당 30페소에서 2023년까지 40페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4년 이후에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등 광물의 경우 톤당 10페소인 석탄 소비세를 2018년 50페소, 2019년 100페소, 2020년 이후 150페소로 인상하도록 개편하였다.

2차 조세개혁 방향

2차 조세개혁법안(CITIRA)은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증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현재 30%인 법인세를 1%씩 완화해 2029년에 20%까지 완화하는 초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하월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하월 통과 후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2차 조세개혁법안에는 투자관련 조세 인센티브 축소로 대표되는 조세인센티브제도의 합리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19년 1월 이후 수출 또는 전략투자 관련 인센티브에서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만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지방세 형태의 투자인센티브 부여는 중단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모든 조세 인센티브는 FIRB(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에 의해 승인되어야 지속가능 하며,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3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단일화 된 인센티브 체계로 통합하여 모든 IPA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정의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인센티브 혜택기간을 제한하여 기존 법인소득세 (Income Tax Holiday: ITH) 수혜기업은 최대 5년까지만 법인세 면제가 허용되며, 면제혜택 연장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총소득의 5% 특혜를 주는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 (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9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필리핀 비즈니스환경 개선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5월 28일 국가 경쟁력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고를 위한 법인 ‘비즈니스환경개선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 RA 11032)에 서명했다.

동 법의 주요 요소는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기관 ARTA(Anti-Red tape Authority) 설립, ▲민원인과의 접촉금지정책(Zero-contact) 도입, ▲행정서류 접수에 대한 고유 번호 부여 및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정보 제공, ▲민원 처리기간 축소(성격에 따라 3일~최대 20일), ▲민원 처리기한이 초과된 민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사업 허가 및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Business One Stop Shop: BOSS) 도입,
▲사업체의 존재 유무 및 유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필리핀 비즈니스 데이터
은행(PBD) 설립(정보통신부 소관),▲담당 공무원의 상기 법 위반시 처벌
수준 강화(2차 위반 시 해임 등) 등이다.

호주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7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GDP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튼튼한 경제 기초를 자랑한다. 1인당 GDP도 5만 4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의 GDP 비중이 약 65%에 달한다. 호주의 주요 산업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농업, 광업, 보건, 관광 등이 높다. 실질 총부가가치(GVA) 성장률 기준으로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금융, 광업, 보건·복지 순으로 높다.

▶ 호주의 산업별 실질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VA 비중	2.6	6.4	6.3	64.6

자료: Austrade

2019년 기준 호주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18.9%로서 선진국 평균 72.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호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DI)의 총액(Stock)은 2018년 기준 6,829억 달러이다. 호주의 수출은 지속 증가해왔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교육서비스, 관광서비스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해외여행, 정제유, 승용차, 통신

장비 순이다. 호주의 교역은 2018년 기준 총 8천5백억 호주 달러이며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기구(APEC)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7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18년 기준 중국(25.2%), 일본(10.1%), 미국(8.7%), 한국(4.8%) 순이다.

▶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Stock) 산업별 비중

(단위: %)

	광업	제조업	금융	부동산	기타
FDI Stock 비중	37.8	11.1	11.1	10.6	29.4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DFAT)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보유국으로서 금, 철광석, 우라늄, 천연가스 생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10대 농산물 생산자이며 호주산 농산물은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융 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다. 교육·관광분야에서는 세계 3위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세계 11위의 해외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제에 광산 붐(Mining Boom)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이어 2014년 국제유가가 마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호주내 자원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분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Mining Boom 쇠퇴 이후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60%를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로서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014~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EU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산업 환경

광업 및 에너지산업

광산 붐(Mining Boom) 이후에도 광업은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규모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을 보유·생산 중인 에너지·자원부국으로 OECD 국가로는 드물게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2018년 기준, 자원·에너지를 수출액은 1,415억 호주달러로 호주 전체 상품수출의 84%를 차지한다.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				2018년 호주 생산량 및 세계 비중(%)	
		호주(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144,818	1,035,012	14	3위	301.1	7.7
우라늄	톤U	1,670,000	5,404,000	30.9	1위	6,973	11.0
철광석	백만톤	50,000	170,000	29.4	1위	835	53
동	천톤	88,000	790,000	11.1	2위	941	4.4
아연	천톤	64,000	230,000	27.8	1위	949	7.4
니켈	천톤	21,000	74,000	28.4	1위	150	6.2
천연가스	Bcm	128	6,831	1.9	12위	139.9	3.6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6(석탄), 호주산업혁신과학부 Resources Energy Quarterly 2019.6(우라늄)

재생에너지는 호주 전체 전력생산의 17%를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 등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은 2019년 이후 누적설비용량이 5,000MW를 넘어서고 대규모(5MW 이상) 태양광발전은 2018년 약 7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1%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6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주요 수출 지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요증가로 인해 농업(Dining Boom)이 광업(Mining Boom)을 대신하여 호주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2018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총 531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약 1.9% 감소하였다.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수준으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에 호주내 생산공장을 폐쇄하여 향후 호주내 제조업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와 함께 정부도 제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our'라고 불리는 4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호주 금융기관 보유

자산총액은 7조 5천억 호주달러이며, 운용자산은 1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 관광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5%씩 증가 중이며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1위의 해외관광객 유입국이다. 연간 방문객이 881만 명에 달하고 약 5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 방문객수를 당초 6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2배 늘리는 'Tourism 2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역시 호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3위의 해외유학 유입국가이며 2018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이 302억 호주달러로 총 서비스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2018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8위의 수입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편 호주는 한국의 11위 수출국, 6위 수입국으로서 7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2018년 한국은 총 96억 달러를 수출하고 207억 달러를 수입하여 1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4년	2015	2016	2017	2018
수출	102.8	108.3	74.8	198.6	96.1
수입	204.1	164.4	151.6	191.6	207.2
교역규모	306.9	272.7	226.5	390.2	303.3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61.4억 호주달러), 자동차(27.3억 호주달러), 전기기계 및 장치(2.5억 호주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73.5억 호주달러), 천연가스(46.1억 호주달러), 철광(38.1억 호주달러), 쇠고기(13.7억 호주달러) 등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49.3억 달러를 호주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호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누적 47.5억 달러이다.

▶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도착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	누계
금 액	2,793	1,673	899	1,306	698	468	14,933

주: 누계는 1968~2018 합계금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WTO에 따르면 호주는 2018년 기준 평균관세율 2.5%, 농산물 관세율 1.2%, 비농산물 관세율 2.7%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2%)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년 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

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⁹⁴⁾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할 예정(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 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94)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밀폐되지 않은 고기,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⁹⁵⁾.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33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8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95)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3건은 반덤핑 조사 3건(5개국), 덤핑관세부가 연장여부 조사 4건(8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9건(11개국), 재조사 1건(1개국), 면제 조사 6건(10개국)이다. 이는 2018년 1월 대비 조사 중인 품목은 9개가 감소(32건 → 23건)한 반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부와 품목은 변동이 없는 수치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8건) 중 15건(전체 대비 54%)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5건⁹⁶⁾,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5개 품목⁹⁷⁾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5개 품목 중 4개가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인 5개 품목 중 4개(80%)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반덤핑 관세 계산은 복합과세(Combination Duty)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 = 정상가격-신고수출가격)에 덧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신고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Variable Amount)만큼 추가하여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핑마진을 줄이는 노력 뿐 아니라, 차액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덤핑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감소 등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 고용효과, 산업형성 저해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호주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96) 반덤핑(고밀도 폴리에틸렌), 반덤핑관세부와 연장여부(철강재파이프), 재검토 및 취소(아연도금강판, 철강재파이프), 면제(열연구조선택)

97)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열연구조선택(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A4용지

반덤핑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185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장관(산업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시 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호주 내 수요기업들이 조사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수요기업들이 호주 제품과의 차이점, 호주 수입의 필요성, 산업 무(無)피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공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심사⁹⁸⁾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자산의 경우 2.66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주달러, 농기업 등은 58백만 호주달러 초과 투자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 99)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억 66백만 호주달러가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다. FIRB는 거의 모든 사전 심사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2.5억 호주달러에서 11.54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98)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0.78억 호주달러이다.

99)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57백만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1.34억 호주달러 미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 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가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였던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해왔으며,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에도 가입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년인데, 일반특허는 5년, 혁신특허는 2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수수료를 지불

해야 한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trade marks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한편 2003년에는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개관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18년 기준 홍콩의 무역액은 1조 1,384억 달러로 우리나라(1조1,401억 달러)와 경쟁하는 세계 Top 10 무역국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훨씬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들보다 많은 무역액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 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전통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 port)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정치적 안정, 충분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집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기업들이 광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공정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투자액은 광둥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무역서비스,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 전문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어 2012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5%, 서비스업 비중은 93%까지 증가하여 극단적인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유통, 무역, 숙박업 (29.0%),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2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9.5%)과 기타서비스업(10.3%)도 그 뒤를 잇고 있다.

홍콩의 산업구조가 극단적으로 서비스업을 증시하고 제조업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도 존재하나, 유심히 살펴보면 홍콩의 서비스업은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8년 홍콩의 상품 수출은 5,331억 달러였는데 이중 98.9%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다. 이중 55%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18년 홍콩의 수입액은 6,053억 달러였는데 이 중 57%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외 무역액 1조 1,384억 달러를 기록, 세계 7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교역액 (2018년 1조1,401억 달러)이고, 러시아, 캐나다 등도 홍콩보다 작은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콩 무역액은 2015년과 2016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들어 각각 8.4%, 7.9% 증가하였다.

▶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6/'15	'17/'16	'18/'17
총 수출	4,622	4,600	4,969	5,331	-0.5	8.0	7.3
수입	5,187	5,139	5,586	6,053	-0.9	8.7	8.4
(재수출)	4,562	4,545	4,913	5,272	-0.4	8.1	7.3
무역액	9,809	9,739	10,555	11,384	-0.7	8.4	7.9
수지	-5,65	-539	-617	-722	-	-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의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류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Offshore Trading의 규모는 6,436억 달러로 홍콩을 거쳐간 무역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주강삼각지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다시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2018년 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장비·기계류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이르고 있는 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용품 등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4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만 등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최대 무역품목인 반도체가 2018년에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14.3% 증가하였으며, 전화기 등 통신장비(2.4%), 기계류(10.9%), 컴퓨터 부품(10.7%)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 화장품 수출은 27.9% 증가, 주얼리 품목 수출은 7.8% 감소하였다.

▶ 홍콩의 주요 교역 국가별 수출입 금액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변화	국가	금액	비중	변화
	전체	5,331	100	7.3	전체	6,053	100	8.4
1	중국	2,932	55	8.6	중국	2,736	45.2	7.7
2	미국	457	8.6	8.1	대만	587	9.7	7.2
3	인도	172	3.2	-15.3	한국	415	6.8	10.6
4	일본	166	3.1	0.7	일본	358	5.9	1.7
5	대만	110	2.1	-3.6	미국	255	4.2	4.0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對한국 무역액은 우리나라 무역협회와 통계치 상이)

홍콩과 우리나라의 교역도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가는 제4대 교역국가로서 2018년 수출금액은 459.9억 달러, 수입금액은 19.9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플라스틱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류의 수출이 최근 연간 30~40%의 성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10% 감소율을 보이며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졌다.

▶ 한·홍콩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277.6(-14.9)	272.5(-1.8)	304.2(11.6)	327.8(7.8)	391.1(19.3)	459.9(17.6)
수 입	19.3(-6.3)	17.5(-9.3)	14.9(-14.3)	16.1(8.1)	18.8(16.4)	19.9(6.3)
총교역	296.9(-14.5)	290.0(-2.3)	319.2(10.0)	343.9(7.8)	409.9(19.3)	479.9(17.1)
수 지	258.3	255.0	289.3	311.7	372.4	440.0

주: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홍콩 상위 15개 품목별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	수입액	비중(%)	증감(%)	수지
전자집적 회로	25,325	64.8	75.0	725	38.6	55.9	24,603
기계류와 부품	1,395	3.6	134.9	169	9	55.1	1,226
석유제품류	1,161	3.0	22.9	7	0.4	100.6	1,154
화장품류	964	2.5	-10.6	5	0.3	17.6	959
자료처리기기	757	1.9	65.7	19	1	89.2	738
선박	693	1.8	-63.0	33	1.7	89.7	660
통신기기	602	1.5	-88.1	72	3.8	-34.4	530
액정디바이스	484	1.2	-13.3	19	1	67.9	465
다이오드/트랜지스터	401	1.0	14.1	28	1.5	-23.0	373
스티렌 중합체	373	1.0	28.7	0.7	0	-74.7	372.3
축전지	317	0.8	-4.9	6	0.3	-56.7	311
인쇄회로	309	0.8	22.5	8	0.4	-28.6	301
은(비가공)	275	0.7	-41.0	14	0.7	345.5	261
광섬유	261	0.7	50.0	7.7	0.4	25.4	253.3
방향제	227	0.6	72.8	1.5	0.1	201.5	225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도 활발하다. 2018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1,9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 수출액은 1,143억 달러, 수입액은

815억 달러이다. 2018년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 수입은 4.9% 증가하였다. 홍콩 서비스업 교역 중심에는 여행업, 무역, 물류, 유통업, 금융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서비스 수출액 중 여행업의 비중은 32.0% 무역·물류·유통 분야는 29.2%, 금융은 19.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수출 대상은 중국(39.9%), 미국(14.3%), 영국(8.2%), 일본(4.3%) 순이다.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 각국과 경쟁하면서 국제 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홍콩 경쟁력의 원동력은 크게 비교우위적 요인과 경쟁우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둥어, 영어) 등을 손꼽힌다. 이러한 점들은 홍콩이 오랜기간 영국의 식민지로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진 비교우위적 측면 외에도 홍콩 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도 홍콩이 다른 경제권에 비해 가지는 경쟁우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항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10~20% 수준의 관세와 15~20%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사치품에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러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홍콩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진출 도시 기준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단일세율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

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 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도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나 장애물을 만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국내기업과 분쟁이 있을 경우 해외기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요인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은 안정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업이 가지는 위험요인을 크게 해소시켜준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홍콩은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7년까지 12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2016년 양측은 이 협정을 중국본토 전역으로 확대하여 CEPA의 서비스 무역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Commercial Presence) 134개의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국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 외자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중외 합작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017년 중국은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에 맞추어 6월 30일 중-홍간 투자자 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역시 CEPA의 틀 안에서 홍콩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홍콩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양도 및 과실의 홍콩 송금 등을 허용함으로써 홍콩투자기업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차례로 체결된 중-홍간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분야의 보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홍콩과 중국간 경제 교류의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면서 나가고 있다.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홍콩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기업 운영 실적이 있으면 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내에서 3~5년간 사업이력을 보유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약 1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조정, 브랜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7년 연말에 ASEAN과도 FTA를 체결했다.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 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설치, 2014년에 9억 달러를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학에 각각 4백만 달러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틀(新界)지역에 구축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의 산업 및 무역을 위한 정부기구 및 관련 기구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은 기업과 대학의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Invest H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는 홍콩과 다른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외교권이 없는 홍콩정부로서는 ETO를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ETO 및 ETO 직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 상공회의소 (HKGC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와 홍콩 중화총상회(HKCGCC: 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들 수 있다. 상공회의소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콩상공회의소(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홍콩중화총상회(HK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로 약 6,0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전 회장인 Dr. Jonathan Choi Sunhwa Group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으로서 한국정부의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1,700여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상공회의소(KCCHK;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와인, 알코올 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입의 2.1%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홍콩 와인경매 시장은 뉴욕과 런던 시장을 넘어섰으며, 2015년 10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소더비(Sothebys) 와인 경매시장 매출이 약 160만 USD로 2006년 뉴욕 경매에서 세웠던 약 100만 USD를 능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468/kg
수입시가	HK\$ 2455kg
수입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된 그외 모든 담배	HK\$2309/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자료: 홍콩세관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내야 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

홍콩세관은 더 많은 환적 화물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FTA 환적 원활화 제도를 2015년 12월 20일에 출범시켰으며, 이 자발적인 제도를 통해 무역업자들에게 세관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적 물품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입허가(라이센싱)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선싱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이선싱은 홍콩이 거래국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보안상의 목적으로 혹은 내부의 안보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은 무역·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공업무역서)의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수출입은 홍콩의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무역·산업국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라이선싱 혹은 인증 제도를 통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라이선싱 요건은 주식(主食)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라이선싱의 목적은 오존층 위협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물질 규제에 있다.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에 의한 수출입 라이선스 규제가 필요하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직물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쌀	필요	필요
비정제 다이아몬드	필요	필요
전략 물품들	필요	필요
오존 파괴물질	필요	필요

또한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의 위임을 받은 정부 부서에 의해 수출입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라이선싱 담당기관
중국산 약초 및 중국 특산 약품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냉동 육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살충제 이외의 위험 화학품	필요	필요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기구	필요	필요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살충제	필요	필요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약학품 및 의약품	필요	필요	Department of Health
방사성 물질 및 방사능 처리 기구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직물 통제 정책

2005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직물·의류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부합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직물과 의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홍콩의 직물·의류산업은 쿼터제도 없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4년 11월 21일 정부에 의해 모든 면허제도가 철폐되어 직물과 의류의 수출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전략 물품 규제

무역·산업국은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당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역·산업국은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센터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라이센싱을 발행하는 서비스 외에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5개 기관들은 무역·산업국 외에 원산지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증 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이다.

-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원산지 인증서 발행은 Import and Export Ordinance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의 수출규제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다음 GACO들로부터 발행된 원산지 인증서들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된다.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rtificate of Origin Processing
-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New Zealand
-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SPS(위생검역)

식품 환경보건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FEHD는 제한품목(중국 찻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를 내준다. FEHD는 또한 주류허가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한다.

홍콩은 육류, 채소류 등 식품 수입 시에는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홍콩 수입업자가 수입 품목에 대하여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절차여서 수출업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입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품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협조할 수 있다.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들은 지정된 몇몇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제조업체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은 2012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들은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경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용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가 필수다. 「EIA법」에 따라 20헥타르 이상, 10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EIA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상의 주요 환경문제와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홍콩정부는 Green Manager Scheme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환경관리를 촉진한다. 모든 정부부서들은 지정된 green manager들이 있으며 연간 환경보고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래로 모든 연간환경보고서는 홍콩정부가 대기 청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Clean Air Charter”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홍콩 내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을 촉진한다.

New Territories 교외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2년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10가지 법들이다.

- 「폐기물 처리법」
- 「수질오염 규제법」
- 「대기오염 규제법」
- 「소음공해 규제법」
- 「오존층 보호법」
- 「해양투기 금지법」
- 「환경영향평가(EIA)법」
- 「유해 화학품 규제법」
- 「상품 환경책임법」
- 「차량 공회전 금지법」

홍콩정부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 관련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준수 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을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와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그리고 사용을 규제한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가 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지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 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2018년 8월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시행하였다.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위협종을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입규제

홍콩은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권서와 해관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권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하며,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보조품 조사 및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관을 통한 상표권 보호등록은 (1)신고접수, 예비심사 (2)서류 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단속 순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호기간 4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필요), 디자인권은 5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저작권침해와 위조품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서 해당 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매년 9개의 무역협회와 소매상들은 지식재산권부서의 “No Fake Pledge” 계획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교육(public education)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식재산권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지역 내의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알린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 소프트웨어부문도 지원하여 기술개발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한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2018년 7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44.2억 HKD를 편당하여 총 8,021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8년 7월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트,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의 연구 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 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2018년 7월말까지 총 18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2억 HKD 가 지원되었다. 2012년 2월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총 연구개발 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했다(2016년 2월 24일 개정).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월 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18년 12월 현재 모두 1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I)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 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4만개로 추산되며, 이는 홍콩 사업기관의 98%, 민간 노동인구의 45% (130만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축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책을 2001년 도입하였다.

2018년 6월 홍콩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홍콩의 중소기업을 지원(스타트업 지원, 사업기회 제공, 경쟁력 제고 등)하기 위해 HK\$ 25억불(US\$ 3.2억불) 상당의 자금지원 방안을 통과시켰다.

▶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프로그램	대출보증프로그램 (SGS)	시장확대자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자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자금 (TSF*)
목적	대출참여기관 (PLIS)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 희망 중소기업은 대출참여기관(PLIS) 에 신청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대출종류) (i) 시설 및 설비 구입자금 대출 - 경영범위에 관련된 시설 및 기계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 /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구입 및 직원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불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p>구입 목적</p> <p>(ii) 운영자금 대출</p> <p>-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 및 비용지출을 지원</p> <p>(보증규모)</p> <p>- 보증금액: 대출액의 50% (최대 HK\$600만불 또는 US\$77만불 상당)</p> <p>- 담보기간: 최대 5년</p> <p>- 기업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동일한 담보대출을 1회 추가사용 가능 대출</p>	<p>- 중국본토의 박람회 / 전시회 참가지원</p> <p>-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관련 출판물에 광고 게재</p> <p>- 해외시장에서 진행 되는 전자 플랫폼/ 미디어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사 개최</p> <p>-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이트 구축</p> <p>(지원금액)</p> <p>- 누계 기준 최대 HK\$40만불 (US\$51,300)</p> <p>- 또는 승인된 총 지출의 최대 50% 또는 HK\$10만불 (US\$12,800)</p>	<p>(지원금액)</p> <p>-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불 (US\$256,400)</p> <p>-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불 (US\$128,300)</p> <p>- 기간 : 최대 2년</p> <p>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p> <p>-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불 (US\$256,400) 또는 승인된 10개 프로젝트</p> <p>-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불 (US\$128,300)</p>	
지원규모	HK\$262억불 (US\$33.6억불)	HK\$62.5억불 (US\$8억불)	HK\$45억불 (US\$5.770억불)	HK\$ 6.7708억불 (US\$ 8,681만불)
수혜기업	31,943개	48,657개	1,730개	397개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이 밖에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자문센터(SUCCESS)'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관세/물품세국 하의 홍콩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

들은 공인경제주체(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BT(기술장벽)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재,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 약초에 대한 정품테스트, 식료품에 대한 위생관리 인증, 건축 자재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 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페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광둥 협정(Agreement between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 2014년 12월 체결)에 따라 홍콩의 테스트 기관은 중국에서 지정된 기관과 함께 홍콩에서 디자인되거나 시험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공동 검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시험/인증 관련 업체의 광둥성 지역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7년에는 4,000건 이상의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68건을 기소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서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2015년 기준 홍콩에는 총 640곳의 사설 실험실 및 인증/검사기관이 있으며, 13,580명의 관계자가 종사하고 있다. 동 산업이 홍콩 GDP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70억HKD에 달한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여 허위묘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이 홍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4%, 2010년 2.8%, 2011년 1.8% 정도의 낮은 비율을 유지한다.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의 13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40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 경쟁력 이외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 서비스 또한 고려한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하고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서비스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 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 HKD을 초과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한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년 행정수반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최근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정부에 의한 친환경 조달 규모는 11.3억 HKD로 연간 전체 조달규모의 40%에 육박한다. 2014년도 친환경 조달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40%는 2011년도 비중 22%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는 홍콩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야이다.

민간항공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국제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는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홍콩과 중국내 다른 지역 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허가는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텔레비전 방송	홍콩 내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이 홍콩의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참여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홍콩 내의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폭넓은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합법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출입 서류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홍콩에 들어오거나 홍콩으로부터 나갈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는 홍콩이 국제적 의무(공중보건, 보안, 환경,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를 준수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정부의 전자거래서비스는 무역업자들이 전자상으로 특정 무역 관련 서류들을 제출도록 하여 효율적, 환경친화적으로 서류작업을 한다.

미얀마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미얀마는 1인당 GDP가 2018 기준 1,298달러로 세계 최빈국중 하나이다. 2019년 11월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수출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5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정부 출범 직후인 2016년 이후 교역량이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에는 신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시장이 호황을 맞음에 따라 철강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2019년 11월 기준 수출주력 물품은 수송기계(9,450만 달러), 식물(8,149만 달러), 섬유제품(4,941만 달러), 산업기계(4,753만 달러) 순으로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90.0%↑), 철강제품(162.9%↑) 등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에도 좌측핸들 승용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발표됨으로써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또한 동 규제를 통해 미얀마 진출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제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발전기, 전력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필라와 경제특구 개발, 가스 발전소 건설, 호텔, 상업용 빌딩 건축 등 대형 프로젝트 투자 증가 세로 관련 기자재의 수요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수송기계, 식물, 섬유제품 등의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H공사가 양곤 인근에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2019년 9월 착공식 실시) 될 경우 철강, 건설 기자재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서구세계의 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에 따라 미국, EU로 수출이 재개되었다. EU의 경우 2013년부터 특혜관세(EBA: Everything But Arms)가 부활함에 따라 봉제, 가발, 가방, 악세사리 등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얀마에서 제조된 섬유제품 등 CMP 가공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미얀마산 참깨분, 콩, 잎담배, 냉동어류 등 농수산물 수입도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언더밸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 시 싱가포르나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출입품목에 있어서도 실제 수출입 되는 품목이 아닌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바꾸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한-미얀마 간 교역이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수입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5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 전년대비 15.8% 증가한 5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라카인 사태와 관련된 UN의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에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는 점이 지적받으면서 EU는 對미얀마 EBA 혜택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8.0%	7.0%	5.9%	6.7%	6.8%
소비자물가상승률	5.1%	10.0%	7.0%	6.9%	5.9%
상품수출(FOB) (백만 달러)	12,523.7	11,136.5	11,998.0	14,850.6	15,380
상품수입(FOB) (백만 달러)	16,632.6	16,577.8	17,211.0	18,686.9	2,1140
경상수지	-1.419	-3.01	-2.475	-3.532	-5.760
환율(Ks/USD)	984/1	1,161/1	1,234/1	1,360/1	1,430/1

출처 : Country Report, EIU

관세와 상업세

관세와 상업세는 수입시점에서 동시에 부과되며, 원자재 기타 수출에 유용한 수입품의 관세는 낮으나 사치품의 관세는 높다. 관세는 4년마다 바뀐다. 관세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부과되며, CIF 가격의 0.5%를 양륙수수료(Landing charge)로 추가한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40%이다.

관세의 경우, 명목관세는 평균 5%정도로 매우 낮으며,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 등재되어 있고,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이 나와 있다.

미얀마는 개방, 시장경제, 무역자유화를 주창한다. 미얀마는 GATT 및 WTO의 창설멤버로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 종전 국가가 독점하던 무역을 개인이나 기업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 5개국과의 국경무역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국경무역국 및 15개 현장사무소를 두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술적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액만큼 수입할 수 있는 권리(Export earnings)를 부여한다.
- 농업 및 산업 장려를 위해 농기계, 비료, 살충제, 농약, 의약품,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Customs duty)와 상업세(Commercial Tax)를 면제한다.
- 미얀마 연방상의(UMFCCI)를 민간부문의 교역 및 산업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미얀마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종의 소비세인 상업세를 부여하고 있다. 미얀마는 내국상품 생산 촉진을 위해 86개의 상품(주로

농산품 및 필수품)의 모든 해외에서 수입에 대해 5%가 부과된다(미얀마 생산시 상업세 면세). 또한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8~10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최근 미얀마 관세청은 상업세(Commercial Tax) 면세 상품 수를 79개에서 86개로, 면세 서비스 수는 23개에서 29개로 확장해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6년 1월 특별 상품 세율법(Special Goods Tax Rate Law)이 통과되어 2015년까지 상업세에 특별 요금으로 포함됐던 것을 분리해 상업세에 특별 상품 세율(Special Goods Tax Rate)을 추가로 적용 부과하고 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 1일부로 한-ASEAN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됐다.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양허안의 이행시기는 다소 연장된다. 일반품목의 경우 2015년까지 0~5% (일반품목의 50%)로 인하, 2017년까지 일반품목의 90%에 대해 관세 철폐, 2020년 일반품목 전체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된다. 민감품목의 경우 2020년까지 20%, 2024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고 민감품목의 경우 2024년까지 20%로 관세를 인하될 예정이다.

▶ 일반 품목군 관세인하 스케줄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미얀마의 관세율 분포를 보면 전체 5,472개 품목의 관세는 대부분 0~5% 수준이며,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율이 35%인 품목이 2007년부터 관세 인가가 적용됐다. 그러나 관세가 35~45%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대부분 자동차 관련 품목으로 민감품목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외에 0~200%에 이르는 상업세(Commercial Tax)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세는 낮은 편이나 상업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ASEAN FTA에 따른 한-미얀마 간 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2007년 11월에는 한-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무역협정에 양국이 서명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서비스 무역 협정 본문, 서비스 양허안 등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을 통해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관심 분야를 포함한 다수 분야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이는 GATS보다 월등히 높은 자유화 수준이다.

미얀마는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손해사정·보험계리, 대표사무소), 통신(전자 및 음성 메일, 전자데이터교환, 텔렉스), 해운(여객 및 화물 운송), 운송(화물처리 및 창고), 항공(유지보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등의 분야를 개방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후발 개도국으로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광범위한 분야를 개방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연구해 선별적으로 진출하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미얀마에 대한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부속서 2)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미얀마는 FTA에 대한 부분들이 상무부와 다른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며, 적용 규정 그리고 품목별 및 적용범위에 대해 수출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SEAN 간 FTA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한-ASEAN FTA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 잘 제시가 되지 않아 미얀마 내부에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GSP 수혜국 재지정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경제제재 관련 6개 행정명령을 폐지하였으며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종료되었다. 미국제재 해제에 따라 미얀마의 대미 수출규모는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미얀마는 대미 수출 시 5,000여 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5,000여 개 수혜 품목 중 미얀마의 주력 수출품목인 봉제관련 품목은 99개이며 농산품은 1,246개가 포함되어 있다.

수출입허가제 폐지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 별로 사전에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증가 및 전체적인 수출입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허가제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2002년부터 외국계법인에 대해 제조를 위한 수출입이 아닌, 상품의 수출입 및 유통만을 위한 무역업은 금지하고 있다. 그 해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계획은 발표된 바 없다. 다만 미얀마 정부는 2013년 9월 11일 샘플 및 홍보용 제품에 대해 500 달러 이하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과거 수입 기계에 대해 신제품 기계(Brand New)와 반품 기계(Reconditioned)에 대해서만 허가해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중고 기계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이는 2011년 중고 자동차 수입 이후로 두 번째로 중고 제품 수입을 허락한 것이며, 향후에도 중고 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품목에 대한 제한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중고 수입기계 허가에 대한 연장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

2015년 8월부터 미얀마에서 수입제한 방식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로 변경되었다.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 4,405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6년 8월에는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150개의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2월 네거티브 리스트로 3,345개 품목을 공지하였다. 여기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기름 등의 농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등 인증 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도로의 경우, 한국과 같이 왼쪽 운전(Left Hand Drive)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많은 중고차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른쪽 운전(RHD) 차량이 상당수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0월 26일 미얀마 상무부는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해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에 대해 미얀마어로 라벨링 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에는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 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시장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미얀마 상무부가 2013년 9월부터 수출입 사전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한 1,928개의 HS코드별 품목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품목에서 인증서 필요 없이 수출입라이선스 제출이 가능하다. 반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축산물, 농약, 씨(앗) 및 비료는 관련부처의 인증서를 받은 이후에 수출입라이선스를 제출할 수 있다.

COA(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COA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 허가(추천서)

미얀마는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Recommendation)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수출입업체 등록 정책

미얀마에서 수출입을 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수출입업체로 등록

(Registration)해야 하며 수출한 만큼만 수입권이 보장된다. 미얀마 회사법 또는 특수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합작투자법인(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의 경우 수출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등록비는 20만 차트(약 200달러)이며, 연장등록비는 1년 5만 차트(약 50달러), 2년 10만 차트(약 100달러)이다. 수출입등록업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금지품목 또는 국영기업 독점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체 수출실적(Export earnings) 범위 내 수입 또는 기타 특별히 허가된 범위 내 수입
-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국경무역. 단, 외국기업은 제외
- 비즈니스 여권의 신청
- 비즈니스 교섭을 위한 외국인 초청

또한 수출입 라이선스가 2016년 6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해져, 현재 28개의 수출품목과 15개의 수입 품목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봉제업 관련 라이선스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라이선스는 www.myanmartradenet.com.mm 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무역구제 조치

미얀마의 교역정책을 규정하는 관련 기본법은 Myanmar Imports and Exports(Temporary) Act(1947년)이다. 미얀마의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소관이다. 그러나 중요한 수출이나 수입, 투자 등 민감한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등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상무부는 무역제도 및 관리를 관장하는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과 농산물 거래를 관장하는 국영기업인 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이 있다. 미얀마에서 중앙행정부처의 국(局)은 Directorate 또는 Department로 부른다.

미얀마는 수입쿼터 및 반덤핑제도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순수한 목적의 무역업(예: 상사업)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법, 반덤핑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관련 법률이 미비한 관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얀마는 통관서류 제출, 서류의 정확성 검토, 수입규정 위반여부 검토, 기존 수입가격을 고려한 상품가치 선정, 관세 및 세금 결제액 부과, 서류 기재내용과 실제 수입품목간의 비교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반출이 허용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계는 기존 수입가격을 고려한 상품가치 선정 단계로, 세관에서는 과거 동종 품목의 수입가격, 카탈로그, 필요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새로운 물품은 상품가치 산정에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경우에 따라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수입 절차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

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미얀마의 경우 수출입을 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수출입업체로 등록(Registration)해야 하며 수출한 만큼만 수입권이 보장된다. 미얀마 회사법 또는 특수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합작투자법인(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의 경우 수출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등록비는 20만 차트(약 140달러)이며, 연장등록비는 1년 5만 차트(약 35달러), 2년 10만 차트(약 70달러)이다.

원산지 규정

미얀마는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업체들에게도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 한-ASEAN FTA에 따라 AK Form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달 관련

정부조달은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되나, 입찰의 경우에도 대개 발주처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정보를 먼저 주고 물품납품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지면을 통해 공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입찰에 참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인맥을 구축하거나,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크고 작은 정책결정은 법규정보다는 대부분 최고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하므로, 최고 책임자와의 인맥형성이 중요하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조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며, 행정부처별로 조달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입찰건이 있을 경우, 매체를 통해 입찰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정보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처별로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얀마는 TRIPs 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지 않고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계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미얀마의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은 Myanmar Copyright Act(1914), Patents and Designs Act(1946)가 있으며 상표권 (Trademark)에 관한 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형법(Penal Code)에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미얀마는 GATT, WTO, WIPO 및 ASEAN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들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제가 미약한 편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5년 7월 국영신문 The Mirror를 통해 산업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작권 및 특허권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아직 법안발의는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Patent and Trademark Law)을 갖고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은 없다. 특허권 및 상표권은 미얀마 농업축산관계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Settlement and Land record department)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patent and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에서 등록 한다.

서비스 장벽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이 순수 무역업을 금지해 소규모 투자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다만 2015년 말 비료, 농약, 씨앗,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한해 외국인과 현지인이 합작(JV)하여 진행하는 회사에게는 무역업을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2016년 7월에는 건축자재 무역업 또한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미얀마에서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의 강력한 제재에서 미흡하지만 일정 품목에 대한 해제를 보인 것으로 점차적으로 JV기업에게 품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제한 품목 또한 미얀마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미얀마에서의 주요 수입품으로서 미얀마에 수출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업을 허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통신·기술·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 방송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농업 관련 분야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비농업 관련 분야 1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예상 투자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주민 또는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수업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에 관련해 권리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시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대해 점유자가 점유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규정은 정부 부처 및 당국이 책임을 지고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다.
 - 토지사용권리 및 재임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받는 경우는 제외
 - 투자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제외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미얀마의 경우 외국인 지분아 35%를 초과하면 외국회사로 취급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금지품목의 경우 지분이 35%를 초과할 수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미얀마에서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설립할 경우에는 일부 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가 동일하나, 미얀마 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미얀마투자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승인 등이 추가되는 등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진다. 한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미얀마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등록 및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순수 무역업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일부 품목 무역에 대해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또한 무역 법인으로 간주돼 신규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역 법인의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지사 및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인 고용 의무

미얀마에서는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비숙련 노동자는 반드시 미얀마인을 채용해야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 승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품 100%를 수출하는 임가공(CMP)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이하나,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하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주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기존 공장 임차, 산업공단 내 부지임차 후 건축 등이며 한국계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양곤 인근의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내수 판매든 수출용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사가잉, 만달레이 등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나 외국인이 입주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중심지인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쉐삐타, 사우스다공, 흘라잉따야, 밍글라돈 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공단 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흘라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필라와(Thilawa)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 중이다. 필라와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곤외곽을 위주의 공단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양곤의 밍글라돈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임대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포화문제 및 임대료 상승의 문제로 인하여, 양곤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있는 바고(BAGO)지역에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기업이 미얀마를 진입하는데 좋은 입지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에 미얀마 콘도미니엄법이 발효되어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할 것이나 아직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양곤 지역 공업 단지

단지명	설립년도	규모	시행사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1990	336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	1992	204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3	1999	394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1992	9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1992	47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1992	214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1995	53 Acres	주거주택개발국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5	1995	1,309 Acres	주거주택개발국
Dagon Port(Seikkan) Industrial Zone 1-2	2000	1,208 Acres	주거주택개발국

단지명	설립년도	규모	시행사
Yangon Industrial Zone	2000	500 Acres	Zaykabar, 주거주택개발국
Mingalardon Industrial Park	2000	744,500 Sq M	Mitsui Group, Hong Leong Group, Kepple Group and DHSHD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1997	3,039 Acres	Simmardev Int'l Pte Ltd, 주거주택개발국
Thilawa Industrial Zone	2001	12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Dagon East Industrial Zone	2001	666 Acres	주거주택개발국

주: 주거주택개발국: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 Housing Development

금융상의 제한

미얀마 신정부의 금융산업 개혁 조치로 통해 금융시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극히 취약하며 국영은행 및 민간은행이 있으나 이름만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높은 인플레이와 장기간의 경기침체, 금융 관리 기법 등의 부족으로 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낮고 이자율이 높다(이자율은 대출 13%, 예금 8%).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육박하며, 저축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의 파산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아직까지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세제상의 제한

미얀마의 조세는 생산, 소비 관련 조세 및 공과금, 소득 및 소유에 따른 세금, 관세, 국가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등 14가지의 세금 및 공과금이 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원천세 등이 있다. 새로운 조세 개정안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서 3월 전에 새로운 조세가 발표된다. 조세 행정은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 Financ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세제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

○ 법인세(Income Tax)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당시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25%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특별 허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	
비거주 외국 기업(외국 기업의 지점)	25%
자본 이익	10% 10% 40%~50%
- 거주기업	
- 비거주기업	
- Oil & Gas Sector	

○ 과세 연도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세무 신고서는 6월말까지 내국 세입국으로 한다.

○ 과세 대상과 범위

-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 전 세계 소득이 대상
- 비거주자 및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외국 기업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제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운영·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납부방식 및 환급절차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해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미얀마 소득세는, ①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세액의 10%, ②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초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국거래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원천소득세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소득 형태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ex. 미얀마회사)	일반	조세협약체결국 (ex. 한국모회사)
이자 소득	-	15 %	10%
라이선스,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	20 %	10% 또는 15%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2 %	3.5%	-

자료원: 미얀마 투자위원회

○ 관세(Custom Duties)

관세는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CIF가격에 0.5%를 더한 금액이고, 현재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는다.(아울러 상업세도 부과된다) 단,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수입해, 가공 후 일정 기간에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MIC의 승인을 얻은 것은 관세가 감면된다. (수입 관세의 면세 및 환부 제도)

○ 상업세(Commercial Tax)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소비세다. 1990년 3월에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 Law)이 제정한 이후, 2011년에

8월 전면 개정해 모든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14개 서비스 포함)에 대해 평균 5%의 상업세가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다. 쌀, 야채 등 79개 품목은 면세하고,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5~12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Schedule I(79개 기본 생필품): 국내 생산 시 면제
- Schedule II-V(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5%
- Schedule VI(술, 담배, 사치품 등 16개 품목): 5~120%
- Schedule VII(개인주택 임대, 은행, 외국항공 운송업 등 23개 서비스 품목 제외 나머지 서비스 품목): 5%

▶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1	주택 임대(개인만 해당)	16	이사 업
2	주차장	17	톨게이트
3	생명보험	18	동물병원
4	소액대출	19	유료 공용 화장실
5	헬스 케어	20	외국 항공 운송기업
6	교육	21	예술 서비스기업
7	운송업	22	대중교통서비스기업
8	직업소개소	23	정부에게 납부해야하는 라이선스 비용
9	은행	24	증권발행시장 서비스기업
10	통관업	25	국방부의 보안 출판계
11	임대업(책상, 의자, 식기 등)	26	대사관 및 공관
12	도축업	27	국가지원금 서비스 기업
13	장례업	28	정부기관 간 연계 서비스기업
14	아동보육	29	(국가적 필요로)국회로부터 면세승인 기업
15	미얀마 전통 마사지(일반/장인)		

금융기관 진출

현재 미얀마 내 민간 상업은행은 총 19개에 달하나, 그 동안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민간은행의 외환거래 경험 부족, SWIFT코드 부재, 대외공신력 부족

등의 이유로 MICB(Myanmar Investment Commerce Bank), MFTB(Myanmar Foreign Trade Bank) 등 2개의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CB Bank, Kanbawza Bank 등에서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용 가능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얀마의 중계거래가 맺어져 있는 미얀마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할 수가 있다. 또한 MICB로부터 현지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지난 2013년부터 해외에서 미얀마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Western Unions는 2016년 6월 7일부터 미얀마 국내 은행 9개와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는 25달러이며, 미얀마에서 약 200개국으로 하루 최대 3,000달러의 송금이 가능해졌다. 2016년 10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법적으로 은행거래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얀마로 들어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 복잡하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시기를 살피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2014년 초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은행이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 지점라이센스를 받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6년도 2월 8일까지 2차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은행 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신청했고 신한은행이 지점개설을 허가받아 2016년도 하반기에 지점을 Myanmar Plaza에서 개설하였다.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는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였고, 국내은행업계에서는 국민, 기업, 산업, 하나 등 4개 은행이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이 예상된다. 현재 신한은행만 영업을 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최소 2개 이상의 국내은행 영업이 개시될 전망이다.

미얀마는 2018년 외국 회사의 보험업 영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얀마는 금융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2019년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 5개사(영국 Prudential, 홍콩 AIA, 미국 Chubb, 캐나다 Manulife, 일본 Dai-ichi Life 등)에 시장을 개방하였고, 로컴 생명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로컬 손해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등 총 11개 보험사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발급하였다.

투자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투자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54백만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지리적 위치, 유리한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12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최저 임금과 같은 경우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을 2013년 7월에 발효했으나, 1년 이상 지지부진했다가 지난 2015년 8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1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짜트로 확정됐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 33% 인상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800짜트로 지정하였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서비스

미얀마는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운영으로 공공부분의 비중이 크다. 미얀마는 장기간에 걸친 버마(Burma)식 사회주의경제 운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민간부문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연방정부 경제부처의 대부분이 산하에 국영기업을 두고 실물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 국가들이 미얀마의 비민주화 및 인권탄압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함에 따라 2012년까지 사실상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중단되어 미얀마는 전 산업에 걸쳐 발전이 지연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동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볼모지와 다름 없었던 미얀마의 시장은 2012년 이후 급격히 개방되고 확대되고 있다. 경제 호황이 지속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우리기업의 관심과 발 빠른 시장 진출이 요구된다. 최근 미얀마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얀마인의 외식 선호도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따라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18년 5월에 공지를 통해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하였다. 외국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미얀마에서 생산된 상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얀마의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 허용 상품군 목록〉

1. 생활필수품 (의류/시계/화장품 포함)
2. 다음과 같은 식료품
 - 농산물(국가의 필요에 따라 금지된 품목 제외)
 - 수산물
 - 축산물
 - 기성 식품류(ready-made foodstuffs)
 - 다양한 종류의 음료
 - 미얀마 생산 주류
3. 가재도구(세라믹, 도기, 유리 및 유리제품 포함)
4. 주방용품
5. 의약품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동물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7. 문구류
8. 가구
9. 스포츠 장비
10. 전기통신 제품(카메라 및 전화기 포함)
11. 전자장비
12. 건축 자재 및 공구
13. 전기장치
14. 산업용 화학물
15. 종자, 농업 자재
16. 농업기계
17. 다양한 종류의 기계 및 부대용품
18.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19. 오토바이 및 부대용품
20. 자동차 및 다용도 트럭의 예비품
21. 장난감
22. 실내 장식 제품 (꽃 그리고 식물 포함)
23. 기념품 및 수공예품
24. 미술용품, 악기 및 부대용품 (골동품 불포함)

우즈베키스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주요 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으로 탄생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해 있다.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두 배인 447,000km² 이고 인구는 약 3,265만명이다. (2018년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상당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이래 7~8%의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세계적 경기침체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도 2015년 8.0%, 2016년 7.8%, 2017년 5.3% 성장을 달성하였다.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5-2019년)에 따라 원자재 수출 국가에서 상품 수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현대화 및 다변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을 시행중이다.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이후 2017-2021 기간 산업생산량 1.5배, 2030년까지 GDP 2배 증대를 목표로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조직 및 기관 개편, 무역절차 개선, 외환 자유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종전 높은 관세 및 소비세 부과를 통한 수입 억제 정책을

탈피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면제 정책, 철도 운송료 인하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종전 국제기구의 경제 자문 수용에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협력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f
인구(백만 명)			30.5	31.0	31.4	31.9	32.4	32.8
G D P	총액 (십억 달러)		63.1	66.8	67.1	46.8	36.9	46.3
	1인당 GDP(달러)		2,068	2,154	2,136	1,467	1,138	1,411
	성장률 (%)		7.8	8.0	6.2	4.5	4.4	5.1
인플레이션(%)			11.7	8.5	10.5	20.9	8.9	15.2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수출		12,903	11,500	11,196	11,483	11,901	12,025
	수입		14,738	12,000	10,920	11,420	11,830	12,300
	무역수지		-1,835	-500	286	63	71	-275
총외채(백만 달러)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16.8	15.0	14.0	16.0	18.5	20.0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년 평가치, 2018/2019년 전망치), 무역협회

관세

우즈베키스탄 관세정책은 우유 등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 구조는 HS의 상품 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가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수수료 0.2%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observer 지위) WTO 등을 통한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세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해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7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대외무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하여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동년 9월 10일부터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됐으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됐다.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다.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금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발생했다.

동 조치는 2017년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해 1달러 당 솜화 환율이 종전 4,200솜 수준에서 8,100솜으로 2배가량 상승하면서 솜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예견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억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결의안 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74개류 447개 품목, 10개류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와 소비세를 각각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관세와 소비세가 인하되었으나 트랙터, 승합차 등은 오히려 관세, 소비세가 인상되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중고차량을 중심으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단, 100% 전기 동력의 전기자동차 및 생산된 지 2년 미만, 4만 달러 이상 차량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2018년 6월 29일 PP-3818『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 결의를 제정해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인하 등 변경될 예정이다.

통관절차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3일 기간의 근무일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입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통관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적합판정 증서(일부 품목에 한함)
- ② 원산지 증명서(일정 경우에 한함)
- ③ 대외무역부 의견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④ 수출국(또는 재수출국)의 통관서류

- ⑤ 수입대금 결제서류, 관세납부 확인서
- ⑥ 세관신고서
- ⑦ 운송 및 선적 서류(운송장 포함)
- ⑧ 동, 식물 검역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⑨ 허가서(허가를 요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⑩ 승인서(다른 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통관비용의 경우 상품 및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수입품일 때에는 아래와 같은 통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5%~40%)
- 부가가치세(20%)
- 소비세(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인 경우)(5%~200%)
- 통관수수료(0.2%)

관세 등 통관비용은 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통관비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 관세, 소비세, 추가부담금은 수입품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통관가격, 관세, 소비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또한, 2015년 10월 30일 '지상교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 및 교통수단에 대한 對관세기관 전자문서통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됐다. 그에 따라 수입자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관세 전문가에게 미리 통지할 경우, 통관 접수는 1일 안에 마감된다. 동 법령은 2015년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외국간 무역관계강화 및 수출입절차가 다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 대통령 결의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수입규제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 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 독극물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전자통신기기
- 국가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기타 금지 물품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입 제품에 대한 금지를 실시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Uzstandard 인증획득 절차

Uzstandard 인증 획득 시 직접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품목 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 필요서류 : 기업정보,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품목설명서 (HS Code, 기술 특징 포함)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Uzstandard Agency

- 주소: 100049 333 a, st. Farobiy, Tashkent, Uzbekistan
- 전화번호/팩스: (998-71) 246-17-63
- e-mail: uzst@standart.uz
- 홈페이지: www.standart.uz

제약, 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2,000~3,000달러 (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 요구서류 : 등록신청서, 제품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 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 검역 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 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 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abeling

2013년 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통관 전 우즈벡어 라벨링 의무화가 되어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우즈벡 무역 개선 조치에 따라 2018월 9월 1일부터 통관 후 유통 전 우즈벡어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개선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표 보호방법은 상표의 공식 등록방법 밖에 없다. 상표는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특허청 지정 규정에 부합되는 양식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법정 심사 후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 가능 기간은 특허세 고지 문서 수령 후 1달 동안이다. 이 후 특허청이 상표 공식 등록에 대해 공보하게 되며, 상표 등록 이후 한 달 안에 상표 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증명서는 상표 등록 신청서 제출날짜로부터 9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소유자의 연장 신청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는 유효기간 마지막 해에 작성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10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 시 소송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주재국의 상표권 보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Intelektual Mulk Agentligi(Intellectual Property Agency)라는 기관이 IP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재판 등이 있을 시 해당 브랜드나 지적재산권이 우즈베크 내 등록돼 있는지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조달

우즈베키스탄 정부 조달은 종전에는 30개의 법규가 상존하여 법규간 통일성이 부족하고 또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뇌물 문제 및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되는 문제점 등이 상존하였다.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정부 조달 부문 개방성,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간 공정 경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상품/서비스의 정부 및 기업 조달 개혁 조치(대통령령의 3166)를 채택하고 이어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트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ngemt Agency)이 수립한 정부조달법(Law No 472)를 승인하였다.

정부 조달 구매자는 'budgetary'(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및 'corporate'(정부 지분 50% 이상 공기업)로 분류되며 국가프로젝트관리청이 공공조달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자 조달의 경우 e-shop 및 auction으로 분류되며 공급자는 전자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선정된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는 전자 조달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배, 공기업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배 이하 여야 한다((단 연간 최저임금의 2,500배를 상회해서는 안됨),

경쟁입찰의 경우 부처의 경우 최저임금의 6천배, 공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00배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며 입찰 제한가(limit)는 10만불이다. 심의 위원회(Complaint Commission)가 운영되어 공공조달 민원을 심의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자연보호위원회(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계획된 또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관련 규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 회사의 계획된 또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 정도, 천연자원의 환경적 안전과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소방장비, 소방 인원, 표준 및 규정의 기준은 소방당국에 의해 정해진다.

지상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을 담고 있는 건설계획이나 재건계획은 수자원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질위원회(Committee of Geolog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시 위생보건, 환경 및 기타사항 등이 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핵심 정책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외환통제, 낙후되고 과잉 규제되고 있는 금융 분야, 무역 규제들, 무역과 상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구 소련 연방국 중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투자자의 국적, 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주요 산업에 대해 통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절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정부 지분 보유 및 영향력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작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유지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일반 국가와 다름이 없으며 투자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 원리금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② 충분한 보호와 보안
- ③ 국가적 차원의 대우
- ④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⑥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 ⑦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법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⑧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 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⑩ 2014년 1월 2일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할 권리가 있고, 복수 비자가 부여된다.
- ⑪ 현금 USD \$5,000,000 이상 투자한 신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세금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공적 부담금에 관하여, 관련 규정의 변경에 상관없이 법인설립 당시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인설립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 ⑫ 외국인 투자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된 자산이 회사 자본금의 3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간 관련 법에 따른 관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이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한 자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 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장관, 국가위원회, 행정 각부, 법 집행기관, 감독위원회에 의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 이후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향후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사업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최대 장벽이었던 2017년 9월 외환 단일화 정책을 전격 도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0,000불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150,000불 이상(카라칼파크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5,000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는 경화, 신행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투자환경 종합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권자본금을 4억숨(약 5만불)로 인하하였으며, 또한 종전 30% 지분에서 15%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외국인 법인 형태의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제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산업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가)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 관세 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 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 분배 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 분배 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 법인 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 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투자금 300,000불 이상 시 3년간, 3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제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 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 나)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 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베크 기업들에게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 다) 비세제 혜택
-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국가자산 운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 프로젝트관리청(NAPM)을 ‘2018-2020년 공기업 구조조정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대상 기업으로는 △석유가스공사, △화학공사, △전력공사, △수력공사, △알말릭광업공사, △철도공사, △우즈벡 통신, △나보이광업공사, △우즈벡 항공, △국민은행(Halk Bank)를 선정하여, 구조 조정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공사(IFC)가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76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개혁시행 20위권 국가에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측은 우즈벡이 최근 소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세금 시스템 간소화, 계약 시행을 위한 보호 조치 도입을 포함한 대외무역 촉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개혁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위가 오른 부문은 △건축 인허가 134위(1단계↑), △재산권 등록 71위(2단계↑), △세금 납부 64위(14단계↑), △무역 165위(3단계↑)이며, 반면 △창업 12위(1단계↓), △전력공급 35위(8단계↓), △대출 60위(5단계↓), △소액투자자 보호 64위(2단계↓), △계약 이행보장 41위(2단계↓), △퇴출 91위(4단계↓) 부문은 하락했다.

이러한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방 경제 분석 전문기관에서는 우즈벡 사법시스템 미확립과 상업 분쟁 중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후 계약서 수정 요구, 자산 수용/몰수, 만연한 부정부패 관행 등을 투자위험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조세제도

우즈베키스탄 조세에 관한 주요 원칙은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목에 대한 세율은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통상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의 세율이 정해진다.

2018년 1월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현행 조세 제도 및 행정 절차가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세 개혁 6월 정부는 '조세정책 개선 구상'(대통령령)을 발표하여 대폭적인 조세개혁 및 조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우즈베키스탄 내국 사업자(외국인 투자 포함)에 대한 세제의 경우 표준 세제 또는 간이 세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 사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간이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는 평균 피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간이사업자에 대한 전체 분류 및 종업원 수에 따른 기준은 내각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주 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표준 세제의 경우 2018년 현재 법인소득세(14%), 인프라 개발세(8%), 부가가치세(20%), 예산 외 기름에 대한 부담금(3.2%), 통합사회부담금(25%), 재산세, 토지세, 소비세이다.

외국 사업체라도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원천징수세 또는 직접 과세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 사업체에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을 지급하는 납세자(국내 사업체, 국내 사업장을 통해 사업하는 외국 사업체)에 의해 수행된다. 외국 사업체의 우즈베키스탄 내 원천 수입에 대하여는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소득세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①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②과세연도 내의 특정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개인은 개인 소득세의 취지상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자에게는 그 사람의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국제조세협약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조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우대가 주어진다.

조세협약에 따르면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소득은 △협력사업(consortium) 협약 참여에 따른 소득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상품 판매(직, 간접 불문)에 따른 소득이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국가세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은 세금 우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세금위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세금 우대에 관한 증명이 있으면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는 세금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세금 우대에 대한 증명은 대한민국 거래업체가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조세협약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국가세금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세금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낙후됐으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원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공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건설 분야의 대출자산 부실 우려가 상존한다.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이원화 체제이며, 우즈베키스탄 은행산업은 정부의 실질적 주도 하에 은행별로 지원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의 자본 증대와 민간 자본 유치, 자산 건전성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정부 채권 발행 등 증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환 부문 2017년 8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업 수출 소득의 의무 환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어 9월 그동안 존재해왔던 이중 환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크게 상승시켜 환율을 단일화하였다(달러당 4,210숨→8,100숨).

또한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외화보유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환율 단일화 직전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종전 9%에서 14%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승(2017년 12.6%, 2018년 19.5% 전망)에 따라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 중이다.

WTO 가입 추진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움저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등을 설명하는 memorandum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개최, 부처 간 위원회 조직 및 WTO 가입 관련 자료준비, WTO 수준에 맞는 법률 구조 개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에 관하 워킹그룹 첫 미팅이 개최되었고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이 개최되며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2017년 말부터 우즈베크 정부는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3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럽연합(EU),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참여하여 WTO가입 관련 실무적 협의를 가졌으며 2018년 5월 14일~16일간 WTO 가입 재개를 위한 워크숍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과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개최하였다.

2018년 초 발표된 ‘활발한 기업가정신,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해’ 국가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우즈베크는 WTO 가입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2월 28일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령이 발표되었다. 대외 경제 활동을 위한 관세 납부 최적화 및 관세, 세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WTO 가입에 대한 효율적인 과업 수행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승인 하였으며 동 로드맵에는 WTO 가입 재개와 국가 법률 개정 서류 준비 작업을 목표로 하는 34개 활동도 포함되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시 WTO 가입 재개 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2019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 인 쇄 | 2019년 12월

◆ 발 행 | 2019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